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570-01

2014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조사

201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4. 11.

연구수행기관: 한양사이버대학교

책임연구원: 박경수(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공동연구원: 이용표(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염형국(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장기성(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김성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연구보조원: 김현민(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전공 박사과정)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목 차

---

|                               |     |
|-------------------------------|-----|
| I. 서론 .....                   | 1   |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 1   |
| 2. 연구내용과 범위 .....             | 6   |
| 3. 연구방법 .....                 | 7   |
| II. 연구의 배경 .....              | 10  |
| 1. 장애인 거주시설 및 이용자 현황 .....    | 10  |
| 2. 국내 법제 및 정책 검토 .....        | 14  |
| 3. 선행연구 검토 .....              | 29  |
| III. 장애인 선거권 보장 해외사례 분석 ..... | 41  |
| 1. 개관 .....                   | 41  |
| 2. 미국 .....                   | 41  |
| 3. 영국 .....                   | 53  |
| 4. 호주 .....                   | 58  |
| IV. 설문조사 분석 .....             | 62  |
| 1. 투표방법 .....                 | 62  |
| 2. 설문조사 개요 .....              | 64  |
| 3. 설문조사 결과 .....              | 66  |
| 4. 시사점 .....                  | 131 |

|                   |            |
|-------------------|------------|
| <b>V. 면접조사 분석</b> | <b>137</b> |
| 1. 면접조사 개요        | 137        |
| 2. 면접조사 결과        | 140        |
| 3. 시사점            | 171        |

|                                  |            |
|----------------------------------|------------|
| <b>VI. 결론 및 정책제언</b>             | <b>178</b> |
| 1. 조사결과 요약                       | 178        |
| 2.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의 의미             | 183        |
| 3.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의 개선방향 | 185        |
| 4. 정책과제                          | 188        |

|             |            |
|-------------|------------|
| <b>참고문헌</b> | <b>199</b> |
|-------------|------------|

## 부록

|                                                 |     |
|-------------------------------------------------|-----|
| [부록 1]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지<br>(장애인용 설문지) | 205 |
| [부록 2]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설문)조사 안내서               | 213 |
| [부록 3]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지<br>(직원용 설문지)  | 216 |
| [부록 4] 장애인 선거권 관련 안내문                           | 225 |

## 표 목 차

|                                                  |    |
|--------------------------------------------------|----|
| <표 2-1> 장애인거주시설 현황 (2012.12.) .....              | 12 |
| <표 2-2> 정신의료기관 현황(2012년) .....                   | 13 |
| <표 2-3> 장애인이 투표하지 않는 이유 .....                    | 31 |
| <표 2-4> 제안된 선거권 보장방안 .....                       | 39 |
| <표 4-1> 성별 .....                                 | 66 |
| <표 4-2> 연령 .....                                 | 67 |
| <표 4-3> 시설유형 .....                               | 67 |
| <표 4-4> 시설 소재지(광역자치단체) .....                     | 68 |
| <표 4-5> 장애유형(다중응답) .....                         | 69 |
| <표 4-6> 장애유형 재범주화 .....                          | 70 |
| <표 4-7> 장애등급 .....                               | 70 |
| <표 4-8> 장애유형(다중응답)에 따른 장애등급 .....                | 71 |
| <표 4-9>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등급 .....                      | 72 |
| <표 4-10> 장애유형에 따른 투표인지 여부 .....                  | 72 |
| <표 4-11>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에 따른 투표인지 여부 .....            | 73 |
| <표 4-12> 시설(병원)에서의 투표 경험 .....                   | 74 |
| <표 4-13> 투표인지 여부에 따른 시설(병원)에서의 투표 경험 .....       | 75 |
| <표 4-14> 장애유형별 시설(병원)에서의 투표 경험 .....             | 76 |
| <표 4-15> 시설유형별 시설(병원)에서의 투표 경험 .....             | 75 |
| <표 4-16> 정신장애인의 투표인지 여부에 따른 시설(병원)에서의 투표 경험 .... | 77 |
| <표 4-17> 6·4 지방선거 투표 여부 .....                    | 78 |
| <표 4-18> 장애유형별 6·4 지방선거 투표 여부 .....              | 79 |
| <표 4-19> 시설유형별 6·4 지방선거 투표 여부 .....              | 80 |
| <표 4-20> 장애유형별 6·4 지방선거 미투표 이유 .....             | 80 |

|                                                    |     |
|----------------------------------------------------|-----|
| <표 4-21> 6·4 지방선거 투표 방법 .....                      | 82  |
| <표 4-22> 장애유형별 투표 방법 .....                         | 82  |
| <표 4-23>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에 따른 투표 방법 .....                | 83  |
| <표 4-24> 6·4 지방선거 투표방법 결정 주체 .....                 | 84  |
| <표 4-25> 장애유형별 투표 방법 결정주체 .....                    | 85  |
| <표 4-26> 투표방법을 직원이 선택한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유형 .....        | 86  |
| <표 4-27> 투표방법 결정에 필요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            | 87  |
| <표 4-28> 장애유형별 투표방법 결정에 필요한 설명 청취 여부 .....         | 87  |
| <표 4-29> 투표방법 결정에 필요한 설명 청취 여부에 따른 투표방법 결정주체 ..... | 88  |
| <표 4-30> 선거에 대한 정보취득 방법(다중응답) .....                | 89  |
| <표 4-31> 사전투표, 일반투표 시 투표장까지 동행한 사람(다중응답) .....     | 90  |
| <표 4-32> 사전투표, 일반투표 시 투표장까지 이동 수단 .....            | 91  |
| <표 4-33> 신분증 소지자 .....                             | 91  |
| <표 4-34> 장애유형별 신분증 소지자 .....                       | 92  |
| <표 4-35>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에 따른 신분증 소지자 .....              | 93  |
| <표 4-36> 투표장에서 신분증 확인 방법 .....                     | 95  |
| <표 4-37> 기표소 동행 여부 .....                           | 95  |
| <표 4-38> 기표소에 같이 들어간 사람 .....                      | 96  |
| <표 4-39> 기표소에 같이 들어간 사람 수 .....                    | 96  |
| <표 4-40> 기표한 사람 .....                              | 96  |
| <표 4-41> 원하는 사람에게 투표했는지 여부 .....                   | 97  |
| <표 4-42>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은 사람 .....                    | 98  |
| <표 4-43> 신분증 소지 현황(거소투표) .....                     | 99  |
| <표 4-44> 장애유형별 신분증 소지자(거소투표) .....                 | 99  |
| <표 4-45> 신분증 확인 방법(거소투표) .....                     | 100 |
| <표 4-46> 투표 장소(거소투표) .....                         | 101 |
| <표 4-47> 참관인 배석 여부(거소투표) .....                     | 101 |

|                                           |     |
|-------------------------------------------|-----|
| <표 4-48> 투표용지 기표 주체(거소투표) .....           | 102 |
| <표 4-49> 장애등급별 투표용지 기표 주체(거소투표) .....     | 102 |
| <표 4-50> 장애유형별 투표용지 봉투 투입 주체(거소투표) .....  | 103 |
| <표 4-51> 장애유형별 차기 선거 희망 투표방법(거소투표) .....  | 104 |
| <표 4-52> 응답자 성별 .....                     | 105 |
| <표 4-53> 응답자 연령 .....                     | 105 |
| <표 4-54> 응답자 직위 .....                     | 105 |
| <표 4-55> 응답자 시설 소재지 - 광역자치단체 .....        | 106 |
| <표 4-56> 응답자 소속 시설 유형 .....               | 106 |
| <표 4-57> 응답자 소속 시설 유형 재범주화 .....          | 107 |
| <표 4-58> 시설유형별 이용자 수 .....                | 107 |
| <표 4-59> 시설유형별 선거 관련 정보 제공 방법(다중응답) ..... | 108 |
| <표 4-60> 유형별 투표방법 사전교육 실시 여부 .....        | 109 |
| <표 4-61> 시설유형별 투표방법 사전교육 방법(다중응답) .....   | 110 |
| <표 4-62> 시설유형별 투표방법(다중응답) .....           | 111 |
| <표 4-63> 시설유형별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다중응답) .....   | 112 |
| <표 4-64> 시설유형별 투표방법 설명 정도 .....           | 114 |
| <표 4-65> 시설유형별 투표방법 결정 방법 .....           | 115 |
| <표 4-66> 시설유형에 따른 거소투표 권유받은 경험 .....      | 116 |
| <표 4-67> 시설유형별 거소투표를 한 이유(다중응답) .....     | 117 |
| <표 4-68> 시설유형별 거소투표 장소(다중응답) .....        | 119 |
| <표 4-69> 시설유형별 거소투표 시 외부 참관인 참석 여부 .....  | 120 |
| <표 4-70> 시설 유형별 거소투표 시 기표한 사람(다중응답) ..... | 121 |
| <표 4-71> 시설유형별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은 사람 .....      | 122 |
| <표 4-72> 시설유형별 사전·일반투표를 선택한 이유 .....      | 123 |
| <표 4-73> 시설유형별 투표소 이동에 동행한 사람(다중응답) ..... | 124 |
| <표 4-74> 시설유형별 투표소까지 이동방법(다중응답) .....     | 124 |

|                                             |     |
|---------------------------------------------|-----|
| <표 4-75> 시설유형별 신분확인 방법 .....                | 126 |
| <표 4-76> 시설유형별 대리 신분확인 요청 받은 경험 .....       | 127 |
| <표 4-77> 시설유형별 기표소에 같이 들어간 사람(다중응답) .....   | 128 |
| <표 4-78> 기표소에 같이 들어간 사람 수 .....             | 129 |
| <표 4-79> 시설유형별 기표한 사람(다중응답) .....           | 130 |
| <표 4-80> 시설유형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은 사람(다중응답) ..... | 131 |
| <표 5-1> 종사자·전문가 면접조사 참여자 .....              | 139 |
| <표 5-2> 장애인 면접조사 참여자 .....                  | 139 |
| <표 6-1>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장애인 선거권 보장방안 .....       | 179 |

## 그림목차

---

|                          |     |
|--------------------------|-----|
| <그림 1-1> 연구 수행체계 .....   | 9   |
| <그림 5-1> FGI 조사 절차 ..... | 137 |
| <그림 5-2> FGI 진행과정 .....  | 138 |

# I. 서론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연구의 필요성

선거권(suffrage)은 헌법에 의하여 국민에게 보장된 선거에 참여하는 권리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24조)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권에는 국회의원선거권(41조)과 대통령선거권(67조)을 비롯하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15조)이 있다. 선거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공권이므로 포기하거나 양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리행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선거권은 국가권력을 창설하고 국가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민주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뜻하기 때문에 특히 국가를 향한 권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특히 선거는 한 사회가 그 조직을 구성하고 특정한 공식적 결정을 내리는 수단 중의 하나로써 출마자들이 유권자들의 의사에 반응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선거를 통해 적정한 정책을 결정하게 될 대표들이 선출되며, 이 과정 속에서 정당과 선거 출마자들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각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정책 내용을 유권자들로부터 청취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공약을 제시하게 된다(이문희, 2014).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 또한 선거권의 보장 정도를 통해 그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에 부응하여 장애계에서는 갈수록 선거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선거 참여에 대한 의식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가 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뽑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역대 대통령선거의 전국 투표율은 15대 80.7%에서 17대 63%로 낮았다가 18대에는 75.8%로 높아졌지만, 장애인의 투표율은 15

대 60.1%에서 16대 66.4%에서 17대 72.9%, 18대 78.5%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4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장애인의 선거환경 개선 및 정치의식 반영을 위한 여론 조사’에서 장애인들은 현 정치계가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장애인 유권자의 83.4%가 당사자의 직접 정치 참여를 원한다고 하였으며, 장애인 유권자의 60.5%가 투표환경 미비로 인한 참정권 침해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였다(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8).

장애인들은 침해된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고자 하는 권리의식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현실 정치에 대한 참여욕구도 과거에 비해 월등히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투표소에 장애인이 가지 못하는 이동권 문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제대로 된 정보를 습득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투표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선거권 보장 법적 기준으로 「헌법」에서는 장애인도 법 앞에 평등하며, 선거절차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1조 제1항). 이러한 장애인의 헌법상 권리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선거권 행사에 있어서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선거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 이처럼 ‘공직선거’는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에서의 국가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다른 어떠한 영역보다도 차별금지를 통한 선거권 보장이라는 원칙이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장애인 권리협약에서도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적절한 지원을 할 것을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협약 제29조). 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국가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선거환경의 개선은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분야이다. 선거권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적 표현으로 양도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결코 침해받아서는 안되는 권리이다. 하지만 장애인차별 금지법이 제정된 지금에도 장애인의 선권권 침해는 여전히 선거기간 내내 그리고 투표장에서까지 차별이 발생하고 있지만 선관위를 비롯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비판받고 있다(한국장총, 2014).

그동안 장애인거주시설 또는 정신보건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sup>1)</sup>들은 선거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아예 투표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혹은 투표하게 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49조는 장애인생활 시설에서 원장 등이 마음대로 부재자신고서를 하고 장애인들을 대신해 기표하는 ‘대리투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하여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거나 10명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더라도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sup>2)</sup> 이러한 규정들은 당해 시설의

---

1) 거주시설 장애인 30,640명중 18세 이상의 장애인 수는 26,256명(85.7%),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11,144명 중 18세 미만의 입소자는 3명으로 대다수가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 제149조(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기관·시설”이라 한다)로서 제38조제1항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그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 후 3일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② 생략

③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일시·장소를 정하여 해당 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10명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공고일 후 2일 이내에 거소투표를 위한

운영자들이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거소투표를 신청한 후 자신이 직접 투표하거나 거주자들에게 특정한 후보자를 투표할 것을 강요, 유도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김원영, 2013).

이에 따라 2012년 19대 총선의 시설 부재자신고 현황에서 200여개의 장애인시설에서 약 8천여 명의 거주인이 부재자 신고를 하였고, 동 선거에서 거소투표 신청자는 7,610명으로 파악되었는데, 신고를 누락한 시설까지 포함하면 상당수의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거소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거소투표를 하는 경우 선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권한 없는 대리, 부정투표의 위험에 노출되는 등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보통, 직접, 비밀선거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2012. 10. 경향신문, YTN 등 언론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거소투표에서 발생한 대리선거 의혹을 보도한 바 있으며<sup>3)</sup>, 거소투표시에 시설 관리자가 거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부재자 신고를 한 후 대리투표를 한 사안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예도 있었다.<sup>4)</sup>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거주시설의 일괄 거소투표자 신청을 묵인·방조했거나, 거소투표 대상자가 아닌 지적장애인들의 거소투표 신청을 묵인했거나 대리투표를 묵격하고도 방조했다는 증언이 있는 등 관리감독의 소홀이 지적되고 있다(여준민, 2014).

이 같은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사회에서 물리적·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거주 시설 장애인의 정치참여 실태를 파악하여 이들의 선거권 보장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정당 등 선거관련 주체들은 물론, 사회 일반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고 보다 실효성 있는 선거권 보장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그동안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선거권보장 관련 선행연구가 거의 없었던 반면,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이 정신의료기관에 평균 170일 간 장기입

---

기표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 ⑧ 생략

3) “진선미 의원 ‘장애인 시설서 대리투표 의혹...고발’” [http://www.ytn.co.kr/\\_ln/0101\\_201210092000131959](http://www.ytn.co.kr/_ln/0101_201210092000131959)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6.10.13. 선고 2006고합98·100 판결.

원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이 기간 동안 선거권을 제한받는 상황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사회적으로 정신보건시설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선거권에 관하여는 장애인거주시설 만큼의 문제의식도 제대로 공유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신보건시설에서 살아가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정책의 모색은 더욱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설 거주 장애인들에게 선거관련 공보물을 포함한 제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고, 일반 및 거소 투표시 선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선거지원에 관련한 정책과 제도, 법령 등을 개선·권고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민주주의 사회의 주체로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 2) 연구의 목적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경우 선거정보의 취득, 투표시 비밀선거원칙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을 직·간접적으로 제한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병원·정신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선거공보, 선거관련 방송을 포함한 각종 정보가 제대로 도달하고 있는지, 일반투표 및 거소투표로 선거권을 행할 경우 합리적이고 공정한 투표관리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선거권 행사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발견되는 절차적·실체적 문제에 대한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연구내용과 범위

- 장애인 선거권 보장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장애인 선거권 보장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 장애인 선거권 보장 관련 국내 정책 및 법제 검토
  - 장애인 선거권 보장에 관한 국내 정책 및 법제를 검토한다.
- 장애인 선거권 보장 관련 해외사례 검토
  - 미국, 영국, 호주 등 장애인 선거권 보장에 관한 해외사례를 검토한다.
-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현황 실태조사
  -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통하여 거주시설 또는 정신병원·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투표참여율·선거관련 정보습득 현황, 거소투표시 비밀선거·보통선거·직접선거원칙의 침해 정도와 그 양상, 거소투표시 일반적인 선거관리 절차 등 선거권 관련 실태를 실증적으로 조사한다.
- 시설 거주 장애인이 갖는 선거권의 의미 파악
  - 시설 거주 장애인이 자각하는 선거권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권리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의 개선방향 모색
  - 본 연구의 문헌조사, 시설 거주 장애인 및 시설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 장애인 및 전문가 그리고 시설종사자에 대한 집단면접조사 등을 통하여 도출된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의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 정책의 개선방향에 기반하여 구체적으로 실행가능한 과제들, 즉 선거관련 정보제공 확대방안, 선거권보장을 위한 장애유형별 정당한 편의제공 강화방안, 발달장애인을 위한 선거 편의제공 및 교육, 이동투표제도 도입, 선거관리관 제도 도입, 정신의료기관의 투표안내 책임 강화, 투표보조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선관위 책임 강화,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 보장 법제개선 등의 방안을 제안한다.

###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병원 등에 거주하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들의 선거권을 유효하게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문헌조사, 거주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설문조사, 장애인 및 전문가 집단면접조사, 전문가 자문 등 네 가지 방법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첫째, 문헌 조사에서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과 관련한 선행연구, 국내 법제, 국제기준 그리고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고 본 연구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선거권 실태 설문조사는 시설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용자 조사와 시설 종사자조사로 나누어 실행하였다.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장애인과 종사자용 설문지는 각각 공통질문, 일반(사전)투표 관련 질문, 거소투표 관련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장애인용 설문도구의 공통질문은 투표인지 여부, 6·4지방선거 투표 여부, 투표방법, 투표 하지 않은 이유, 투표 방법 결정 주체, 투표 관련 정보(선거일정, 후보자, 공약 등) 습득 방법 등이다. 일반(사전)투표와 거소투표 관련 질문의 주요내용은 투표장 동행자, 투표장 이동 방법, 신분증 확인 방법, 기표방법과 주체, 투표용지 투표함(거소투표의 경우 반송용 봉투) 투입 주체 등이다. 또한 장애인 시설과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용 설문지의 공통질문은 선거에 대한 정보제공방법, 투표 방법에 대한 사전교육 여부, 사전교육방법, 시설 거주 장애인 투표방법, 장애인 미투표 이유, 투표 방법 결정 주체, 응답자가 지원한 투표방법 등이다. 거소투표 관련 질문의 주요내용은 거소투표를 권유받은 경험, 거소투표를 하게 된 이유, 투표소 설치여부, 거소투표 참관인 참석 여부, 기표주체, 반송용 봉투 투입 주체 등이다. 일반(사전)투표 관련 질문의 주요내용은 일반투표 결정 이유, 투표장 동행자, 투표장 이동방법, 투표장에서 신분확인절차, 대리로 신분확인 요청받은 경험, 대리투표 요청받은 경험, 기표소 동행자, 기표주체, 투표함 투입주체, 장

애인 선거권 보장을 위한 의견 등이다. 이용자조사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장애유형의 다양성, 거주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자를 할당표집 하였다.<sup>5)</sup>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체·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을 장애유형별로 할당하였고 정신장애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을 포함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이용자들로부터 274사례, 종사자들로부터 220사례 등 총 494사례가 회수되었고 분석에 활용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26사례를 제외하고 468사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셋째,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권과 관련된 쟁점과 현안들은 다양한 층위와 수준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애유형이나 거주시설의 특성에 따른 선거권 보장방안이 상이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독특한 선거관리체계, 복지시책 등이 선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병원 그리고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 장애인인권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집단면접을 통하여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권행사와 관련된 문제점과 대안들이 심층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료의 수집을 위해서는 자료수집의 절차와 내용이 엄밀하게 구조화되어 있지 않아 세부적이고 맥락적인 정보의 발견이 가능한 질적 조사의 한 방법인 집단면접조사(FGI)가 유효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선거지원이 충분하고 적절한지 또한 시설거주 장애인에게 있어서 선거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시설과 다양한 관계의 결을 맺고 있는 대상들을 참여시키고자 하였고 이 같은 질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5회의 FGI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의 조사대상은 전문가와 장애인으로 나누어진다. 전문가대상 FGI는 다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와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장애인거주시설(정신요양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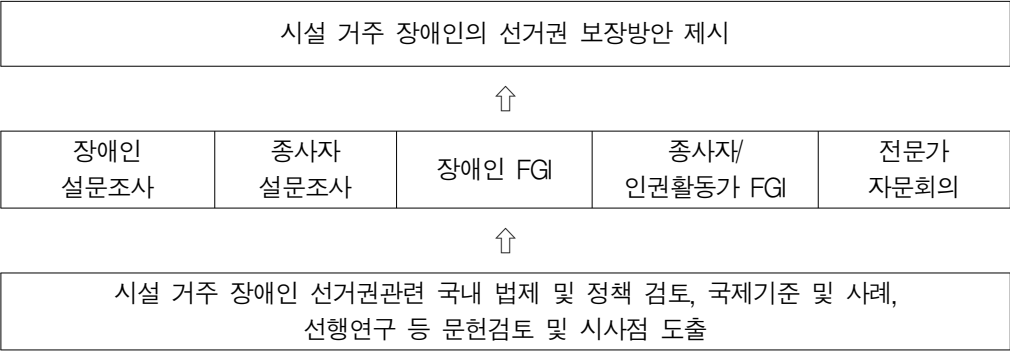
---

5) 2013년 보건복지통계연보(2012년말 기준)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시설에 입소해 있는 장애인은 장애인거주시설 1,348개소에 30,640명이 있다. 시설이용장애인의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지체 2,956명, 시각 774명, 청각언어 302명, 지적 14,441명, 기타 12,167명으로 파악되고 있음. 한편 정신요양시설은 59개소가 있으며 이 곳에 11,144명의 정신질환자(법정 정신장애인 포함)가 입소되어 있음. 정신병원의 입원병상 수는 45,513자리로 파악되고 있다.

정신장애노숙인시설, 주거제공시설) 종사자, 그리고 장애인인권단체의 활동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장애인 면접조사는 특히 가장 선거참여율이 낮은 정신장애인과 거주시설 안과 밖에서 선거를 경험한 탈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넷째, 본 연구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장애인 선거권 관련 학계 연구자와 장애인인권 활동가, 정신병원 의사, 시설 책임자 등을 본 연구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3회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연구초반부에 연구의 방향성과 연구체계, 조사도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으며, 연구후반부에 조사결과 및 분석, 정책제언에 대한 자문을 통해 연구의 체계 및 연구결과의 질적 완성도를 제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한 연구수행체계는 <그림 1-1>과 같다. 먼저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관련 선행연구와 국내 법제 및 정책 검토, 국제기준 및 사례 문헌조사를 통하여 정책적,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하여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의 구체적·맥락적 장애요인과 제도와와의 불일치 혹은 미비점을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는 문헌조사, 설문조사 그리고 면접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시설 거주 장애인의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선거권 보장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1-1> 연구 수행체계

## II. 연구의 배경

### 1. 장애인 거주시설 및 이용자 현황

#### 1)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거주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로 정의되고 있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 거주시설을 분류해 보면 첫째, 장애유형별 거주시설로 장애유형이 같거나 또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교육·직업·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 현행 시설의 유형으로는 지체(뇌병변)장애인 거주시설,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청각·언어 장애인 거주시설, 지적(자폐성)장애인 거주시설이 있다. 둘째, 중증장애인 요양시설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입소하게 하여 상담·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 셋째, 장애영유아 거주시설로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재활에 필요한 의료·교육·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 넷째, 장애인 단기거주시설로 장애인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다섯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으로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곤란한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시설을 말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대상은 등록장애인이며 무료이용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한다)가 없거나 부

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입양기관 보호 아동이 해당된다. 그리고 실비이용 대상자는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14a).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해당 시설로 이전해야 한다. 즉, 주민등록법 제12조에 의거 해당 시설장은 시설입소자에 대하여 시설 소재지로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대행)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거주시설은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이 342개소, 중증장애인시설 201개소, 장애영유아시설 10개소, 단기보호시설 128개소, 공동생활가정 667개소로 총 1,348개소가 있고, 여기에 30,640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거주시설 장애인 중 18세 이상의 장애인은 26,256명으로 85.7%를 차지하고 있다.<sup>6)</sup>

이중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342개소의 경우 지체장애인시설 40개소, 시각·청각장애인시설 24개소, 지적장애인시설 278개소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사회보호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중심의 거주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현황은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및 중증·영유아시설 553개소에 14,115명, 단기보호시설 128개소에 590명, 공동생활가정 667개소에 922명으로 총 1,348개소에 15,627명의 종사자가 배치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3). 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제외)의 경우, 정부는 중증장애인과 영유아장애인에 대해 4.7명당 2명, 아동장애인 4명당 1명, 지적·시각장애인 5명당 1명, 지체장애인과 청각·언어장애인 10명당 1명의 종사자를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3).

---

6) 2012년 기준 등록장애인 2,511,159명 중 20세 이상의 장애인은 2,418,349명으로 96.3%에 달해 대부분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2-1> 장애인거주시설 현황 (2012.12.)

(단위 : 개소, 명)

| 구분  | 합계     | 장애유형별 시설 |     |     |        |        | 중증<br>요양<br>시설 | 영유아<br>시설 | 단기<br>보호<br>시설 | 공동<br>생활<br>가정 |
|-----|--------|----------|-----|-----|--------|--------|----------------|-----------|----------------|----------------|
|     |        | 지체       | 시각  | 청각  | 지적     | 소계     |                |           |                |                |
| 시설수 | 1,348  | 40       | 16  | 8   | 278    | 342    | 201            | 10        | 128            | 667            |
| 이용자 | 30,640 | 2,057    | 786 | 335 | 11,748 | 14,926 | 11,006         | 510       | 1,438          | 2,760          |
| 종사자 | 15,627 | 14,115   |     |     |        |        |                |           | 590            | 922            |

자료 : 보건복지부(2013)

## 2) 정신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은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이다(보건복지부, 2014b). 정신요양시설의 사업 목적은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켜 요양보호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귀 도모하는 것이다.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대상은 정신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자로서 본인이 당해 시설에 입소하기를 원하는 자, 정신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로서 「정신보건법」 제21조제1항의 규정7)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자, 정신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로서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8)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

7) 제21조(보호의무자) ①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8) 제21조(보호의무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

자가 되는 자가 해당된다.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정신요양시설은 59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입소자 수는 11,144명(위탁자 8,587명, 무연고자 2,557명)으로 나타났다. 입소자의 대부분은 18세 이상의 성인이며 18세 미만의 입소자는 3명에 불과해 대부분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증상별로는 정신분열병이 9,517명으로 전체의 85.4%를 차지하며 지적장애도 5.8%인 645명으로 파악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3).

### 3) 정신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정신보건법상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병원·정신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를 의미한다(보건복지부, 2014b). 정신의료기관의 사업 목적은 급성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외래 치료함으로써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이다.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정신의료기관수는 1,280개소이며, 정신병상수는 84,220 병상으로 확인되고 있다(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2012).

<표 2-2> 정신의료기관 현황(2012년)

(단위 : 개소, 병상)

| 구분          | 합계     | 국립<br>정신병원 | 공립<br>정신병원 | 사립<br>정신병원 | 종합병원<br>정신과 | 병원<br>정신과 | 정신과<br>의원 |
|-------------|--------|------------|------------|------------|-------------|-----------|-----------|
| 정신의료<br>기관수 | 1,280  | 6          | 12         | 160        | 171         | 129       | 802       |
| 정신병상<br>수   | 84,220 | 7,975      |            | 41,779     | 29,017      |           | 5,449     |

자료: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2012년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업보고서(2012), p.98, p.101 재구성

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

정신의료기관 입퇴원과 관련,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원 포함)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고 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퇴원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sup>9)</sup>

2011~2013년 정신의료기관 강제 입원률 현황에 따르면, 자의 입원률은 2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입원환자수 69,511명 중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환자(강제입원환자) 수는 49,026명(70.5%)으로, 자의입원환자 수 20,170명(29.0%)에 비해 현저히 많아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 우리나라의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는 장기입원이 많고<sup>10)</sup>, 대표적인 정신질환인 정신분열병, 우울증 등의 발병이 대체로 20-30대 연령의 성인기에 많이 나타나므로 이들의 대부분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 2. 국내 법제 및 정책 검토

### 1) 개괄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과 관련된 법으로는 헌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공직선거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있고, 이와 관련된 국가기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있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권과 관련하여 공직선거의 4대 원칙(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

---

9)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10) ‘2013 국정감사 정책자료(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제한 대책)’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수용되는 환자의 평균 재원기간은 170일이다.

선거)이 준수되어야 하고, 장애인 당사자에게도 공직선거 4대 원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공직선거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해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이를 인지하고 최대한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시설과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권과 관련한 현행 법령과 관련 기관들의 정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 **2) 장애인 선거권 관련 법제도**

### **(1) 국내 관련법**

#### **가. 헌법**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선언하고 있고,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평등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도 법 앞에 평등하며, 선거절차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 **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이러한 장애인의 헌법상 권리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참정권 행사에 있어서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장애인이 선거에 당선되어 각급 정부 기관에

서 공직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sup>11)</sup>.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근거로 현재 선거관련 법이나 제도로 규정되어있지 않다 해도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요청이 가능하다. 한편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들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참정권)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인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

11) 공직선거법 제62조 제4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이하 “활동보조인”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활동보조인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장애인복지법

제26조(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설비를 설치하고, 선거권 행사에 관하여 홍보하며, 선거용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다.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1994. 3. 제정, 2014. 5. 14. 일부개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원칙적으로 장애 여부와 관계 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법원의 금지선고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제18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호).

### ① 선거권 행사의 보장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제6조). 투표소는 투표구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제147조 제2항).

### ② 거소투표(제38조, 제149조)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시설 또는 거소

에서 투표할 수 있다(제38조 제4항).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로서 제38조 제1항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그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를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 후 3일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일시·장소를 정하여 해당 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10명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에게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기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은 선거권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기관·시설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기표소의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제149조).

#### ③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제65조 제4항)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로서 하여금 책자형 선거공보 원고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컴퓨터의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한 후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순에 따라 선거공보를 1책으로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공보의 인쇄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④ 청각장애인을 위한 선거방송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에 있어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제70조 제6항). 방송사는 후보자 연설의 방송

에 있어서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제72조 제2항).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할 수 있다(제82조의2 제12항).

#### ⑤ 투표에 있어서의 편의제공

선거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제157조 제6항).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제151조 제7항).

### 라. 정당법

「정당법」(1962.12.제정, 2010.7.개정)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국민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되거나 활동하는 것과 관련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

### (2) 국제장애인권리협약

‘공직선거’는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에서의 국가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다른 어떠한 영역보다도 차별금지를 통한 참정권 보장이라는 원칙이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정치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적절한 지원을 할 것을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협약 제29조). 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국가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 제29조 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정치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를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다음의 사항을 이행한다.

- (a) 장애인이 투표하고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포함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자유롭게 선택된 대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정치적 및 공적 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하도록 특히 다음의 사항을 통해 보장 한다.
  - (i) 투표 절차, 시설 및 자료가 적절하고 접근가능하며 사용 및 이해가 쉽도록 보장 한다.
  - (ii) 필요한 경우 보조기술 및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촉진하면서, 장애인이 선거와 국민 투표에서 아무런 위협 없이 비밀투표를 할 권리, 정부기관의 모든 직급에 입후보하며, 효과적으로 봉직하고, 공공직능을 수행할 권리를 보호한다.
  - (iii) 유권자로서 장애인의 의지를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보장하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선택한 사람에 대해 투표하도록 지원 한다.
- (b) 장애인이 공적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차별 없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증진하고 다음을 포함하여 이들의 공적 활동 참여를 장려한다.
  - (i) 국가의 공적, 정치적 생활과 관련된 비정부 기구 및 협회, 그리고 정당의 활동과 행정에 참여
  - (ii) 국제적, 국내적, 지역적 그리고 지방적 수준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 단체의 구성과 참여

### 3) 한국의 장애인 선거권 보장 현황

#### (1) 장애인 선거권 보장 일반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 장애인용 기표대 및 투표보조용구 등을 비치하고 있고, 장애인 이동통로가 없거나 편의시설이 미비한 경우에는 편의시설(임시경사로 등)을 설치하고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 장애유형별 투표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투표안내도우미(투표소당 2~4인)를 배치하여 장애인이 투표에 참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투표안내문 및 음성투표안내 CD를 보급하여 투표방법·절차에 대해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된 점자형 선거공보 제공율은 58%였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7월에 실시된 지방 교육감 선거에서 계단과 턱이 있는 장소를 투표소로 선정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시정을 권고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같은 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74.0%의 장애인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해 선거의 전체 투표율이 46.0%인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의 투표율은 높은 편이다.

「공직선거법」 제149조에 따라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시설 또는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그 가운데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 시설의 경우에는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제3항). 거소투표 규정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조치로 규정된 것이며 10명 이상의 경우 기표소 설치를 의무화하여 공정성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기표소가 설치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 등 외부의 객관적인 선거관리 또는 참관인이 없다면 기표소 설치를 통해 얻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여전히 문제될 수 있다. 한편 10명 미만의 거주시설이라면 기표소조차 설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여전히 공정한 선거의 사각지대로 남을 수밖에 없다.

선거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단체들의 지속적인 관련법의 제·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선거권은 완전하게 보장되고 있지 않다. 선거홍보물에 점자제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선거방송에서의 수화통역도 일부에서 방영될 뿐 모든 선거관련 방송 및 홍보영상에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 여전히 투표소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곳이 많고 투표소에도 수화통역이 가능하고 장애의 유형별 특성에 대해 이해가 가능한 인력이 배치되고 있지 않다.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선거관련 정보제공은 전무한 상태이다.

#### 4) 장애인과 관련한 선거권 보장 현황

##### (1) 장애인을 위한 투표안내

###### ① 시각장애인 대상 점자형·음성형 투표안내문

○ 목 적 : 문자해독이 어려운 시각장애인 대상 투표정보의 제공

○ 내 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보받은 시각장애세대에 점자형·음성형 투표안내문 제작·발송
- 거소투표안내문 및 점자형 투표안내문, 점자형 선거제도 안내책자, 선거관리보 등에 스마트폰 등으로 스캔하면 음성으로 자동변환 출력되는 2차원바코드를 인쇄하여 제공
- 선거공보에 보이스아이 프로그램을 추가할 수 있도록 정당·후보자에 제공 및 안내
- 스마트폰 등으로 스캔하면 음성으로 자동변환·출력되는 2차원바코드 인쇄 제공
- 후보자들의 점자형 선거공보물 제작비용은 국가에서 부담

○ 시각장애인 대상 투표안내문 제공현황

(단위 : 부)

| 제18대 국선 | 제5회 지선 | 제19대 국선 | 제18대 대선 | 제6회 지선 |
|---------|--------|---------|---------|--------|
| 67,680  | 75,000 | 72,000  | 74,900  | 73,400 |

② 청각장애인을 위한 투표안내문

- 문자해독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통역 안내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QR코드를 투표안내문에 인쇄 제공

③ 청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관련방송

-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토론회·CF 등은 모두 수화 또는 자막방송 실시
- 후보자 토론회, 선거홍보 영상 등 방영시 수화와 자막방송 동시에 제공되어야 함
- 2012년부터 수화방송 크기 확대 실시

(2) 선거당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장애인투표편의제도

① 1층 투표소 확보 및 임시기표소 운영 현황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노약자의 원활한 투표소 접근성 확보

|                 | 제18대 국선                    | 제5회 지선                     | 제19대 국선                    | 제18대 대선                    | 제6회 지선                     |
|-----------------|----------------------------|----------------------------|----------------------------|----------------------------|----------------------------|
| 1층투표소<br>(개소)   | 95.7%<br>(12,681 / 13,246) | 93.1%<br>(12,461 / 13,388) | 92.2%<br>(12,412 / 13,470) | 92.5%<br>(12,523 / 13,542) | 90.4%<br>(12,354 / 13,665) |
| 임시기표소<br>(개소/명) | -                          | -                          | 84                         | 34/94                      | 118/292                    |

② 이동편의제공 및 장애인투표활동보조인 지원

-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자신의 주거지에서 투표소까지 왕복으로 이동지원 차량 제공

- 휠체어 탑재 가능차량 및 2인의 활동보조인 지원
- 투표활동보조인이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
- 투표일에 직접 투표소에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신체장애인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단위 : 대/명)

| 제18대 국선       | 제5회 지선      | 제19대 국선     | 제18대 대선     | 제6회 지선    |
|---------------|-------------|-------------|-------------|-----------|
| 1,112 / 2,541 | 772 / 2,068 | 798 / 1,490 | 927 / 1,724 | 859/1,677 |

### ③ 임시경사로 설치

- 투표당일 휠체어 이용장애인이 계단이나 단차로 인해 접근이 어려운 경우 임시경사로를 별도로 설치하여 접근가능하도록 조치

### ④ 투표안내 도우미

- 모든 투표소에 오전.오후 각 2인의 투표안내 도우미 배치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안내 및 투표편의 제공 활동

| 제18대 국선              | 제5회 지선            | 제19대 국선           | 제18대 대선           | 제6회 지선          |
|----------------------|-------------------|-------------------|-------------------|-----------------|
| 46,416명<br>(평균 3.5명) | 50,622명<br>(3.8명) | 52,595명<br>(3.9명) | 64,614명<br>(4.7명) | 54,613명<br>(4명) |

### ⑤ 시각장애인용 투표보조용구

- 시각장애 선거인의 정확한 기표지원을 위해 투표소에 점자와 홈으로 된 투표보조용구를 투표소에 시각장애인수만큼 비치하여 투표시 제공

### ⑥ 투표보조

-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1인가능)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기표소 안에 출입, 투표보조 가능

### ⑦ 거동불편자 전용 기표대 설치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을 이용하는 거동불편자의 기표 편의를 위해 일반 기표대 대비 규격이 큰 거동불편자 전용 기표대 제작·설치

## (3) 투표형식의 종류

### ① 사전투표

- 일반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유권자의 투표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14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
- 일반투표 시행일 약 한달전 이틀간의 일정으로 투표를 진행
- 일반투표와 달리 유권자는 자신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
- 통합명부 운영장비를 통해 투표용지 발급
- 투표절차  
<명부단말기에 신분증 인식> ► <지역구 확인 투표용지 출력> ► <본인확인기를 통해 지문날인 혹은 서명> ► <본인확인후 투표용지 수령> ► <투표용지 기표> ► <거주지 외 투표인의 경우 관외선거함에 거주지 내 투표인의 경우 관내선거함에 투표용지 투입>

### ② 거소투표

-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및 구치소,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실시하는 시설내 투표
- 10인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함
- 10인 미만의 경우에도 정당 등에서 요청할 경우 별도의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함
- 시설의 장은 기표소 설치·운영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설치 2일전까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를 공고

- 후보자나 정당 등은 선거권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기표소의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음

#### - 투표절차

<거소투표신청> ▶ <우편으로 투표용지 수령> ▶ <시설내 거소투표소에서 투표진행><10인미만의 경우 본인확인 후 투표용지봉투 수령 비밀이 보장되는 공간에서 기표> ▶ <우편봉투에 기표한 용지 투입> ▶ <밀봉하여 발송>

### ③ 일반투표

- 본인의 거주지 투표소에서 지정된 투표일에 참여하는 투표방식

## (4) 투표참여시 고려해야할 사항

### ① 본인확인

- 반드시 본인 개인이 자신의 신분증을 직접 지참한 상태에서 확인 서명 후 투표용지 수령
- 대리수령은 선거법 위반사항

### ② 기표방법

- 시각장애인이 점자해독이 불가능하여 점자투표용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경우 투표 보조 가능
- 가족(1인 가능)이나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 투표 보조 가능
- 점자해독이 가능한 경우 시각장애인용 투표보조용구를 요청하여 혼자 기표진행

### ③ 투표함에 넣기

- 본인의 기표결과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하여 투표함에 직접 투표용지 넣기
- 기표용지를 대리로 넣는 경우 또한 선거법 위반사항

#### ④ 장애인용 보조도구 및 편의제공

##### - 시각장애인용 점자투표보조용구

- 종이재질의 일회용 도구로 본인이 기표가 끝나면 폐기
- 현재 보조용구를 통해 점자로 후보자의 이름은 확인할 수 없으며 번호만 확인 가능
- 사전투표시에는 관내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만 보조용구 제공, 관외투표자는 제공받을 수 없음
- 미리 파악된 시각장애인의 수 만큼만 투표소에 비치, 여유분은 준비하지 않음

##### -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제공

- 투표소의 수화통역사 배치는 지원되고 있지 않음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에 따라 수화통역사 등 의사소통을 위한 지원 방법 요청이 가능함.

##### -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 경사로, 엘리베이터, 장애인용화장실, 단차 및 턱제거, 등

### 5) 장애인 선거권 관련 판결 및 인권위 결정

#### (1) 사법부 판결

##### ①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수63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

거소투표자의 기표 및 봉합이 투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직접 행하여졌으나 그 회송용 겹봉투의 봉합 부분에 거소투표자의 사인 대신 당해 투표자들이 요양치료중인 정신병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경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8조 제4항, 제17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거소투표자의 경우 기표 및 봉합이 이루어진 실제의 경위가 어떠하였는지를 묻지 아니하고 회송용 겹봉투 봉합 부분의 상·중·하 3개소에 사인날인이 전부 누락된 사실 그 자체만으로 투표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이므로, 설사 거소투표자들의 기표 및

봉합이 투표자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그들에 의하여 직접 행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회송용 겹봉투의 봉합 부분에 투표자의 사인날인이 전부 누락된 이상 이를 무효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6고합98, 2006고합10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실관계>

전북지역의 한 복지시설에서, 2006. 5. 31.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위 시설에서 주민등록이 된 채 거주하고 있는 김00 등 별지 사위등재인원 51명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의사무능력자이어서 부재자투표의 의미를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의사대로 투표를 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에도 해당 시설의 원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등이 공모하여 미리 부재자신고서의 기재 사항을 모두 작성하고 보관하고 있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후 같은 달 17. 익산시 삼기면 사무소를 통하여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하게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하였다.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법원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거소투표제도는 거동불가자 등으로 하여금 그의 거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과 같이 요양기관 등에서 타인을 돌보고 있는 자들에게는 선거권자가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거소투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에 따라 엄중히 확인해 주어야 할 공적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이에 반하여 노환·치매·장애 등으로 거소투표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거동은 가능하여 거소투표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선거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거소투표를 위한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등 허위의 부재자신고를 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치러져야 할 선거의 공정성을 문란하게 한 잘

못을 범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2)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14진정0160100 등(병합)]**

국가인권위원회는 6·4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장애인 선거인의 평등권 침해되었다고 진정이 제기된 사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에게 ①장애인 선거인이 혼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기표방안을 마련할 것, ②기표대 내에 투표 보조인이 함께 들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기표대의 규격을 개선하고, 이와 관련하여 투표 보조의 구체적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③시각장애인이 본인의 기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 **3. 선행연구 검토**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인권은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의미(제1조)하며, 평등의 가치와 차별금지의 원칙(제2조)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해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와 투표의 원칙, 국민의 의사가 정부권위의 기초가 된다는 점(제21조)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권의 범주에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역시 포함된다(국제인권규약, 1976). 특히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년 채택, 1976년 발효) 제25조는 (a)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 (b)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되는 것, (c) 일반적인 평등 조건하에 자국의 공무에 취임하는 것에 대한 권리와 기회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의 인권은 장애인이 정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비장애인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세계인권선언(1948년), 장애인 권리선언(1975년), 장애인권리협약(2006년) 등이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보장하고 모든 인권 향유를 명백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김미옥 외, 2008). 특히 장애인권리선언 제4조와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는 다른 시민들과의 동등한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 장애인의 정치적 참여와 투표권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장애인권리협약 국회비준이 이루어질 정도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시설 이용 장애인의 정치적 권리(참정권, 선거권, 투표권) 보장에 관한 연구는 희소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선행연구 검토에서는 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관련 연구와 전체 장애인의 정치적 권리 관련 연구와 이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 1)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 실태 및 인식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장애인의 선거에 대해 조사한 것은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나타난다.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시 장애인들의 국회의원선거 투표 참여 여부를 알아본 결과, 전체 장애인의 74.0%가 국회의원선거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도 제1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 장애인들의 투표 참여 여부를 알아 본 결과, 전체 장애인의 71.6%가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에 참여했던 장애유형을 보면, 청각장애가 82.2%로 가장 높았고 지체장애가 80.9%, 시각장애 77.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장애유형으로는 정신장애가 50.9%로 가장 높았으며 간질장애 48.7%, 뇌병변장애 45.1% 순으로 나타났다.

투표를 하지 않은 장애인 중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 전체 장애인 중 48.4%가 '몸이 불편해서'라고 응답하였고 '본인이 원치 않아서'라고 응답한 경우도 32.5%였다. 장애유형별로는 호흡기장애(82.0%)와 뇌병변장애(80.8%), 장루·요루장애(74.8%) 등은 '몸이 불편해서'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동에 불편이 있는 장애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자폐성장애(81.9%), 언어장애(66.2%)는 '본인이 원치 않아서'라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시간이 없어서', '본인이 원치 않아서'의 응답을 제외한 '교통 불편', '편의시설 부족', '몸이 불편해서', '도우미가 없어서', '정보 부족', '주위의 시선 때문에' 등은 다양한 차별로 인해 투표를 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런 응답은 2011년 57.9%, 2008년 54.3%, 2005년 56.6%로 나타나, 투표를 하지 못한 장애인의 과반수는 차별로 인해 투표를 하지 못하고, 이러한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장호동, 2014)

<표 2-3> 장애인이 투표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                      | 교통<br>불편 | 편의시설<br>부족 | 몸이<br>불편해서 | 도우미가<br>없어서 | 정보<br>부족 | 시간이<br>없어서 | 본인이<br>원치<br>않아서 | 주위의<br>시선<br>때문에 | 기타  |
|----------------------|----------|------------|------------|-------------|----------|------------|------------------|------------------|-----|
| 제15회<br>전국동시<br>지방선거 | 1.7      | 0.8        | 48.4       | 2.0         | 4.5      | 8.6        | 32.5             | 0.4              | 1.0 |
| 제18회<br>국회의원선거       | 3.3      | 0.3        | 44.1       | 2.6         | 2.7      | 6.5        | 38.2             | 1.3              | 1.0 |
| 제17회<br>국회의원선거       | 1.9      | 0.3        | 47.9       | 1.8         | 3.9      | 6.9        | 32.5             | 0.9              | 4.0 |

한편 2012년 19대 총선의 시설 부재자신고 현황에서 200여개의 장애인시설에서 약 8천여 명의 거주인이 부재자 신고를 하였다. 동 선거에서 거소투표 신청자는 7,610명으로 파악되었고 신고를 누락한 시설까지 포함하면 상당수의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거소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추측된다(여준민, 2014).

장애인의 선거권과 관련된 인식 조사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두 가지로 대표된다. 먼저 2008년 4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실시한 ‘장애인의 선거환경 개선 및 정치의식 반영을 위한 여론 조사’는 성인장애인 1,315명(정신장애인 13명 포함)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결과 장애인들은 현 정치계가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장애인 유권자의 83.4%가 당사자의 직접 정치 참여를 원한다고 하였다. 또한 장애인 유권자의 60.5%, 투표환경 미비로 인한 참정권 침해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답하였다. 장애인들은 침해된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고자 하는 권리의식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현실 정치에 대한 참여욕구도 과거에 비해 월등히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소에 장애인이 가지 못하는 이동권 문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제대로 된 정보를 습득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투표 등으로 인하여 많은 장애인들은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이 조사에서는 정신장애를 가진 유권자의 투표율이 현저하게 낮음을 알 수 있었다. 17대 대선 투표여부 확인에서 전체 81.4%가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정신장애인의 경우 53.8%가 참여하여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이들 유권자에게 투표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 선거 당일 독립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보다 세밀한 확인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17대 대선시 투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전체 조사대상자들은 ‘정치 등에 관심이 없어서’ 27.3%, ‘투표를 하고 싶었는데 편의시설 등의 미비로 투표를 하기 어려워서’ 26.0%, ‘다른 바쁜 일이 있어서’ 24.7% 순으로 응답했는데 비해, 정신장애인의 경우 ‘정치 등에 관심이 없어서’, ‘투표를 하고 싶었는데 편의시설 등의 미비로 투표를 하기 어려워서’가 각각 33.3%로, ‘장애인 관련 정책이나 제도를 공약으로 제시한 후보가 없어서’ 16.7%로 나타나 선거권 행사에 더욱 열악한 현실을 보여 주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는 2014년 민선 6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 실태와 정치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2014 지방선거를 대비한 장애인유권자의 정치성향과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2013년 11월 6일부터 12월 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만 19세 이상 장애인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는 유효응답 551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투표참여 실태를 보면 전체응답자 551명 중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장애인 투표참여율은 86.9%로 전국투표율보다 높게 나타나 장애인유권자들이 선거에 대해 일반유권자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역대 대통령선거의 전국 투표율은 15대 80.7%에서 17대 63%로 낮았다가 18대에는 75.8%로 높아졌지만, 장애인의 투표율은 15대 60.1%에서 16대 66.4%에서 17대 72.9%, 18대 78.5%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 72명 중 43.1%의 장애인유권자는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어 스스로 투표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5.0%는 투표소의 접근성과 이동지원 수단이 없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정치에 대한 장애인유권자의 불신과 적절한 선거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4 지방선거 투표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 80.8%가 투표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으며, 반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는 10.7%로 나타났다. 이는 18대 대선에서 장애인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한 실태와 비교할 때 2014년 지방선거에 투표하지 않겠다는 장애인유권자의 비율이 다소 높아진 수치였다. 지방선거에서 투표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가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공약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어서’ 22.0%, ‘투표소 접근이 불가능해서’ 13.6%, ‘이동지원 수단이 없어서’ 10.2%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선거에서 지지후보자 선택 시 장애인유권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정책공약’이 242명(4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물능력’ 106명(19.3%), 준법 및 도덕성 67명(12.2%), ‘소속정당’ 53명(9.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언론 및 주위의 평가’(6.4%), ‘정치경력’(4.4%), ‘학연·지연·혈연’(1.8%)은 낮게 응답하였다.

선거 때 장애인유권자들은 후보에 대한 정보는 절반이상인 53.9%(297명)가 ‘TV 및 라디오’에서 얻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선거공보물 및 안내지’가 19.4%(107명), ‘간담회·토론회’ 12.5%(69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선관위 홈페이지’, ‘후보자 홈페이지’ 등은 거의 접근이 되지 않고 있고, 정보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조사결과에서는 장애유형별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신장애인의 선거권 행사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 2)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선행연구

장애인의 정치적 권리(참정권, 선거권, 투표권)에 집중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김근식·권민숙(2008)은 정신적 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의 선거권에 대한 연구에서 선거관련종사와 사회복지사 대상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수준의 대안을 모색하였다. 김명수(2010)는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방안 제시에 머물렀으며, 김영진(2012)은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분석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의사결정능력 손상 정도에 따라 투표권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종법(2012)은 취약계층의 투표편의제공 만족도 분석에서 정보 접근성과 역량 및 활용 등에서 일반국민과 정보화 수준에서 격차가 충분히 벌어진 취약계층을 위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와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자막방송 준비(2000년)나 점자형 선거공약서 작성비용 국가부담(2007년) 및 점자투표안내문 등 제작·발송(2011년) 등의 준비는 장애인 중에서도 특정한 소수를 위한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한 한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취약계층을 구성하고 있는 유형별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정책과 제도의 개발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원영(2013)은 시설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리적 해석과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지체장애인의 선거권과 선거권의 침해 양상 파악을 통해 장애인이 안전하고 주체적으로 이동장소로 이동하여, 비밀선거원칙에 맞게 자신의 힘으로 기표할 수 있는 보조기구, 선거지원서비스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장애인의 신체운동방식을 그대로 존중하는 방식으로 실현되도록 보조, 장애인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할 여지가 있는 거소투표 지양, 최대한 많은 투표소에 다양한 보조기구 비치 등을 제안하였다. 김진우(2013)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기준을 연구하면서 선거권 보장에 대해서는 정보제공 측면에서는 쉬운 읽기형 선거공보물 제작·배포와 읽기 쉬운 방송광고 방영, 부재자투표신고 측면에서는 충분한 시간할애, 거소투표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투표 절차 전체 촬영, 투표용지에 상징 및 후보자 사진 병기, 기표소 입장 및 기표행위 지원을 조력자 배치 등을 제안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구와 권고안을 살펴보자. 국가인권위원회(2009)는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를 통해 입·퇴원 시의 문제, 정보접근, 사생활보호, 통신 등 외부와의 소통, 치료환경, 지역사회중심의 치료,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해소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으나, 선거권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두 차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2006, 2012)을 통해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소의 편의시설 확충, 홍보강화, 점자용 투표용지 등 선거용 보조기구 개발 보급, 투표소 1층 설치, 투표보조인 이용절차 간소화 등을 권하는 데 그쳤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2012)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시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정도를 확인하였으나, 여전히 시설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 선거관리위원회 투표 안내문과 웹사이트 정보접근성만을 검토하는 데 머물렀다.

다음으로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침해는 그 동안 학문적인 영역에서보다는 개별사건의 형태로 신문기사보도를 통해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건이 이슈화되기는 하지만 해결책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법적인 실현방법이 부분적으로만 검토되었다(양영신, 2003; 노광호, 2005). 정인원(2008)은 정신보건시설 이용인의 인권실태를 조사하였으나 선거권은 다루지 못하였으며, 서미경 외(2008)의 연구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례를 통해 정신보건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침해를 자유권, 존엄권, 평등권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나 시설 이용 정신장애인의 선거권은 검토되지 못했다. 김미옥 외(2008)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인권보장을 위한 다차원의 과제를 도출하였으나,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남구현 외(2005)는 양성화된 조건부신고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상황 실태 조사를 통해 투표참여경험이 61.2%이며, 이용 장애인이 원하는 사람에 투표한 비율이 51.7%, 다른 사람(시설직원 포함)이 추천한 사람에 투표한 비율이 43.2%, 선거일정과 후보자 신상, 공약사항 등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정보를 얻지 못했다는 응답이 87.1%라는 점을 들어 장애인의 선거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밝혔다. 백은령·임성만(2006)은 선거 및 투표에 참여하는 비율(88.0%)을 제시하며, 선거 및 투표참여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시설 이용 장애인의 선거권이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되거나, 아주 일부의 측면만을 살펴본 한계를 가진다. 김미옥 외(2006)는 장애인 생활시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장애정도와 능력에 따른 선거의 의미와 방법에 대한 교육, 기관장과 직원의 중립성 확보, 보조기구와 편의용품·시설의 지원과 접근성 보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설 거주 장애인의 정치적 권리(참정권, 선거권, 투표권)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개 재가 장애인 중 특정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권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은 본

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시설 이용 장애인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증적인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최근 들어 장애인의 참정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관련 토론회에서 많은 개선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염형국(2012)은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유형에 맞는 선거공보물 제공, 이동 및 접근성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2014.7)에서 이보람(2014)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진정사건을 통해 사전투표소의 접근성 문제, 비밀투표 침해 가능성 등 투표절차에서의 문제점, 시각장애인 역외 사전투표 불가능의 문제, 시각장애인 투표보조용구 점자 인쇄 시 기호만 표기(기호만 점자로 찍혀있을 뿐 기타 정당명이나 성명은 점자로 제공되지 않음), 본 투표소 접근성 문제, 신체 또는 시각에 장애인 투표보조에 대한 투표관리원의 인지미흡으로 인한 투표소에서 혼선 발생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주장하였다. 장호동(2014)은 장애인 차별 없는 선거를 위하여 공용 기표대로의 전환(장애인 뿐 아니라 비장애인의 체형, 키 등이 다른 것을 고려하여 다양한 디자인이 적용된 공용 기표대 제작), 장애인 접근성 보장된 투표소 선정(건물 외 투표소 설치), 고정 투표소 설치(장기적 계획), 정보 제공(장애인 유권자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시각장애인 점자공보물 제작, 청각장애인 선거토론회 방송 시 자막과 수화방송 동시 제공), 투표보조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조한진(2014)은 장애인 선거권 보장을 위한 법률상의 임의규정들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운동을 제안하면서, 투표장과 등록 시설에 대한 접근, 등록·투표·기표 지원, 요양원 거주자와 병원환자를 포함한 사람들의 부재자 투표 뿐만 아니라 전자투표기(Electronic Voting Machine)를 통하여 장애인의 법적 권리가 보장되도록 한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김재왕(2014)은 쉬운 투표안내문, 선거공보(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청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선거방송 자막과 수화 동시제공, 후보자 홈페이지 웹접근성 보장 규정 마련, 투표소 접근성 보장 법조문 사전투표소 적용, 거소투표에 대해 기표소 설치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선관위의 관리감독 규정 규정의 신설 등을 제안하였다.

한편 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주최한 장애인 참정권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2014.3)에서 이찬우(2014)는 척수장애인의 선거권을 위해 다양한 정보의 제공(사전에 거소투표 및 사전투표 등 투표참여방법, 투표당일 장애인호송차량 이용 방법 등), 물리적 환경지원(투표소까지의 이동지원, 접근 가능한 투표소설치, 휠체어가 이동 가능한 투표소의 내부 공간,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장애인용 주차장 확보, 차량유도 안내 도우미 등), 선거관계자들의 관련 직무교육과 장애인식개선 교육 등을 제안하였다. 김현철(2014)은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농인(청각·언어장애인)은 장애의 특성상 청인(비장애인)에 비하여 문자로 표현된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수어를 통해 공보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요구했다. 또한 하성준(2014)은 시각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에 있어 겪는 문제를 입후보자 정보 습득의 제한, 거소투표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 투표소에 대한 접근성 문제, 투표용구와 대리투표 인정 등으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개선방안으로 정보습득과 관련하여 공보물 원고 전체를 점자로 만들어 제공하고 선거공보 제작 시에도 활자의 크기를 키울 필요가 있고, 거소투표 장려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투표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 내의 공공시설을 투표소로 활용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투표소 안내를 점자 또는 문자, 전화를 통한 음성안내와 함께 투표당일 이동지원서비스 신청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기표도장의 크기를 기표란의 2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로 줄이거나 천공식 기표기 도입을 주장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철저한 교육도 요망하였다. 김치훈(2014)은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해결과제로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제한과 직결되는 「공직선거법」 등의

금치산선고에 따른 투표권 박탈조항 조속히 삭제하고 물리적 접근성 위주의 장애인 참정권 담론을 넘어 선거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사전경험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지적 접근성(cognitive accessibility)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특히 여준민(2014), 거주시설에서의 선거와 관련하여 투표소 투표의 원칙 고수(부재자 투표는 당일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에 한정), 거소투표 신청 절차 엄격화, 거소투표에 대한 선관위의 관리감독 규정 신설 등을 제안하였다.

상기 문헌 중 가장 최근(2013년-2014년)의 연구들을 통해 파악된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방안은 <표 2-4>와 같이 장애유형별, 거주유형별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안들은 일반투표를 하는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 다만 시설 거주 장애인의 거소투표에 대해서는 이를 지양(발달, 지체) 혹은 장려(시각)해야 한다는 연구자 간의 입장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표 2-4> 제안된 선거권 보장방안

| 구분 | 발달                                                                                                                                                                                                                                                                                                                                                                                                                                                                                                                                                                                                  | 시각 | 청각언어 | 지체 |
|----|-----------------------------------------------------------------------------------------------------------------------------------------------------------------------------------------------------------------------------------------------------------------------------------------------------------------------------------------------------------------------------------------------------------------------------------------------------------------------------------------------------------------------------------------------------------------------------------------------------|----|------|----|
| 공통 | <p>&lt;장애유형별 공통&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투표참여방법(거소투표, 사전투표) 적극 홍보</li> <li>-투표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 내 공공시설(주민센터, 장애인복지관) 활용</li> <li>-투표소 안내를 점자 또는 문자, 전화를 통한 음성안내와 함께 투표당일 이동지원서비스 신청과 연계</li> <li>-다양한 물리적 환경지원</li> <li>-전자투표기 도입</li> <li>-투표보조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li> <li>-후보자 홈페이지 웹접근성 보장 규정 마련</li> <li>-투표소 접근성 보장 법조문의 사전투표 적용</li> <li>-선거관계자들의 관련 직무교육과 장애인식개선 교육</li> <li>-선거권보장에 관한 임의규정들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운동</li> </ul> <p>&lt;거주시설 공통&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표소 투표의 원칙 고수(부재자 투표는 당일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에 한정)</li> </ul> |    |      |    |

| 구분               | 발달                                                                                    | 시각                                                          | 청각·언어                                                        | 지체                                                                     |
|------------------|---------------------------------------------------------------------------------------|-------------------------------------------------------------|--------------------------------------------------------------|------------------------------------------------------------------------|
|                  | -거소투표 신청 절차 엄격화(선관위 심사를 통한 거소투표 요건 강화)<br>-거소투표에 대해 기표소 설치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선관위의 관리감독 규정 신설 |                                                             |                                                              |                                                                        |
| 선거정보             | -쉬운읽기형 선거공보물 제작·배포<br>-읽기 쉬운 방송광고 방영                                                  | -공보물 원고 전체를 점자공보물로 제작<br>-선거공보 활자크기 확대<br>-선거공보 접근형식에 대한 안내 | -선거방송 시 자막과 수화방송 동시 제공<br>-수어용 선거공보 마련 및 제작 비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부담 |                                                                        |
| 투표소 접근성          |                                                                                       |                                                             |                                                              | -신체운용방식을 그대로 존중하는 방식으로 실현되도록 보조<br>-최대한 많은 투표소에 전신마비장애 인기준 다양한 보조기구 비치 |
| 투표편의 제공(투표 방법 등) | -기표소 입장 및 기표행위 지원을 위한 조력자 배치<br>-투표용지에 상징 및 후보자 사진 병기                                 | -기표도장의 크기를 줄이거나 천공식 기표기 도입                                  |                                                              | -장애인겸용 기표대 설치<br>-다양한 기표보조기구 도입 및 지원절차 규정 마련                           |
| 시설·기관 거소투표       | -거소투표 절차의 투명성을 위한 투표 절차 전체 촬영<br>-부재자투표신고에 충분한 시간할애                                   | -거소투표 장려를 위한 대책 마련                                          |                                                              | -장애인의 정치적 의사 왜곡소지 있는 거소투표 원칙적 지양<br>-비밀선거를 위한 투표관리의 강화                 |
| 법 개정·제도 등        | -「공직선거법」 등의 금치산선고에 따른 투표권 박탈조항 삭제<br>-당사자의 선거종류 및 투표절차 등에 대한 교육<br>-당사자의 모의투표체험       |                                                             |                                                              | -신형 장애인 기표대에 대한 당사자의 시연                                                |

### Ⅲ. 장애인 선거권 보장 해외사례 분석

#### 1. 개관

대의제 민주정치에서 선거는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다. 국민은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 국민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을 구성하게 되고, 국민의사의 대표기관이 민의를 반영하여 국정을 운영하게 된다. 그러므로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통한 국민의 대표기관 선출이 민주정치의 실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리이자 책무라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대의제 민주정치를 구현해온 미국, 영국 등의 국가들이 장애인 선거권 보장을 위해 어떠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 살펴 우리나라 장애인 선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2. 미국

##### 1) 연방법

##### (1) 미국선거지원법(Help America Vote Act\_HAVA)

2002년 미국 선거 지원법(HAVA)은 전국 투표 절차의 전면적 개혁을 위해 서 미 국회에 의해 통과되었다. HAVA는 2000년도 선거 이후에 확인된 유권자 투표 통로나 투표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HAVA는 선거 집행의 몇 가지 핵심분야에서 주 (state)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새로운 최소 기준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주 (state)가 선거 시스템을 대체하고 선거 집행을 개선하는,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원하는 기금을 제공하고 있다. HAVA에 의거하여 연방정부는 HAVA 기금을 주(state)에 배분하고,

HAVA 준수와 관련해 주 (state)를 지원하는 미 선거관리위원회(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_EAC)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EAC는 연방정부의 투표 시스템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투표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책임을 지고 있다. HAVA는 주 (state)가 잠정 투표, 투표 정보, 업그레이드 된 투표 기기, 주 전체 유권자 등록 데이터베이스, 유권자 신분확인 절차, 행정적 문제 제기 절차 등의 신규 프로그램이나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주 정부는 본 장의 규정으로 지급된 기금을 장애인들을 위한 물리적 접근성 향상,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비시각적 장치 제공 등 투표장소의 수와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항목에 사용하여야 한다(Tilte I SEC 101. (b)(1)(g)). 연방정부는 유권자 등록, 투표 행사, 투표 장소로의 접근 등을 포함한 모든 선거 과정에서 장애인이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은 각 주의 권리 옹호제도의 보조금을 지불한다(Part 5. SEC.291.).

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해외 유권자, 영어독해능력이 떨어지는 유권자 등에게 가장 편리하고, 접근가능하며, 쉽게 하기 위해, 투표, 유권자 등록, 투표장, 투표용구가 장애인(시각장애인 포함) 등을 포함한 모든 유권자들에게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기적 연구를 진행하며, 이를 대중에게 공개한다(Subtitle C SEC 241. (a).)

주 또는 지방정부는 (1) 이동통로, 입구, 출구, 투표장을 비롯한 투표소를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이 다른 유권자들과 동등한 수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비밀유지와 자율성 보장), (2) (1)에서 언급한 장애인을 비롯한 유권자들에게 투표장의 접근성에 대한 정보- 접근 가능한 투표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존재, 선거관리 공무원/여론조사 관리원/선거관리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연방 선거에서 장애인들의 참여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트레이닝을 제공함-를 제공하기 위해 연방정부 보조금을 사용해야 한다. 본 장에 근거하여 주 또는 지방정부가 보조금을 지급받은 회계연도가 지난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주 또는 지방정부는 보건복지

부 장관에게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수행한 활동 및 각각의 활동에 사용된 지출내역을 261(b)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Part 2 SEC 261. (b), SEC 265.).

위원회는 투표장비, 선거 시스템, 투표 기술의 질, 신뢰성, 정확성, 접근성, 적합성,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와 개발의 진행을 돕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위원회가 요구하는 양식으로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투표장비를 제대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 그러한 유권자들이 비밀이 유지된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투표를 해야 할 필요성, 영어 독해능력이 부족한 유권자들에게 대안적인 언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Voting Rights Act의 요건과 일치) 내용을 포함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단체는 본 장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Part 3. SEC. 271.).

## **(2) 노인·장애인 투표편의법(VOTING ACCESSIBILITY FOR THE ELDERLY AND HANDICAPPED ACT, Sept 28, 1984)**

노인·장애인 투표편의법은 장애인과 노인들의 유권자 등록 시설과 투표 장소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근본적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984년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각 주에서는 원칙적으로 연방 선거를 위한 모든 선거 장소가 장애인과 노인에게 접근 가능함을 보장해야 한다. 각 주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각 주 별 장애인과 노인에게 선거 당일 날 접근 가능 선거 장소와 비 접근 가능 선거 장소의 숫자와 비 접근 가능의 이유를 짝수년의 해의 12월 31일 전에 연방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각 주는 연방선거에서 각각의 상설 접수시설과 투표소에 눈에 띄게 비치된 큰 글씨로 인쇄된 설명, 통신장치를 통해 전송된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보 등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유권자 등록 및 투표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구비해야 한다.

## 2) 장기 치료시설 거주자의 투표에 관한 법률(각 주(州)법)<sup>12)</sup>

### (1) 캘리포니아 주(州)

| '투표자 등록'지원           | '투표 보조자'                                                                                                                                                                                                                                                                                                                                                                                                                                                                                                                                                                                                                                                                                  | 선거 공무원의 의무                                                                                                                                                     |
|----------------------|-------------------------------------------------------------------------------------------------------------------------------------------------------------------------------------------------------------------------------------------------------------------------------------------------------------------------------------------------------------------------------------------------------------------------------------------------------------------------------------------------------------------------------------------------------------------------------------------------------------------------------------------------------------------------------------------|----------------------------------------------------------------------------------------------------------------------------------------------------------------|
| 관련 규정 없음             | 투표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                                                                                                                                                                                                                                                                                                                                                                                                                                                                                                                                                                                                                                                                         | 보호시설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투표할 수 없는 자는 투표용지 배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우편투표용지 신청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가능하다. 우편투표용지 신청은 선거로부터 7일 전에 마감된다. 투표보조가 제공되는 투표자에게 혼동을 주는 행위는 중죄에 해당한다. |
| 관련 법률                |                                                                                                                                                                                                                                                                                                                                                                                                                                                                                                                                                                                                                                                                                           |                                                                                                                                                                |
| Ca. Elec. Code §3021 | <p><b>캘리포니아 선거법 §3021.</b> 질병이나 장애로 병원, 요양시설, 치료시설 또는 거주지에 감금된 자,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선거 장소에 도달할 수 없는 자, 또는 그 신체적 장애로 인해 건축상의 장애물에 의하여 투표장소, 기표소, 투표 기구 또는 장치에 접근할 수 없는 자, 또는 선거 당일 선거구에 부재하여 선거 장소에 도달할 수 없는 자는 우편투표용 투표용지의 우편신청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위증 시 처벌을 받겠다는 서명이 포함된 서면 진술서 통하여 투표용지의 배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진술서는 우편투표를 본 법 제3018조의 (b)의 규정에 따라 선거기관의 사무실에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우편투표용지는 선거기관 공무원에 의하여 투표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진술서를 제시한 자에게 전달된다. 투표용지를 전달하기 전 선거기관의 공무원은 투표용지 신청서의 서명과 투표자 등록 선서문의 서명을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서명은 우편투표가 시행되기 이전에 비교되어야 한다. 투표자는 투표용지를 기입한 후 신원확인용 봉투에 밀봉하고 봉투에 서명하여 직접 또는 권한을 위임한 자를 통해 선거구 내의 선거기관 공무원이나 선거 장소에 제출할 수 있다. 투표의 진행 및 개표는 우편투표용지에 의한 다른 투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p> |                                                                                                                                                                |

12) NCSL. (2013, Dec 14). Statutes Governing Voting by Residents of Long Term Care Facilities, *Assistance for Voters in Nursing Homes or Long Term Care Facilities*. US, p.2. Retrieved from <http://www.supportthevoter.gov/files/2013/12/Nursing-Home-Assistance-Voting-NCSL-Dec-13-2013.pdf> (Accessed 2014, Mar 3)

|                       |                                                                                                                                                                                                                  |
|-----------------------|------------------------------------------------------------------------------------------------------------------------------------------------------------------------------------------------------------------|
| Ca. Elec. Code §18573 | <b>캘리포니아 선거법 §18573.</b> 투표용지를 읽을 수 없는 투표자가 투표용지에 기재 또는 인쇄된 것과 다른 성명이 기재된 것으로 알게 하는 자, 또는 투표자로 하여금 그가 본래 투표하고자 한 의도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투표하도록 기만하거나 유도한 자는 중죄인에 해당하여 주(州) 형법 제1170조의 (h)에 따라 16개월 또는 2년 내지 3년의 징역에 처한다. |
|-----------------------|------------------------------------------------------------------------------------------------------------------------------------------------------------------------------------------------------------------|

## (2) 텍사스 주(州)

| ‘투표자 등록’ 지원             | ‘투표 보조자’                                                                                                                                                                                                                                                                                                                                                                                                                                                                                                                                                             | 선거 공무원의 의무 |
|-------------------------|----------------------------------------------------------------------------------------------------------------------------------------------------------------------------------------------------------------------------------------------------------------------------------------------------------------------------------------------------------------------------------------------------------------------------------------------------------------------------------------------------------------------------------------------------------------------|------------|
| 관련 규정 없음                | 투표자의 고용주 또는 고용주의 대리인이 아닌 자, 투표자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 투표자가 선택한 자                                                                                                                                                                                                                                                                                                                                                                                                                                                                                                               | 관련 규정 없음   |
| 관련 법률                   |                                                                                                                                                                                                                                                                                                                                                                                                                                                                                                                                                                      |            |
| Tex. Elec. Code §64.034 | <b>텍사스 선거법 §64.034. 선서.</b> 투표자를 보조하기로 선택된 자는 투표보조를 제공하기 전에 투표 장소에서 선거 공무원의 주관 하에 다음 선서를 수행해야 한다: “본인은 말, 신호, 또는 몸짓으로 투표자가 누구를 투표할 것인지에 관해 제안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투표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투표용지의 기재사항 낭독, 후보자 성명의 낭독 및 투표용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정당의 목록을 낭독하는 것에 본인의 투표보조를 한정합니다. 본인은 투표용지를 투표자의 지시에 따라 준비할 것입니다. 본인은 투표자의 고용주 또는 고용주의 대리인이 아니며, 투표자가 속한 조합의 조합원 또는 대리인이 아님을 선서합니다.”                                                                                                                                                                                                          |            |
| Tex. Elec. Code §86.003 | <b>텍사스 선거법 §86.003. 투표자에 투표용지를 제공하는 방식: 요구된 주소.</b><br>(a) 우편투표에 필요한 물품들은 투표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그 외의 방식으로 제공된 투표용지에 대해서는 개표하지 않는다.<br>(b) 아래 (c)에 따라 투표 물품들은 투표자의 지원서에 명시된 주소 앞으로 보내져야 한다. 투표용지를 제공하는 선거 공무원은 본 절에 규정된 바와 다른 주소에 고의로 우편을 발송해서는 안 된다.<br>(c) 투표물품이 보내지는 주소는 우편투표의 사유가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한 투표자가 투표자 등록을 한 주소 또는 등록된 우편주소가 투표자 등록지와 다를 경우 등록된 우편주소에 해당한다: (1) 투표자가 거주하는 군(郡)에 부재하여 우편주소가 해당 군(軍) 외부의 주소가 되어야 하는 경우, (2) 교도소에 구금되어 우편주소가 교도소 또는 §84.002(a)(4)의 규정에 따른 주소가 되어야 하는 경우, (3) 고령 또는 장애, 투표자가 병원이거나 요양원, 장기 치료시설, 퇴직자 시설 또는 §84.002(a)(3)의 규정과 관련된 시설 |            |

|  |                                                                                                                    |
|--|--------------------------------------------------------------------------------------------------------------------|
|  | 에 거주하여 우편주소가 상기 시설 등의 주소가 되어야 하는 경우<br>(d) 투표자의 지원서에 기재된 주소가 (c)의 규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투표자의 지원은 §86.001(c)에 따라 거부될 수 있다. |
|--|--------------------------------------------------------------------------------------------------------------------|

### (3) 뉴욕 주(州)

| ‘투표자 등록’ 지원           | ‘투표 보조자’                                                                                                                                                                                                                                                                                                                                                                                                                                                                                                                                                                                                                                                                                                                                                                                                                                                        | 선거 공무원의 의무                                                                                                                         |
|-----------------------|-----------------------------------------------------------------------------------------------------------------------------------------------------------------------------------------------------------------------------------------------------------------------------------------------------------------------------------------------------------------------------------------------------------------------------------------------------------------------------------------------------------------------------------------------------------------------------------------------------------------------------------------------------------------------------------------------------------------------------------------------------------------------------------------------------------------------------------------------------------------|------------------------------------------------------------------------------------------------------------------------------------|
| 관련 규정 없음              | 선거 감독위원회 구성원 2인 또는 시설 거주자가 선택한 자                                                                                                                                                                                                                                                                                                                                                                                                                                                                                                                                                                                                                                                                                                                                                                                                                                | 군(郡) 선거위원회는 치료시설로부터 25인 이상의 부재자 투표 요청을 받을 시, 해당 시설에 지도식 부재자 투표를 제공해야 한다. 초당적(超黨的) 감독위원회는 각 거주자에게 투표용지를 전달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침대 겹으로 전달한다. |
| 관련 법률                 |                                                                                                                                                                                                                                                                                                                                                                                                                                                                                                                                                                                                                                                                                                                                                                                                                                                                 |                                                                                                                                    |
| N.Y. Elec. Law §8-407 | <p><b>뉴욕 선거법 §8 - .407. 시설 요양원, 주거 의료 시설, 정신보건부가 운영·허가·관할하는 시설, 미국 제대 군인 관리국이 운영하는 병원 또는 시설에 거주하는 자의 투표</b></p> <p>1. 공중위생법 제2801절의 2와 3에 의하여 정신보건부가 운영·허가·관할하는 시설 또는 시설 요양원이나 주거 의료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항에 의한 성인 의료 시설, 또는 미국 제대 군인 관리국이 운영하는 병원이나 기타 시설이 적어도 하나 이상 설치된 군(郡) 또는 도시의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군(郡) 또는 도시의 선거에 부재자 투표로서 참여할 자격을 갖춘 상기 시설 거주자들 중 25인 이상이 부재자 투표를 신청한 경우 본 절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재량에 따라 해당 군(郡) 또는 도시의 상기와 같은 시설 거주자로부터 부재자 투표 신청을 받은 수에 관계없이 본 법이 규정하는 부재자 투표 절차를 제공할 수 있다.</p> <p>2. 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감독관과 마찬가지로, 하나 이상의 초당적(超黨的) 감독위원회를 임명해야하며, 각 위원회는 2인의 감독관으로 구성된다. 감독관들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직원 중에 임명될 수 있다.</p> <p>3. 선거관리위원회 감독관들은 선거일로부터 13일 이전 또는 선거일 전날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여 25인 이상의 부재자 투표가 시행되는 시설 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본 장의 법에 따라 부재자 투표소를 제공하기로 한 1인 이상의 부재자 투표가 시행되는 관할 시설에 방문해야 한다.</p> |                                                                                                                                    |

|  |                                                                                                                                                                                                                                                                                                                                                                                                                                                                                                                                                                                                                                                                                                                                                                                                                                                                                                                                                                                                                                                                                                                                                                                                                                                                                                                                                                                                                                                                                                                                                                      |
|--|----------------------------------------------------------------------------------------------------------------------------------------------------------------------------------------------------------------------------------------------------------------------------------------------------------------------------------------------------------------------------------------------------------------------------------------------------------------------------------------------------------------------------------------------------------------------------------------------------------------------------------------------------------------------------------------------------------------------------------------------------------------------------------------------------------------------------------------------------------------------------------------------------------------------------------------------------------------------------------------------------------------------------------------------------------------------------------------------------------------------------------------------------------------------------------------------------------------------------------------------------------------------------------------------------------------------------------------------------------------------------------------------------------------------------------------------------------------------------------------------------------------------------------------------------------------------|
|  | <p>4. 본 절에 규정된 시간을 준수할 수 있을 것이라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각각의 감독위원회는 하나 이상의 시설에 방문할 수 있다.</p> <p>5. 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감독위원회가 방문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관할의 시설 거주자에 대한 모든 부재자 투표용지 그리고 주(州) 선거관리위원회가 승인한 하나 이상의 휴대용 투표 용지 기입소 및 기타 물품을 전달하여, 해당 감독위원회가 그 의무를 적합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p>6.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로부터 적어도 20일 전 또는 그 다음 날 시설 거주자들로부터 부재자 투표 신청서의 필요한 숫자를 전달받아야 하며, 해당 시설 거주자들은 시설의 관리자, 운영자 또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감독위원회의 방문 일자와 시간을 정할 수 있다. 감독위원회는 근무지에 공문서로서 시설 방문 일자 및 시간 목록을 보관해야 한다.</p> <p>7. 시설의 관리자, 운영자 또는 감독관은 감독위원회가 시설에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조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는 감독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는다.</p> <p>8. 감독위원회는 해당 시설의 거주자 앞으로 보내진 부재자 투표용지를 전달해야 한다. 만약 해당 거주자가 신체적 장애를 가진 경우,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투표용지를 그의 침대 옆까지 전달해야 한다.</p> <p>9. 감독위원회는 휴대용 투표용지 기입소 또는 복수의 기입소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거주자들의 투표 비밀 보장을 위해 요구될 수 있는 안전책을 시행해야 한다.</p> <p>10. 만약 거주자가 투표용지를 기입할 수 없는 경우, 그는 투표용지를 기입함에 있어 감독위원회의 감독관 2인 또는 그가 선택하는 다른 이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만약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기입할 수 없으며 그가 기입하고자 하는 바 또는 본 절의 조항들에 관해 의사소통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투표는 이뤄질 수 없다. 본 절의 조항에 따라 투표자의 투표용지 기입을 보조한 자는 투표 내용에 대하여 발설할 수 없다.</p> <p>11. 본 절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절에 따른 모든 투표는 부재자 투표에 관한 본 장에 규정된 방식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p> <p>12. 투표용지는 투표가 진행되고 적합한 봉투에 봉인되어 감독관에게 전달되어야 한다.</p> <p>13. 감독위원회는 그 의무를 마친 즉시 모든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져와야 한다.</p> <p>14. 정치위원회나 독립적 기관 또는 누구든지 부재자 투표가 진행되는 시설이 속한 선거구에 투표감시인을 임명하는 자는 투표감시인이 해당 시설의 감독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임명할 권한이 있다.</p> <p>15. 투표 및 개표 의무를 수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선거일 투표 마감 이전에 전달된 본 절의 조항에 의거한 모든 투표용지는 본 장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선거 감독관들에게 전달되거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본 절의 세부조항에 따라 재량으로</p> |
|--|----------------------------------------------------------------------------------------------------------------------------------------------------------------------------------------------------------------------------------------------------------------------------------------------------------------------------------------------------------------------------------------------------------------------------------------------------------------------------------------------------------------------------------------------------------------------------------------------------------------------------------------------------------------------------------------------------------------------------------------------------------------------------------------------------------------------------------------------------------------------------------------------------------------------------------------------------------------------------------------------------------------------------------------------------------------------------------------------------------------------------------------------------------------------------------------------------------------------------------------------------------------------------------------------------------------------------------------------------------------------------------------------------------------------------------------------------------------------------------------------------------------------------------------------------------------------|

|  |                                                           |
|--|-----------------------------------------------------------|
|  |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관하였다가 본 장 제9절 09의 조항에 의거하여 투표 및 개표할 수 있다. |
|--|-----------------------------------------------------------|

#### (4) 플로리다 주(州)

| ‘투표자 등록’ 지원                    | ‘투표 보조자’                                                                                                                                                                                                                                                                                                                                                                                                                                                                                                                                                                                                                                                                                                                                                                                                                                                                                                                               | 선거 공무원의 의무                                                                                                                                    |
|--------------------------------|----------------------------------------------------------------------------------------------------------------------------------------------------------------------------------------------------------------------------------------------------------------------------------------------------------------------------------------------------------------------------------------------------------------------------------------------------------------------------------------------------------------------------------------------------------------------------------------------------------------------------------------------------------------------------------------------------------------------------------------------------------------------------------------------------------------------------------------------------------------------------------------------------------------------------------------|-----------------------------------------------------------------------------------------------------------------------------------------------|
| 시설은 투표자 등록 양식을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각 정당 출신의 선거 감독팀 구성원 2인 또는 투표자가 선택한 자                                                                                                                                                                                                                                                                                                                                                                                                                                                                                                                                                                                                                                                                                                                                                                                                                                                                                                   | 선거 감독관은 선거일로부터 21일 이전에 5인 이상의 투표자 이름이 포함된 치료시설 관리자의 서면 요청이 있을 시 치료시설에서 지도식 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도식 투표는 최소한 2개의 정당을 대표하는 2인 이상의 감독팀에 의해 진행된다. |
| 관련 법률                          |                                                                                                                                                                                                                                                                                                                                                                                                                                                                                                                                                                                                                                                                                                                                                                                                                                                                                                                                        |                                                                                                                                               |
| Fla. Stat. §101.655            | <p><b>플로리다 주(州) 법 §101.655. 특정 시설 내 지도식 투표 방식에 의한 부재자 투표</b></p> <p>(1) 군(郡) 선거 감독관은 해당 군(郡)내의 동법 §429.02에 규정된 생활보호시설, 동법 §400.021에 규정된 치료시설에 시설에 거주하는 부재자 투표자들에 대하여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시 지도식 투표를 제공해야 한다. 시설 내 지도식 투표의 요청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일 기준 선거일로부터 적어도 21일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 요청서에는 시설의 명칭과 주소, 부재자 투표를 희망하는 선거인들의 이름이 기재되어야 한다. 만약 요청서에 기재된 투표자들의 이름이 5인 미만인 경우, 선거 감독관은 지도식 투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p> <p>(2) 선거 감독관은 시설 관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부재자 투표를 요청한 자들에 대하여 시설 내 지도식 투표를 제공할 수 있다. 선거 감독관은 시설 관리자에게 지도식 투표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p> <p>(3) 선거 감독관은 시설 관리자와 협력하여 지도식 투표가 진행될 날짜와 시간을 정해야 한다.</p> <p>(4) 선거 감독관은 본 절에 규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도식 투표팀을 지정할 수 있다. 각 지도식 투표팀은 최소한 2인 이상의 감독관으로 구성된다. 각 지도식 투표팀은 둘 이상의 정당 대표자를 포함해야한다. 그러나 정당 후보들이 출마하는 주요 선거에 오직 하나의 정당에서 후보자들이 출마한 경우, 모든 지도식 투표팀 구성원이 그 정당의 당원일 수 있다. 출마자들은 지도식 투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p> <p>(5) 지도식 투표팀은 투표 용지를 부재자 투표자 개개인에게 전달해야 하며, 각각의 팀 구성원은 합동으로 투표를 감독해야 한다. 만일 투표자가 투표를 진행함에 있어</p> |                                                                                                                                               |

|                                        |                                                                                                                                                                                                                                                                                                                                                                                                                                                  |
|----------------------------------------|--------------------------------------------------------------------------------------------------------------------------------------------------------------------------------------------------------------------------------------------------------------------------------------------------------------------------------------------------------------------------------------------------------------------------------------------------|
|                                        | <p>보조를 요청하는 경우, 동법 §101.051에 규정된 선서가 수행되어야 하며 해당 투표자는 지도식 투표팀 구성원 2인 또는 투표자 본인이 투표를 보조하도록 선택한 자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다.</p> <p>(6) 지도식 투표팀은 보조를 제공하기 앞서 투표자에게 나중에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가 보류될 수 있으며, 지도식 투표팀 없이 투표인이 선택한 자로부터 투표 보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밝혀야 한다.</p> <p>(7) 투표자가 투표를 거부하거나 투표가 불가한 경우, 지도식 투표팀은 투표용지에 “투표 거절” 또는 “투표 불가”라고 기재해야 한다.</p> <p>(8) 투표용지에 투표가 완료되거나 본 절의 규정에 따라 기재된 이후 지도식 투표팀은 투표용지를 선거 감독관에게 전달해야하며, 선거 감독관은 동법 §101.87에 따라 투표용지를 보관해야 한다.</p> |
| Fla. Admin. Code Ann. r. 65E-5.602 (5) | <p><b>플로리다 주(主) 행정법 65E-5.602 (5)</b> 주(主) 내 민간 정신건강 치료시설은 소재 지역의 선거 감독관과 함께 시설 내 유권자의 공직 선거에 대한 투표자 등록 및 투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해당 절차는 각 거주자들에게 배포되어야 하며, 거주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생활공간 내에 눈에 잘 띄는 방식으로 게시되어야 한다. 거주자 대표에게 또한 해당 절차가 고지되어야 한다. 치료시설은 투표자 등록 양식, 부재자 투표 지원 양식 및 부재자 투표용지를 마련해야 한다.</p>                                                                                                                                                           |

### (5) 매사추세츠 주(州)

| ‘투표자 등록’ 지원        | ‘투표 보조자’                                                                                                                                                                                                                                                           | 선거 공무원의 의무                                                                                               |
|--------------------|--------------------------------------------------------------------------------------------------------------------------------------------------------------------------------------------------------------------------------------------------------------------|----------------------------------------------------------------------------------------------------------|
| 관련 규정 없음           | 투표자가 지정한 자                                                                                                                                                                                                                                                         | 호적등록 담당자나 호적등록 보조자, 또는 부재자 등록 공무원은 투표자가 요청한 경우 시설에 투표용지를 전달한다. 투표용지 기재에 보조가 필요한 투표자의 경우 누구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
| 관련 법률              |                                                                                                                                                                                                                                                                    |                                                                                                          |
| M.G.L. c. 54, §91B | <p><b>매사추세츠 주(州) 일반법 제54장 §91B.</b> 본 절의 §87에 규정된 공식적인 부재자 투표 용지와 그에 수반하는 문서들은 다음에 따라 전달된다.</p> <p>(a) 아래 (b)와 (c)의 경우를 제외하고, 투표용지와 그에 수반하는 문서들은 선불된 우편으로 전달되거나, 투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거 사무소에 방문하여 전달될 수 있다. 어떤 투표용지도 투표자가 등록한 도시 또는 지역 내 지정된 치료시설로 우편에 의해 전달될 수 없다.</p> |                                                                                                          |

|                   |                                                                                                                                                                                                                                                                                                                                                                                                                                                                                                                                                                                                                                                                                           |
|-------------------|-------------------------------------------------------------------------------------------------------------------------------------------------------------------------------------------------------------------------------------------------------------------------------------------------------------------------------------------------------------------------------------------------------------------------------------------------------------------------------------------------------------------------------------------------------------------------------------------------------------------------------------------------------------------------------------------|
|                   | <p>(b) 지정된 치료시설의 환자 또는 거주인인 투표자의 경우, 투표용지와 그에 수반하는 문서들은 호적등록 담당자나 호적등록 보조자, 또는 부재자 등록 공무원에 의하여 치료시설로 본인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한다. 본 조항의 목적에 따라 “지정된 치료시설”이라 함은 제111장 §25B에 규정된 주(州)의 도시 또는 지역 내 시설로써 적어도 선거로부터 28일 이전 2인의 호적등록 담당자 또는 선거관리위원이 서면으로 해당 도시 또는 지역 공무원에게 요청하여 지도식 부재자 투표가 지정된 곳을 의미한다.</p> <p>(c) 투표자가 위증 시 처벌을 받겠다는 선서 하에 선거일로부터 5일 전 정오 이후에 본 법 제111장 §25B에 규정된 바에 따라 치료시설에 입원했다고 밝힐 시, 선거 사무원이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투표용지와 그에 수반하는 문서들은 (b)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그러나 투표자가 서면으로 지정한 자로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아닌 자가 해당 도시 또는 지역의 선거 사무원 고유 재량에 의하여 허가된 경우 그는 선거 공무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만약 치료시설이 도시 또는 지역 외부에 위치하며, 상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 투표용지는 본인에게 직접 전달될 필요가 없고, 우편전달 될 수 있다.</p> |
| M.G.L. c. 54, §98 | <p>매사추세츠 주(州) 일반법 제54장 §98. 시각장애나 다른 신체적 장애, 문맹, 또는 영문을 읽을 수 없어 투표를 준비할 수 없는 부재자 투표자 경우 그의 재량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자에 의하여 투표용지 기재 보조를 받을 수 있다. 투표자에 의하여 지정된 자는 투표자가 글을 쓸 수 없는 등의 이유와 투표자의 이름을 봉투 내부에 기재해야 한다.</p>                                                                                                                                                                                                                                                                                                                                                                                                                                                                                  |

### 3) 미국의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관련 투표규정

| 주(State) | 정신의료기관 입원중 선거에 관한 규정                                                                                                                                                               |
|----------|------------------------------------------------------------------------------------------------------------------------------------------------------------------------------------|
| Colorado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립정신병원에 입원해있다 할지라도 선거권은 유지된다.</li> <li>- 정신질환 치료시설이나 기관은 환자의 선거인명부등재, 부재자투표 신청, 부재자투표 그리고 부재자명부 신청을 위한 다른 준비에 관한 요구를 지원하여야 한다.</li> </ul> |
| Florid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관청(the department)은 환자들이 선거인명부등재와 부재자투표 신청 그리고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li> </ul>                                                  |
| Georgi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기관)의 행정책임자(Facility administrator)는 환자들이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거나 부재자투표를 신청하고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적절하게(reasonably) 지원하여야 한다.</li> </ul>            |

|               |                                                                    |
|---------------|--------------------------------------------------------------------|
| Idaho         | - 정신보건시설은 사전의 법원명령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선거권을 부정할 수 없다.                      |
| Louisiana     | - 치료시설에 있는 환자는 단지 치료시설에 있는 환자라는 신분 때문에 선거권이 박탈될 수 없다.              |
| Maine         | - 치료시설에 있는 환자는 단지 치료시설에 있는 환자라는 신분 때문에 선거권이 박탈될 수 없다.              |
| Maryland      | - 정신장애로 시설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선거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
| Massachusetts | - 정신의료기관 입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거권을 박탈할 수 없다.                                |
| Nevada        | -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이라도 특별히 무능력이라는 판결이 내려지고 그 효력이 유지되지 않는 한 선거권이 유지된다. |
| Pennsylvania  | - 시설에 있는 사람은 시설지역 혹은 입원전 거주지역에서의 투표를 선택할 수 있다.                     |
| Rhode Island  | - 입원환자라고 할지라도 선거권과 정치활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않는다.                             |
| South Dakota  | - 정신의료기관 입원과 치료 혹은 치료명령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선거권을 박탈할 수 없다.                 |
| Tennessee     | - 입원과 법원의 치료명령 중에도 특별히 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 한 선거권은 유지된다.                   |

자료출처: [www.nami.org/election\\_voter\\_rights\\_mental\\_health\\_condition](http://www.nami.org/election_voter_rights_mental_health_condition)

미국의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선거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대부분의 주는 특별히 법원의 무능력에 관한 판결이 없는 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중인 환자라는 신분을 이유로 선거권을 박탈하거나 부정하지 않는다.

둘째, Colorado주, Georgia주 그리고 Idaho주에서는 입원환자의 선거인명 부등재, 부재자투표 신청 그리고 부재자투표를 지원할 의무를 명백히 규정하

고 있다.

셋째, Florida주는 해당관청에 환자들이 선거인명부등재와 부재자투표 신청 그리고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할 의무를 부가하고 있다.

넷째, Pennsylvania주는 입원 중인 사람은 입원시설이 있는 지역 혹은 입원전 거주지역에서의 투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미국 대부분 주의 경우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는 정신의료기관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있다. 왜냐하면 입원치료를 위해서 매우 고비용을 지불해야하는 미국 의료제도가 장기입원을 위해서는 주소를 해당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전해야만 지불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3)</sup>

미국의 정신의료기관 입원자에 관한 투표규정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환자의 선거권 보장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신의료기관은 이러한 환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의무감이 희박하고 선거공지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규정이 없다. 미국의 Colorado주, Georgia주 그리고 Idaho주에서는 입원환자의 선거인명부등재, 부재자투표 신청 그리고 부재자투표를 지원할 의무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둘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특별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Florida주는 해당관청에 환자들이 선거인명부등재와 부재자투표 신청 그리고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할 의무를 부가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13) 미국의 Florida주 등에서 정신보건관련 업무에 2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재미이경희씨와의 이메일을 통한 서면 인터뷰에서 그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자의 주소이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정신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장애혜택을 받습니다 SSI, SSDI, Medicaid, 혹은 Medicare. 그렇기 때문에 병원은 환자들의 주소지를 병원으로 옮길 이유가 있게 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으려면 social security office에 주소이전을 하게 되지요.” 라고 답하였다.

셋째, 정신의료기관에의 장기입원 상황에서도 주민등록을 정신의료기관 소재지로 이전하지 않는 우리의 관행에서는 Pennsylvania주가 보장하는 선택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은 입원시설이 있는 지역 혹은 입원전 거주지역에서의 투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넷째,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에 대한 주소지 이전의무에 관한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안이다. 궁극적으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장에 대한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소 이전에 매우 중요한 개선방안이 될 것이다.

### 3. 영국

#### 1) 장애인의 투표권에 관한 법률

| 선거관리법 (2006)                                                                                                                                                                                                                                                                                                                                          |
|-------------------------------------------------------------------------------------------------------------------------------------------------------------------------------------------------------------------------------------------------------------------------------------------------------------------------------------------------------|
| <p><b>제22장 제8편</b></p> <p><b>제73조. 관습법상 정신 상태에 기인한 ‘무능력’ 폐지</b></p> <p>(1) 사람을 그의 정신 상태를 이유로 법률상 무능력으로 규정한 모든 관습법 규정은 폐지된다.</p> <p>(2) 따라서 법률 해석에 관한 일반규정인 국민대표법(1983) 제202조 (1)의 “법률상 무능력”의 정의 부분 중 “추가” 이후에 “적용 가능한 경우”를 삽입한다.</p> <p>(3) 그리고 법률 해석에 관한 북부 아일랜드의 선출된 당국에 관한 법(1989) 제3장 제10조 (1)의 “법률상 무능력”의 정의 부분에서 “또는 모든 유효한 관습법상 규정”을 삭제한다.</p> |
| 정신능력법 (2005)                                                                                                                                                                                                                                                                                                                                          |
| <p><b>제9장 제1편 제29조. 투표권</b></p> <p>(1) 본 법의 어떤 규정도 공직 선거 또는 총선거의 투표에 관하여 타인을 대신하여(on behalf of a person) 내리는 결정을 허가하지 않는다.</p> <p>(2) “총 선거”란 정당 및 선거와 총선에 관한 법(2000) 제41장 제101조에 규정된 의미와 같다.</p>                                                                                                                                                     |

#### 2) 투표 방식에 관한 법률

아래에 따르면 영국의 시설 거주 장애인의 경우 직접투표, 우편투표 또는 대리투표를 할 수 있다.

| 국민대표법 (2000)                                                                                                                                                                                                                                                                                                                                                                                          |
|-------------------------------------------------------------------------------------------------------------------------------------------------------------------------------------------------------------------------------------------------------------------------------------------------------------------------------------------------------------------------------------------------------|
| <p><b>제2장, 부칙 4</b></p> <p>(5A) 국민대표법(1983)의 제7항이 적용되는 자(범죄자로 수감된 자가 아닌 정신장애인)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정신병원에 수감되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투표자 등록을 했는지의 문제에 관계없이 본 단락의 상기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들의 경우 다음의 방식에 따라 투표할 수 있다. -</p> <p>(a) 직접투표(병원으로부터 외출 허가를 받고, 직접투표 행위가 그 허가에 부속된 조건들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또는</p> <p>(b) 우편투표 또는 대리투표<sup>14)</sup>(by post or by proxy)(우편투표의 자격을 갖추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대리투표의 자격을 갖춘 유권자인 경우).</p> |

| '국민대표법 (1983)                                                                                                                                                                                                                       |
|-------------------------------------------------------------------------------------------------------------------------------------------------------------------------------------------------------------------------------------|
| <p><b>제2장 제7조</b></p> <p><b>거주자: 범죄자로 구금되거나 유치장에 구류 중인 자가 아닌 정신병원의 환자</b></p> <p>(1) 본 조항은 다음과 같은 자에 대하여 적용된다.-</p> <p>(a) 정신병원의 환자(정신병원에 수감되어야 할 법률상의 책임 여부에 관계없이)로,</p> <p>(b) 상기 제3A조<sup>2</sup> 또는 아래의 제7A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p>  |
| <p><b><sup>2</sup>제3A조 정신병원에 구금된 범죄자에 대한 선거권 박탈</b></p> <p>(1) 본 조항이 적용되는 자는 다음의 기간 동안</p> <p>(a) 본 조항이 적용됨에 따라 특정 장소에 명령 또는 지시에 의하여 구금되는 기간</p> <p>(b) 구금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도피 중인 기간</p> <p>법률상 의회 또는 지역 정부의 선거에 투표할 능력이 없다.</p> |
| <p><b><sup>3</sup>제7A조 거주자: 유치장 등에 구류 중인 자</b></p> <p>(1) 본 조항은 관련 명령 또는 지시에 의하여 특정 장소에 구금된 자로, 그 구금이 다음 직후에 발생한 자에 대하여 적용된다.</p> <p>(a) 범죄행위로 유죄를 선고 받은 직후, 또는</p> <p>(b) 그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형사소송 절차상 밝혀진 직후</p>                        |

14) 대리투표(proxy voting)는 유권자의 의견에 따라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행위 자체로 제한된다. 가까운 친인척(배우자, 동거인,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자녀, 손주)만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최대 2명까지 대리할 수 있다. 유권자는 대리투표인에게 본인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알려줘야 한다.

### 3) 우편투표 및 대리투표의 신청 및 요건

| 국민대표법 (2000)                                                                                                                                                                                                                                                                                                                                                                                                                                                                                                                                                                                                                                                                                                                                                                                                                                                                                                                                                                                                                                                                                                                                                                                                                                                                                                                                                                                           |
|--------------------------------------------------------------------------------------------------------------------------------------------------------------------------------------------------------------------------------------------------------------------------------------------------------------------------------------------------------------------------------------------------------------------------------------------------------------------------------------------------------------------------------------------------------------------------------------------------------------------------------------------------------------------------------------------------------------------------------------------------------------------------------------------------------------------------------------------------------------------------------------------------------------------------------------------------------------------------------------------------------------------------------------------------------------------------------------------------------------------------------------------------------------------------------------------------------------------------------------------------------------------------------------------------------------------------------------------------------------------------------------------------------|
| <p><b>제2장 부칙 4의 3</b></p> <p>(1) 유권자가 선거등록공무원에게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단체 선거 또는 두 선거 모두에 우편투표를 신청하는 경우(신청서에 무기한으로 명시하나 특정 기간을 명시하거나), 선거등록공무원은 다음을 만족할 시 신청서를 승인해야 한다. -</p> <p>(a) 선거등록공무원이 유권자가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단체 선거 또는 두 선거 모두(사정에 따라서)에 등록하였거나 등록할 것임을 확인한 경우, 그리고</p> <p>(b) 신청서가 신청자의 서명과 출생일을 포함하고 있으며 규정된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경우.</p> <p>(2) 유권자가 선거등록공무원에게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단체 선거 또는 두 선거 모두에 대리투표를 신청하는 경우(신청서에 무기한으로 명시하나 특정 기간을 명시하거나), 선거등록공무원은 다음을 만족할 시 신청서를 승인해야 한다. -</p> <p>(a) 선거등록공무원이 유권자가 신청한 관련 선거에 대리투표의 자격을 갖췄음을 확인한 경우,</p> <p>(b) 선거등록공무원이 유권자가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단체 선거 또는 두 선거 모두(사정에 따라서)에 등록하였거나 등록할 것임을 확인한 경우, 그리고</p> <p>(c) 신청서가 신청자의 서명과 출생일을 포함하고 있으며 규정된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경우.</p> <p>(3) 본 단락의 목적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대리투표의 자격을 갖춘 자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 -</p> <p>(a) 유권자가 서비스 투표자로서 선거 등록을 하거나 할 예정인 경우,</p> <p>(aa) 유권자가 선거의 유권자 등록에 익명 참가를 하는 경우,</p> <p>(b) 유권자가 다음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우 -</p> <p>(i) 그에게 할당된 또는 그가 할당되기를 희망하는 투표소에 적합한 규정에 따라 직접 방문하는 것, 또는</p> <p>(ii) 시각 장애 또는 다른 장애로 인하여 ...또는, 스코틀랜드의 지방 자치단체 선거의 경우 시각장애 또는 다른 신체적 무능으로 인하여, 투표소에서는 보조를 받지 않고 투표하는 것,</p> <p>(c) 본인이나 배우자 혹은 동성 배우자의 직업, 근무상태 또는 고용 상태의 일반적인 특성을 이유로, 또는 본인이나 배우자 혹은 동성 배우자가 교육기관에서 제공되는 교육과정에 출석해야 하는 이유로 유권자가 직접 투표소에 방문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우, 또는</p> <p>(d) 유권자가 권리를 갖춘 주소지로부터 항공 또는 항해를 통하지 않고서는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p> <p>그리고 해외 선거인 신고에 따라 선거 등록을 하거나 할 예정인 경우, 유권자는 국회의원 선거에 대리투표 할 자격을 갖춘다.</p> |

- (8) 선거등록공무원은 신청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신청인의 서명을 요구하는 (1)(b) 또는 (2)(c)의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
- (a) 신청인이 가진 어떤 장애로 인하여 서명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b) 신청인이 글을 읽거나 쓸 수 없는 이유로 서명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c) 어떤 장애 또는 무능력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일관되고 고유한 방식으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 4) 투표 보조에 관한 법률

| 장애인차별금지법 (1995)                                                                                                                                                                                                                                                                                                                                                                                                                                                                                                                                                                                                                                                                      |
|--------------------------------------------------------------------------------------------------------------------------------------------------------------------------------------------------------------------------------------------------------------------------------------------------------------------------------------------------------------------------------------------------------------------------------------------------------------------------------------------------------------------------------------------------------------------------------------------------------------------------------------------------------------------------------------|
| <p><b>제3장 제21절</b><br/> <b>서비스 제공자의 조정(調整)의 의무</b></p> <p>(1) 서비스 제공자가 공중에 제공하거나 제공을 준비하는 서비스의 관행, 규정 또는 절차가 장애인으로 하여금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어려움을 겪게 하는 모든 경우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자는 이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해당 관행, 규정 또는 절차를 조정할 의무를 가진다.</p> <p>(2) 서비스의 물리적 특성(예컨대, 건물의 설계나 건축 양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특성 또는 부지(敷地)로의 접근 및 입장에 관하여 발생하는 특성)이 장애인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어려움을 겪게 하는 모든 경우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을 위하여 합리적인 절차를 거칠 것을 의무로 한다.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해당 물리적 특성을 제거,</li> <li>(b) 상기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리적 특성을 대체,</li> <li>(c) 해당 물리적 특성을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수단을 제공, 또는</li> <li>(d) 문제시 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대체 방법을 제공,</li> </ul> |
| 국민대표법 (2000)                                                                                                                                                                                                                                                                                                                                                                                                                                                                                                                                                                                                                                                                         |
| <p><b>제2장 제13절</b><br/> <b>장애인에 대한 투표 보조</b></p> <p>(1) 1983년도 국민대표법 부칙 1(국회의원 선거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p> <p>(2) 1983년도 국민대표법 부칙 1의 규칙 29(투표소의 구비품) 단락 (3) 이후에 아래가 삽입된다.</p> <p>-</p> <p>“(3A) 선거관리위원회는 각각의 투표소에 다음을 제공해야 한다.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약시(弱視)의 투표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소 내부에 진열할 최소 하나의 확대된 투표용지.</li> </ul>                                                                                                                                                                                                                                                                                                                                           |

- (b) 맹인 또는 약시인 유권자가 선거감독관이나 동반자(1983년도 국민대표법 부칙 1의 규칙 39(1)이 규정하는 의미에 한정하여)의 보조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쫓아 고안된 장치.”
- (3) 1983년도 국민대표법 부칙 1의 규칙 39는 다음으로 교체된다.－
- “39 장애인의 투표
- (1) 유권자가 선거감독관에게 다음을 근거로 투표 보조를 허가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
- (a) 시각 장애 또는 다른 신체적 장애, 또는
- (b) 글을 읽을 수 없어 그가 동행한 타인의 보조를 받아 투표하고자 하는 경우, (본 규칙에서 “동반자”), 선거감독관은 유권자로 하여금 구술 또는 서면 진술을 통하여 그가 시각 장애 또는 다른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또는 글을 읽을 수 없는 이유로 보조를 받지 않고 투표할 수 없음을 선언하도록 해야 한다.
- (2) 선거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 (a) 유권자가 상기와 같이 장애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
- (b) 또한 동반자의 서면 선언(본 규칙에서 “장애인 유권자의 동반자 선언”)에 의해 다음을 확인한 경우
- (i) 동반자는 본 규칙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자격을 갖추었으며, 그리고
- (ii) 동반자는 이전에 동일한 선거에서 한 명 이상의 장애인 유권자를 보조한 사실이 없다,
- 선거감독관은 투표 보조 신청서를 승인하고, 본 규칙들이 동반자에게 행해지도록 요구하는 사항, 또는 유권자가 투표를 수행하거나 투표 보조를 받는 데 있어 동반자에게 행해져야 할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 (3) 본 규칙들의 목적에 따라, 유권자는 상기의 (1)에 명시된 선언을 수행한 경우 장애인 투표자에 해당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유권자의 투표를 보조할 자격을 갖춘다.－
- (a) 해당 선거에서 유권자로서 자격을 갖춘 자, 또는
- (b) 투표자의 부친, 모친, 형제, 남편, 아내, 아들 또는 딸로 만 18세 이상인 자.
- (4) 본 규칙에 따라 투표권을 위임한 모든 유권자의 등록된 성명과 번호 그리고 동반자의 성명과 주소는 명부(본 규칙에서 “동반자에게 보조를 받는 장애인 투표자 명부”)에 기재되어야 한다. 유권자의 대리인으로서 투표를 수행하는 경우, 그 투표자의 이름과 함께 기재되어야 하는 번호는 본래 유권자의 번호이다.
- (5) 동반자 선언은－
- (a) 부록에 수록된 양식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 (b) 유권자가 동반자의 투표 보조를 신청할 시 선거감독관 앞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해당 선언을 증명 및 보유할 선거감독관에게 즉시 제출되어야 한다.
- (6) 본 선언과 관련하여 어떤 수수료나 비용도 지불될 수 없다.”

- (4) 1983년도 국민대표법 부칙 1의 규칙 32(1)(e), 43(1)(e), 그리고 55(1)(c)에 등장하는 모든 “시각 장애 투표자”는 “장애인 투표자”로 교체된다.
- (5) “부록 양식”의 시각장애 투표자의 동반자 선언 양식에서 -
- (a) 등장하는 모든 “시각 장애인” 또는 “시각장애 투표자”는 “장애인 투표자”로 교체된다. 그리고,
  - (b) 양식 끝의 주석(주석1) 이후에 다음이 삽입된다. -
- “ 2. 장애인 투표자란 국회의원 선거 규칙에 의하여 시각장애나 다른 장애, 또는 글을 읽을 수 없음을 이유로 투표 보조 없이 투표를 수행할 수 없음을 선언한 투표자이다.”

## 4. 호주

### 1) 호주 연방 선거법(1918)

#### 정리 2- 부재자투표(우편투표) 혹은 사전 투표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들 제 183조와 200A조

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거일에 투표소에 출석할 수 없는 사람들:

- (a) 심각한 질병;
- (b) 쇠약; 혹은
- (c) 다가오는 출산

5. 선거일에 심각하게 아프거나 쇠약하거나 출산이 임박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장소(병원 제외)에 있어서 투표 부스에 출석할 수 없는 사람들.

#### 제 184A조 일반 부재 투표자로 등록하기 위한 신청

(2) 신청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이유 중 하나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c)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쇠약하여 신청자가 살고 있는 곳에서 투표소까지 이동할 수 없는 경우;
- (ca) 신청자가 투표일에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쇠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곳(병원 제외)에 있어 투표소까지 이동할 수 없는 경우;

#### 제 194조 부재자 투표(우편 투표)

(1) 부재자 투표를 위한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들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f) 만약 투표자가 글을 읽을 수 없거나 장애를 갖고 있어서 도움 없이는 투표를 할 수 없다면, 투표자가 선택한 다른 사람이 투표자의 지시에 따라서 부재자투표나 (d)와 (e)에서 요구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 (d) 부재자 투표자는 권한 있는 목격자가 존재하지만 투표 내용은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투표용지에 표시를 하고 그것을 접은 후 부재자 투표 증명서가 붙여진 봉투에 넣는다.
- (e) 부재자 투표자는 본인이 등록되어 있는 지역의 선거 관리 위원에게 봉투를 보내야 한다.

**제 200DL조 특정 투표자에 대한 보조**

- (1) 만약 투표자가 글을 읽을 수 없거나 도움 없이는 투표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투표자가 정한 사람이 투표자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 (d) 투표자와 함께 비어 있는 공간에 들어가 투표자의 투표를 투표용지에 표시한다;
- (e) 투표용지를 접고 투표함에 넣는다.

**제 200E조 사전투표**

- (7) 만약 투표자가 글을 읽을 수 없거나 도움 없이는 투표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투표자가 선택한 사람이 투표자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 (a) 사전투표 증명서에 요구되는 자세한 사실들을 기재한다;
  - (b) 증명서를 투표자에게 읽어 준다;
  - (c) 증명서를 완성한다;
  - (d) 투표자의 투표를 투표용지에 표시한다;
  - (e) 투표용지를 접고 그것을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 234A조 투표 장소 외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특정 투표자들**

- (1) 만약 투표소의 감독관이 투표자가 신체적 장애나 질병, 임신이나 다른 조건으로 인해 투표소에 오기 힘들다고 판단하면, 투표 소 근처의 외부 장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다.
- (2) 투표소 근처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허락하기 전에 투표소의 감독관은 반드시:
  - (a) 투표소의 투표 참관인들 중 누군가에게 투표자가 투표소 근처의 외부 장소에서 투표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 (b) 후보자 마다 각 한 명씩의 투표 참관인을 투표소 근처의 외부 장소에 둘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 (3) 세부 항목 (5)를 조건으로, 투표자는:
  - (a) 본인의 투표를 투표 관리관이 있는 상황에서 행사하여야 하며;
  - (b) 투표용지를 반드시 접어서 후보자의 이름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투표용지를 투표 관리관에게 건네야 한다.
- (4) 투표 관리관은 접힌 투표용지가 즉시 본래 투표소로 돌아가 투표자가 투표소 근처 외부 장소에서 투표하는 것을 지켜본 투표 참관인이 있는 상황에서 투표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5) 만약 투표소의 감독관이 투표자가 도움 없이는 투표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감독관은 투표자의 동의를 얻어 투표 관리관이 투표자를 대신하여 투표용지에 표시를 하고 접을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다.
- (6) 투표자는 투표 관리관에게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고 싶은지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 (7) 세부 항목 (6)의 목적에 따라 투표자가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야 한다. 투표자가 어떻게 투표하고 싶은지 투표 관리관에게 서면으로 진술하여 (이것은 선거 안내 카드가 될 수도 있고 포함할 수도 있다) 투표용지에 어떻게 표시하고 싶은지를 구체화할 수 있다.

**\* 투표 안내 카드:**

정당에 의해 발행되고 대중에게 배포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카드나 리플릿으로, 특정 정당에게 어떻게 투표를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며 보통 선거 기간에 투표 부스 근처에 놓여 있다.

(8) 만약 세부 항목 (5)가 부재 투표자나 잠정 투표자에게 적용되면, 투표 관리관은 반드시:

- (a) 세부 항목 222(1) 이나 (1A) 또는 235(2)에 언급된 신고서를 작성한다. 투표자에게 요청받은 대로 요구되는 자세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 (b) 신고서를 투표자에게 읽어주고;
- (c) 신고서를 완성하고 증명하고;
- (d) 신고서를 투표 참관인이 목격하도록 하고, 만약 투표 참관인이 없으면 투표 관리관이 목격하도록 한다.

**325A 병원 환자 등의 투표에 영향을 주는 것**

(1) 병원이나 보호 시설의 소유주나 소유주의 직원은 그들 병원이나 보호 시설의 환자 혹은 거주자의 투표에 영향을 줄 의도를 가진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처벌: \$1000 혹은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둘 다.

(2) 세부 항목 (1)의 ‘병원 혹은 보호 시설의 소유주’라는 것은 병원과 보호 시설의 소유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주요 직책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보호 시설** 이란 쇠약하거나 아픈 사람, 또는 지속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이 숙박이나 보호를 제공받는 시설(병원 제외)을 가리킨다.

## **2) 병원과 보호 시설에서의 이동 투표**

### **(Mobile Polling at Hospitals and Nursing Homes)**

호주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이동식 투표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동투표소는 병원, 교도소, 오지에 운영되며, 선거일 또는 선거일 전에 운영된다. 호주의 보호시설에 있는 거주자나 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집을 떠나지 않고”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동투표팀은 선거 관리관들로 이루어진 팀이다. 이 팀은 어떤 병원들과 보호 시설, 감옥, 소년범 구치소, 원거리 장소 등을 방문하여 투표자가 투표를 할 수 있게 돕는다.

이동 투표 팀은 투표일에 앞서 선정된 보호 시설과 병원들을 방문하여 많

은 노인들이나 중증장애인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도울 것이다. 이동 투표 팀은 투표용지, 연필, 그리고 투표함을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가져다줌으로써 개인별 서비스를 한다. 이동 투표는 모든 투표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많은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다.

## Ⅳ. 설문조사 분석

본 장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분석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방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2014. 06. 14. 시행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양적조사 결과와 시사점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 1. 투표방법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방법은 크게 투표소 투표,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로 나누어진다. 먼저 투표소 투표는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에서 정하는 선거일에 동법 제147조(투표소 설치)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7조의 2(투표소의 설비)에서 정하는 설비를 갖춘 투표소에서 이루어지는 투표를 말한다. 본 장에서는 투표소 투표를 다른 투표방법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일반투표’라 칭하였다.

둘째, 사전투표는 공직선거법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와 동법 제158조(사전투표)에 의한 투표방법이다. 사전투표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이루어지는 투표방법으로, 일반투표와 유사한 절차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전투표는 선거일보다 미리 이루어지는 투표이기 때문에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으로 정하는 구역의 선거인에게는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교부하여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사전투표함을 개함하고 사전투표자 수를 계산한 후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그리고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않고 투표하게 한 경

우에는 해당 사전투표함을 직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하는 절차에 따른다.

셋째, 거소투표는 공직선거법 제158조의2(거소투표)에 따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을 말한다.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간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근무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간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애인에게서면으로 거소투표 사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여, 소속기관이나 시설의 장 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49조(기관·시설 안의 기표소)에 따라 거소투표신고인이 있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의 장,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은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 수 등을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 후 3일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이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일시·장소를 정하여 해당 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10명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이 있는 기관·시설의 장애인에게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기표소를 설치하는 기관·시설의 장은 기표소 설치·운영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그 기표소 설치일 전 2일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

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은 선거권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기관·시설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기표소의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넷째, 선상투표는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선상투표)에 따라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전 5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자의 수와 운항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를 정하고, 해당 선박에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여 행하는 투표방법이다. 투표절차와 방법은 거소투표와 유사하나, 기표한 선상투표용지는 회송용 봉투대신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직접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한다. 선상투표 시에는 입회인(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1명 이상)을 입회시켜, 입회인과 선장이 함께 서명한 다음 선상투표자에게 선상투표용지를 교부한다.

## 2. 설문조사 개요

제1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조사를 위한 양적조사는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과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설문조사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설문조사 관련 교육을 이수한 조사원이 직접 시설을 방문하여 1:1 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문지 작성은 조사원 기입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시설 거주 장애인 대상 설문조사는 장애인 시설의 시설유형과 지역분포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장애인 시설이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표집하였다.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선거에 관해 이용자들에게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시설 종사자 대상의 설문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어,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장애인 선거권 관련 설문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전문가 FGI를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제5장에서 다룰 것이다. 시설 종사자 대상의 설문조사는 국가인권

위원회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의 도움을 받아 전자우편(e-mail)을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를 위한 도구개발 과정에서는 연구진 회의를 통해 개발된 설문지 초안을 변호사, 교수, 현장 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통해 수정·보완하였다. 그리고 경기도 부천시 소재 ○○혜림원에서 장애인 3명, 종사자 2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진행하여 설문내용을 보완한 후 최종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시설 거주 장애인과 종사자용 설문지는 각각 공통질문, 일반(사전)투표 관련 질문, 거소투표 관련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시설 거주 장애인용 설문지의 공통질문은 투표인지 여부, 6·4 지방선거 투표 여부, 투표방법, 투표 하지 않은 이유, 투표방법 결정 주체, 투표 관련 정보(선거일정, 후보자, 공약 등) 습득 방법 등이다. 일반(사전)투표와 거소투표 관련 질문의 주요내용은 투표장 동행자, 투표장까지 이동 방법, 신분증 확인 방법, 기표방법과 기표주체, 투표용지를 투표함(거소투표의 경우 회송용 봉투)에 투입한 주체 등이다. 시설 거주 장애인용 설문지 전문은 [부록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 설문조사 과정에서는 장애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투표 관련 사진을 활용하였으며, 조사원을 위한 설문조사 안내문([부록 2] 참조)을 제작하여 조사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애인 시설과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용 설문지의 공통질문은 선거에 대한 정보제공방법, 투표방법에 대한 사전교육 여부, 투표관련 사전교육방법, 시설 거주 장애인 투표방법, 투표하지 않은 장애인 있는 경우 그 이유, 투표방법 결정 주체, 종사자가 지원한 투표방법 등이다. 거소투표 관련 질문의 주요내용은 거소투표를 권유받은 경험, 거소투표를 하게 된 이유, 기표소 설치여부, 거소투표 참관인 참석 여부, 기표주체, 회송용 봉투 투입 주체 등이다. 일반(사전)투표 관련 질문의 주요내용은 일반(사전)투표 결정 이유, 투표장 동행자, 투표장 이동방법, 투표장에서 신분확인절차, 대리 신분확인 요청받은 경험, 대리투표 요청받은 경험, 기표소 동행자, 기표주체, 투표함 투입주체,

장애인 선거권 보장을 위한 의견 등이다. 시설 거주 장애인용 설문지 전문은 [부록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설 종사자용 설문지에 대한 예비조사 과정에서 종사자들이 정확하고 충분한 수준의 장애인 선거권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설문조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선거권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장애인 선거권 관련 안내문”([부록 4] 참조)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시설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거된 설문지는 총 274case이며, 1:1 면접을 통한 조사원 기입방식으로 진행되어 분석이 부절한 경우가 없어, 모두 분석에 활용하였다.

시설 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거된 설문지는 총 220case이다. 수거된 설문지 중 본 연구대상 시설유형이 아닌 경우, 무응답이 많은 경우, 응답결과의 신뢰성이 낮은 경우 등 분석에 활용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26case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된 설문지는 194case이다.

### 3. 설문조사 결과

#### 1) 장애인

##### (1) 공통 질문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 설문조사에 참여한 장애인의 성별은(<표 4-1> 참조) 유효응답자 272명 중 남성이 158명(58.1%), 여성이 114명(41.9%)으로 나타났다.

<표 4-1> 성별

| 구 분 | 빈도  | 퍼센트   |
|-----|-----|-------|
| 남성  | 158 | 58.1  |
| 여성  | 114 | 41.9  |
| 합 계 | 272 | 100.0 |

설문조사 참여 장애인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표 4-2> 참조), 응답자 264명 중 최저 연령은 19세, 최대 연령은 91세이며, 평균 연령은 45.05세(표준편차 = 14.2865세)로 나타났다.

<표 4-2> 연령

| 사례 수 | 최소값   | 최대값   | 평균      | 표준편차     |
|------|-------|-------|---------|----------|
| 264  | 19.00 | 91.00 | 45.0530 | 14.28648 |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조사에 참여한 장애인이 생활하는 시설유형을 분석한 결과(<표 4-3> 참조), 유효 응답자 272명이 생활하고 있는 시설유형은 지체·뇌병변장애인 거주시설이 87명(32.0%)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시설유형

| 구 분            | 빈도  | 퍼센트   |
|----------------|-----|-------|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23  | 8.5   |
| 지체/뇌병변장애인 거주시설 | 87  | 32.0  |
|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 10  | 3.7   |
| 청각/언어장애인 거주시설  | 17  | 6.3   |
| 지적/자폐성장래인 거주시설 | 68  | 25.0  |
| 정신요양시설         | 17  | 6.3   |
| 정신의료기관         | 50  | 18.4  |
| 합 계            | 272 | 100.0 |

다음으로 지적·자폐성장래인 거주시설 68명(25.0%), 정신의료기관 50명(18.4%),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23명(8.5%), 청각·언어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이 각각 17명(6.3%), 시각 장애인 거주시설 10명(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 참여한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시설유형에 따른 선거경험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체·뇌병변장애인 거주시설, 지적·자폐성장래인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시각·청각·언어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

양시설, 정신의료기관 등으로 시설유형을 범주화하여 활용하였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으로 분류하여 분석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장애인이 생활하는 시설의 소재지(광역자치단체)를 분석한 결과(<표 4-4> 참조), 경기도가 50명(18.5%)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 47명(17.4%), 경상남도 37명(13.7%), 부산시 33명(12.2%), 전라남도 30명(11.1%), 인천시 28명(8.9%), 경상북도 20명(7.4%), 전라북도 16명(5.9%), 제주도 13명(4.8%) 등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 시설 소재지(광역자치단체)

| 구 분 | 빈도  | 퍼센트   |
|-----|-----|-------|
| 경기  | 50  | 18.5  |
| 경남  | 37  | 13.7  |
| 경북  | 20  | 7.4   |
| 부산  | 33  | 12.2  |
| 서울  | 47  | 17.4  |
| 인천  | 24  | 8.9   |
| 전남  | 30  | 11.1  |
| 전북  | 16  | 5.9   |
| 제주  | 13  | 4.8   |
| 합 계 | 270 | 100.0 |

본 조사에 참여한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유형은 다중응답 형식으로 질문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4-5>와 같다. 먼저 지적장애가 119명(39.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신장애 65명(21.7%),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각각 30명(10.0%), 시각장애 17명(5.7%), 언어장애 16명(5.3%), 청각장애 14명(4.7%), 신장장애 3명(1.0%), 자폐성장애와 심장장애가 각각 1명(0.3%)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해당 없음’(기타)으로 응답한 4명은 알콜중독으로 정신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이다.

<표 4-5> 장애유형(다중응답)

| 구 분   | 빈도  | 퍼센트   |
|-------|-----|-------|
| 지체장애  | 30  | 10.0  |
| 뇌병변장애 | 30  | 10.0  |
| 시각장애  | 17  | 5.7   |
| 청각장애  | 14  | 4.7   |
| 언어장애  | 16  | 5.3   |
| 지적장애  | 119 | 39.7  |
| 자폐성장애 | 1   | 0.3   |
| 정신장애  | 65  | 21.7  |
| 신장장애  | 3   | 1.0   |
| 심장장애  | 1   | 0.3   |
| 기타    | 4   | 1.3   |
| 합 계   | 300 | 100.0 |

장애인의 선거권 실태를 장애유형에 따라 분석함에 있어서는 <표 4-5>의 장애유형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표 4-6>과 같이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과 언어장애,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기타로 범주화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리고 분석에 활용되는 사례 수가 적은 경우에는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를 신체적 장애,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그리고 언어장애는 감각적 장애,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그리고 정신장애는 정신적 장애로 범주화한 변수도 활용하였다.

심장장애와 신장장애가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의 경우 다른 장애를 중복으로 가지고 있으며, 선거권과 관련해서는 심장장애와 신장장애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중복으로 가지고 있는 장애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기타로 응답한 4명은 알콜중독으로 장애유형별 선거관련 특성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4-6> 장애유형 재범주화

| 구 분    | 빈도  | 퍼센트   |
|--------|-----|-------|
| 지체/뇌병변 | 54  | 19.7  |
| 시각     | 17  | 6.2   |
| 청각/언어  | 17  | 6.2   |
| 지적/자폐성 | 118 | 43.1  |
| 정신     | 64  | 23.4  |
| 기타     | 4   | 1.5   |
| 합 계    | 274 | 100.0 |

본 조사에 참여한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분석한 결과(<표 4-7> 참조), 1급 장애인이 107명(48.2%)으로 가장 많았으며, 2급 장애인이 67명(30.2%), 3급 43명(19.4%), 4급 3명(1.4%), 5급과 6급이 각각 1명(0.5%)으로 나타났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장애정도에 따른 선거경험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장애정도를 1급, 2급, 3급 이하로 범주화하여 활용하였다.

<표 4-7> 장애등급

| 구 분 | 빈도  | 퍼센트   |
|-----|-----|-------|
| 1급  | 107 | 48.2  |
| 2급  | 67  | 30.2  |
| 3급  | 43  | 19.4  |
| 4급  | 3   | 1.4   |
| 5급  | 1   | .5    |
| 6급  | 1   | .5    |
| 합 계 | 222 | 100.0 |

<표 4-8>은 장애유형(다중응답)에 따른 장애등급을 분석한 결과이다.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1급이 25명(83.3%), 시각장애인의 경우 1급이 12명(70.6%)으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1급 장애인의 비율이 높으며, 정신장애인의 경우 3급 이하가 19명(63.6%)으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3급 이하 장애인의 비율

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장애유형(다중응답)에 따른 장애등급

| 구 분   | 1급             | 2급            | 3급 이하         | 합 계             |
|-------|----------------|---------------|---------------|-----------------|
| 지체장애  | 11<br>(37.9%)  | 10<br>(34.5%) | 8<br>(27.6%)  | 29<br>(100.0%)  |
| 뇌병변장애 | 25<br>(83.3%)  | 3<br>(10.0%)  | 2<br>(6.7%)   | 30<br>(100.0%)  |
| 시각장애  | 12<br>(70.6%)  | 2<br>(11.8%)  | 3<br>(17.6%)  | 17<br>(100.0%)  |
| 청각장애  | 1<br>(16.7%)   | 5<br>(83.3%)  | 0<br>(0.0%)   | 6<br>(100.0%)   |
| 언어장애  | 2<br>(25.0%)   | 5<br>(62.5%)  | 1<br>(12.5%)  | 8<br>(100.0%)   |
| 지적장애  | 60<br>(51.7%)  | 38<br>(32.8%) | 18<br>(15.5%) | 116<br>(100.0%) |
| 자폐성장애 | 1<br>(100.0%)  | 0<br>(0.0%)   | 0<br>(0.0%)   | 1<br>(100.0%)   |
| 정신장애  | 2<br>(6.7%)    | 9<br>(30.0%)  | 19<br>(63.3%) | 30<br>(100.0%)  |
| 신장장애  | 1<br>(50.0%)   | 0<br>(0.0%)   | 1<br>(50.0%)  | 2<br>(100.0%)   |
| 심장장애  | 0<br>(0.0%)    | 0<br>(0.0%)   | 1<br>(100.0%) | 1<br>(100.0%)   |
| 합 계   | 115<br>(47.9%) | 72<br>(30.0%) | 53<br>(22.1%) | 240<br>(100.0%) |

<표 4-9>는 재범주화한 장애유형별로 장애등급을 분석한 결과이다. 신체적 장애인은 1급이 34명(65.4%), 2급이 11명(21.2%), 3급 이하가 7명(13.5%)으로 나타났으며, 감각적 장애인은 1급이 12명(46.2%), 2급이 10명(38.5%), 3급 이하가 4명(15.4%)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신적 장애인은 1급 61명(42.4%), 2급 46명(31.9%), 3급 이하 37명(25.7%)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등급의 분포는  $\chi^2 = 9.544(p < 0.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등급

| 구 분   | 신체적 장애인        | 감각적 장애인        | 정신적 장애인         | 합 계             |
|-------|----------------|----------------|-----------------|-----------------|
| 1급    | 34<br>(65.4%)  | 12<br>(46.2%)  | 61<br>(42.4%)   | 107<br>(48.2%)  |
| 2급    | 11<br>(21.2%)  | 10<br>(38.5%)  | 46<br>(31.9%)   | 67<br>(30.2%)   |
| 3급 이하 | 7<br>(13.5%)   | 4<br>(15.4%)   | 37<br>(25.7%)   | 48<br>(21.6%)   |
| 합 계   | 52<br>(100.0%) | 26<br>(100.0%) | 144<br>(100.0%) | 222<br>(100.0%) |

chi-square = 9.544, df = 4, p < 0.05

본 조사에 참여한 장애인들이 투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지 여부를 장애 유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4-10>과 같다. 신체적 장애인은 54명(100%) 전체가 투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감각적 장애인은 투표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경우가 33명(97.1%), 알지 못하는 경우가 1명(2.9%)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신적 장애인은 투표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가 155명(89.1%), 그렇지 않은 경우가 19명(10.9%)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에 따른 투표인지 여부는 chi-square = 8.189(p < 0.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체적 장애인에 비해 정신적 장애인이 투표의 의미에 대해 인지하는 정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0> 장애유형에 따른 투표인지 여부

| 구 분 | 신체적 장애인        | 감각적 장애인        | 정신적 장애인         | 합 계             |
|-----|----------------|----------------|-----------------|-----------------|
| 안다  | 54<br>(100.0%) | 33<br>(97.1%)  | 155<br>(89.1%)  | 242<br>(92.4%)  |
| 모른다 | 0<br>(0.0%)    | 1<br>(2.9%)    | 19<br>(10.9%)   | 20<br>(7.6%)    |
| 합 계 | 54<br>(100.0%) | 34<br>(100.0%) | 174<br>(100.0%) | 262<br>(100.0%) |

chi-square = 8.189, df = 2, p < 0.05

<표 4-11>은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에 따른 투표인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이다. 신체적 장애인은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100% 투표가 무엇인지 의미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감각적 장애인은 1급 장애인 1명(8.3%)만 투표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응답하여 장애등급과 투표인지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에는 1급 장애인 중 투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응답이 39명(73.6%), 모른다는 응답이 14명(26.4%)으로 분석되었으며, 2급과 3급 이하 장애인은 투표를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45명(97.8%)와 36명(97.3%)으로 나타나, 장애등급에 따른 투표인지 여부는  $\chi^2 = 17.962(p < 0.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장애등급에 따른 투표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1급 장애인의 경우에는 투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84명(84.8%), 투표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15명(15.2%)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급과 3급 이하 장애인의 경우에는 투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66명(98.5%)와 47명(97.9%)로 분석되어, 장애유형에 따른 투표인지 여부는  $\chi^2 = 13.10(p < 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적 장애인이 투표에 대한 인지정도가 가장 낮고, 장애등급별로는 1급 장애인의 투표인지 정도가 가장 낮으므로, 정신장애인(특히 1급 정신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투표의 의미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4-11>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에 따른 투표인지 여부

| 구 분        |     | 1급             | 2급             | 3급 이하         | 합 계            |
|------------|-----|----------------|----------------|---------------|----------------|
| 신체적<br>장애인 | 안다  | 34<br>(100.0%) | 11<br>(100.0%) | 7<br>(100.0%) | 52<br>(100.0%) |
|            | 모른다 | 0<br>(0.0%)    | 0<br>(0.0%)    | 0<br>(0.0%)   | 0<br>(0.0%)    |
|            | 합계  | 34<br>(100.0%) | 11<br>(100.0%) | 7<br>(100.0%) | 52<br>(100.0%) |

| 구 분     |     | 1급             | 2급             | 3급 이하          | 합 계             |
|---------|-----|----------------|----------------|----------------|-----------------|
| 감각적 장애인 | 안다  | 11<br>(91.7%)  | 10<br>(100.0%) | 4<br>(100.0%)  | 25<br>(96.2%)   |
|         | 모른다 | 1<br>(8.3%)    | 0<br>(0.0%)    | 0<br>(0.0%)    | 1<br>(3.8%)     |
|         | 합계  | 12<br>(100.0%) | 10<br>(100.0%) | 4<br>(100.0%)  | 26<br>(100.0%)  |
| 정신적 장애인 | 안다  | 39<br>(73.6%)  | 45<br>(97.8%)  | 36<br>(97.3%)  | 120<br>(88.2%)  |
|         | 모른다 | 14<br>(26.4%)  | 1<br>(2.2%)    | 1<br>(2.7%)    | 16<br>(11.8%)   |
|         | 합계  | 53<br>(100.0%) | 46<br>(100.0%) | 37<br>(100.0%) | 136<br>(100.0%) |
| 전체      | 안다  | 84<br>(84.8%)  | 66<br>(98.5%)  | 47<br>(97.9%)  | 197<br>(92.1%)  |
|         | 모른다 | 15<br>(15.2%)  | 1<br>(1.5%)    | 1<br>(2.1%)    | 17<br>(7.9%)    |
|         | 합계  | 99<br>(100.0%) | 67<br>(100.0%) | 48<br>(100.0%) | 214<br>(100.0%) |

1) 신체적 장애인: 100% 투표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 chi-square 통계량을 계산할 수 없음

2) 감각적 장애인: chi-square = 1.213, df = 2, p = 0.545

3) 정신적 장애인: chi-square = 17.962, df = 2, p < 0.001

4) 전체: chi-square = 13.100, df = 2, p < 0.01

<표 4-12> 시설(병원)에서의 투표 경험

| 구 분              | 빈도  | 퍼센트   |
|------------------|-----|-------|
| 투표경험 있음          | 188 | 71.2  |
| 투표경험 없음          | 65  | 24.6  |
| 잘 모르겠다(기억나지 않는다) | 11  | 4.2   |
| 합 계              | 264 | 100.0 |

<표 4-12>는 원래의 집을 떠나 시설(병원)에서 생활하는 동안 투표를 해본 경험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원래의 집을 떠나 시설(병원)에서 투표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88명(71.2%)이며, 투표를 해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65명(24.6%), 잘 모르겠다(기억나지 않는다)는 응답이 11명(4.2%)으로 나타났다. <표 4-10>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투표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응답은 7.6%

에 불과하지만, <표 4-12>를 보면 시설(병원)에서의 투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24.6%(잘 모르겠다를 제외하면 25.7%)에 이른다.

<표 4-13>은 투표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에 따른 시설(병원)에서 생활하는 동안의 투표경험을 분석한 결과이며, 투표 인지 여부에 따른 시설(병원)에서의 투표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 중 시설(병원)에서 생활하는 동안 투표 경험이 있는 장애인은 181명(75.1%), 투표 경험이 없는 장애인은 60명(24.9%)으로 나타나, 시설 거주 장애인 중 투표의 의미는 알지만 투표를 하지 못한 장애인이 상당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3> 투표인지 여부에 따른 시설(병원)에서의 투표 경험

| 구 분      | 투표 인지         | 투표 미인지       | 합 계           |
|----------|---------------|--------------|---------------|
| 투표 경험 있음 | 181<br>75.1%  | 7<br>58.3%   | 188<br>74.3%  |
| 투표 경험 없음 | 60<br>24.9%   | 5<br>41.7%   | 65<br>25.7%   |
| 합 계      | 241<br>100.0% | 12<br>100.0% | 253<br>100.0% |

chi-square = 1.684, df = 1, p = 0.167

<표 4-12>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사례 수가 적고 장애유형별 분석이 불필요한 “잘 모르겠다(기억나지 않는다)”는 응답을 결측값으로 처리하고, 장애유형별로 시설(병원)에서 생활하는 동안 투표한 경험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4-14>와 같다.

지체·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투표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은 45명(84.9%)이며, 그렇지 않은 장애인은 8명(15.1%)으로 나타났다. 시각·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에는 100%가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투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지적·자폐성장애인은 97명(98.0%)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투표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신장애인의 경우

에는 시설(병원)에서 생활하는 동안 투표를 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이 12명(18.8%), 그렇지 않은 장애인이 52명(81.3%)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장애 유형에 따른 시설(병원)에서의 투표 경험은  $\chi^2 = 150.057(p < 0.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장애등급에 따른 시설(병원)에서의 투표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장애유형별 시설(병원)에서의 투표 경험

| 구 분        | 지체/뇌병변<br>장애인  | 시각/청각/언어<br>장애인 | 지적/자폐성<br>장애인  | 정신<br>장애인      | 합 계             |
|------------|----------------|-----------------|----------------|----------------|-----------------|
| 투표경험<br>있음 | 45<br>(84.9%)  | 33<br>(100.0%)  | 97<br>(98.0%)  | 12<br>(18.8%)  | 187<br>(75.1%)  |
| 투표경험<br>없음 | 8<br>(15.1%)   | 0<br>(0.0%)     | 2<br>(2.0%)    | 52<br>(81.3%)  | 62<br>(24.9%)   |
| 합 계        | 53<br>(100.0%) | 33<br>(100.0%)  | 99<br>(100.0%) | 64<br>(100.0%) | 249<br>(100.0%) |

$\chi^2 = 150.057$ ,  $df = 3$ ,  $p < 0.001$

시설(병원)에서 생활하는 동안 투표 경험이 있는지를 시설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4-15>와 같다.

<표 4-15> 시설유형별 시설(병원)에서의 투표 경험

| 구 분        | 장애인 거주시설        | 정신요양시설         | 정신의료기관         | 합 계             |
|------------|-----------------|----------------|----------------|-----------------|
| 투표경험<br>있음 | 176<br>(95.1%)  | 7<br>(41.2%)   | 5<br>(10.0%)   | 188<br>(74.6%)  |
| 투표경험<br>없음 | 9<br>(4.9%)     | 10<br>(58.8%)  | 45<br>(90.0%)  | 64<br>(25.4%)   |
| 합 계        | 185<br>(100.0%) | 17<br>(100.0%) | 50<br>(100.0%) | 252<br>(100.0%) |

$\chi^2 = 161.326$ ,  $df = 2$ ,  $p < 0.00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 장애인의 경우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투표한 경험

이 있다는 응답이 176명(95.1%),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9명(4.9%)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이용자의 경우에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투표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7명(41.2%), 투표 경험이 없는 경우가 10명(58.8%)으로 나타났다. 정신의료기관 이용자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생활하는 동안 투표 경험이 있는 경우는 5명(10.0%)에 불과하였고, 투표 경험이 없는 경우는 45명(90.0%)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 시설(병원)에서의 투표 경험은  $\chi^2 = 161.326(p < 0.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설(병원)에서 생활하는 동안의 투표 경험에 관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의 투표에 대한 인지여부에 따른 시설에서의 투표 경험을 시설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4-16>과 같다.

<표 4-16> 정신장애인의 투표인지 여부에 따른 시설(병원)에서의 투표 경험

| 구 분            |          | 투표 인지          | 투표 미인지        | 합 계            |
|----------------|----------|----------------|---------------|----------------|
| 정신<br>요양<br>시설 | 투표 경험 있음 | 7<br>(41.2%)   | 0<br>(0.0%)   | 7<br>(41.2%)   |
|                | 투표 경험 없음 | 10<br>(58.8%)  | 0<br>(0.0%)   | 10<br>(58.8%)  |
|                | 합계       | 17<br>(100.0%) | 0<br>(0.0%)   | 17<br>(100.0%) |
| 정신<br>의료<br>기관 | 투표 경험 있음 | 4<br>(9.8%)    | 0<br>(0.0%)   | 4<br>(8.7%)    |
|                | 투표 경험 없음 | 37<br>(90.2%)  | 5<br>(100.0%) | 42<br>(91.3%)  |
|                | 합계       | 41<br>(100.0%) | 5<br>(100.0%) | 46<br>(100.0%) |
| 전체             | 투표 경험 있음 | 11<br>(19.0%)  | 0<br>(0.0%)   | 11<br>(17.5%)  |
|                | 투표 경험 없음 | 47<br>(81.0%)  | 5<br>(100.0%) | 52<br>(82.5%)  |
|                | 합계       | 58<br>(100.0%) | 5<br>(100.0%) | 63<br>(100.0%) |

투표를 인지하고 있으면서 시설(병원)에서 투표경험이 없는 정신장애인이 47명(81.0%)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정신요양시설이나 정신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의 상당수가 투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있지만 투표경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정신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선거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투표 경험이 있는 정신장애인의 비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정신의료기관이 이용자들의 선거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표 4-17>은 2014년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투표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투표를 한 시설(병원) 이용자는 189명(71.3%)으로 조사되었으며, 투표를 하지 않은 시설(병원) 이용자는 62명(23.4%), 잘 모르겠다(기억나지 않는다)는 응답이 14명(5.3%)으로 나타났다.

<표 4-17> 6·4 지방선거 투표 여부

| 구 분              | 빈도  | 퍼센트   |
|------------------|-----|-------|
| 투표했음             | 189 | 71.3  |
| 투표하지 않았음         | 62  | 23.4  |
| 잘 모르겠다(기억나지 않는다) | 14  | 5.3   |
| 합 계              | 265 | 100.0 |

2014년 6·4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여부를 기억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제외하고, 장애유형에 따른 6·4 지방선거 투표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표 4-18>과 같다. 지체·뇌병변장애인의 경우 6·4 지방선거에 투표를 한 장애인은 49명(94.2%), 투표를 하지 않은 장애인은 3명(5.8%)으로 나타났다. 시각·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에는 투표를 한 장애인이 30명(90.9%), 투표를 하지 않은 장애인은 3명(9.1%)으로 조사되었다. 지적·자폐성장애인은 98명(98.0%)이 투표를 하였으며, 2명(20.%)이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6·4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한 장애인이 11명(17.7%)밖에

되지 않았으며, 51명(82.3%)은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이것은 6·4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응답자 59명 중 86.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장애유형에 따른 6·4 지방선거 투표여부는  $\chi^2 = 155.901(p < 0.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장애유형별 6·4 지방선거 투표 여부

| 구 분         | 지체/뇌병변<br>장애인  | 시각/청각/언어<br>장애인 | 지적/자폐성<br>장애인   | 정신<br>장애인      | 합 계             |
|-------------|----------------|-----------------|-----------------|----------------|-----------------|
| 투표했음        | 49<br>(94.2%)  | 30<br>(90.9%)   | 98<br>(98.0%)   | 11<br>(17.7%)  | 188<br>(76.1%)  |
| 투표하지<br>않았음 | 3<br>(5.8%)    | 3<br>(9.1%)     | 2<br>(2.0%)     | 51<br>(82.3%)  | 59<br>(23.9%)   |
| 합 계         | 52<br>(100.0%) | 33<br>(100.0%)  | 100<br>(100.0%) | 62<br>(100.0%) | 247<br>(100.0%) |

$\chi^2 = 155.901$ ,  $df = 3$ ,  $p < 0.001$

<표 4-19>는 6·4 지방선거 투표여부를 시설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 장애인의 경우 6·4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했다는 응답이 177명(95.7%),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8명(4.3%)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신요양시설 이용자의 경우에는 투표를 한 장애인이 6명(35.3%), 투표를 하지 않은 장애인이 11명(64.7%)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정신의료기관 이용자의 경우에는 6·4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했다는 응답이 5명(10.4%),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43명(89.6%)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 6·4 지방선거 투표여부는  $\chi^2 = 164.124(p < 0.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장애등급에 따른 6·4 지방선거 투표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4 지방선거 투표여부에 관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표 4-16>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정신장애인의 투표와 관련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정신의료기관과 함께 정신요양시설에서도 정신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

한 서비스 제공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4-19> 시설유형별 6·4 지방선거 투표 여부

| 구 분      | 장애인 거주시설        | 정신요양시설         | 정신의료기관         | 합 계             |
|----------|-----------------|----------------|----------------|-----------------|
| 투표 했음    | 177<br>(95.7%)  | 6<br>(35.3%)   | 5<br>(10.4%)   | 188<br>(75.2%)  |
| 투표하지 않았음 | 8<br>(4.3%)     | 11<br>(64.7%)  | 43<br>(89.6%)  | 62<br>(24.8%)   |
| 합 계      | 185<br>(100.0%) | 17<br>(100.0%) | 48<br>(100.0%) | 250<br>(100.0%) |

chi-square = 164.124, df = 2, p < 0.001

<표 4-20>은 6·4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를 장애유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이다. 응답자 스스로가 하고 싶지 않아서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장애인이 18명(30.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투표(선거)에 대해 몰라서 투표를 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16명(27.1%),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투표를 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13명(22.0%), 기타 응답이 12명(20.3%)으로 나타났다.

<표 4-20> 장애유형별 6·4 지방선거 미투표 이유

| 구 분            | 지체/뇌병변 장애인    | 시각/청각/언어 장애인  | 지적/자폐성 장애인    | 정신 장애인         | 합 계            |
|----------------|---------------|---------------|---------------|----------------|----------------|
| 하고 싶지 않아서      | 0<br>(0.0%)   | 1<br>(50.0%)  | 1<br>(50.0%)  | 16<br>(30.2%)  | 18<br>(30.5%)  |
|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 0<br>(0.0%)   | 0<br>(0.0%)   | 0<br>(0.0%)   | 13<br>(24.5%)  | 13<br>(22.0%)  |
| 투표(선거)에 대해 몰라서 | 1<br>(50.0%)  | 0<br>(0.0%)   | 1<br>(50.0%)  | 14<br>(26.4%)  | 16<br>(27.1%)  |
| 기타             | 1<br>(50.0%)  | 1<br>(50.0%)  | 0<br>(0.0%)   | 10<br>(18.9%)  | 12<br>(20.3%)  |
| 합 계            | 2<br>(100.0%) | 2<br>(100.0%) | 2<br>(100.0%) | 53<br>(100.0%) | 59<br>(100.0%) |

장애유형별로는 지체·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투표(선거)에 대해 몰라서 투표를 하지 못했다는 응답과 시설 직원이 투표하러 가지 말라고 해서 투표를 못했다는 응답이 각각 1명씩으로 나타났다. 시각·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에는 스스로 하고 싶지 않아서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과 다리가 아파서 투표하러 가지 못했다는 응답이 각각 1명 있었다. 지적·자폐성장장애인의 경우에는 스스로 하고 싶지 않아서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와 투표(선거)에 대해 몰라서 투표를 하지 못했다는 경우가 각각 1명씩으로 조사되었다. 6·4 지방선거에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한 전체 장애인 중 89.8%를 차지하는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스스로 하고 싶지 않아서 투표를 하지 않은 장애인이 16명(30.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투표(선거)에 대해 몰라서 투표하지 못한 장애인이 14명(26.4%),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투표를 하지 못한 장애인이 13명(24.5%)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타(10명, 18.9%) 응답으로는 병원에 있어서 투표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3명, 병원에서 연락을 해 주지 않아 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 사람들이 장애인은 투표할 권리가 없다고 해서 투표할 생각을 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 거소투표 절차가 까다로워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 각각 1명씩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응답을 포함하여 6·4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선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투표와 관련된 절차와 이동 등의 지원이 있으면 투표를 하지 않은 장애인 중 70% 정도가 투표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에 관한 충분한 수준의 정보제공, 투표장까지의 이동지원 등 투표와 관련된 전반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4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했다고 응답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거소투표, 사전투표, 일반투표 중 어떤 방법으로 투표하였는지를 질문한 결과(<표 4-21> 참조), 일반투표 또는 사전투표를 했다는 응답이 114명(65.1%)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소투표를 한 장애인이 59명(33.7%), 잘 모르겠다(기억나지 않는다)는 응답이 2명(1.1%)으로 분석되었다.

<표 4-21> 6·4 지방선거 투표 방법

| 구 분              | 빈도  | 퍼센트   |
|------------------|-----|-------|
| 거소투표             | 59  | 33.7  |
| 일반투표 또는 사전투표     | 114 | 65.1  |
| 잘 모르겠다(기억나지 않는다) | 2   | 1.1   |
| 합 계              | 175 | 100.0 |

<표 4-21>에서 6·4 지방선거에서 어떤 방법으로 투표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장애유형에 따른 투표방법을 분석한 결과는 <표 4-22>와 같다. 지체·뇌병변장애인 중 거소투표를 한 경우는 22명(48.9%), 일반투표 또는 사전투표를 한 경우는 23명(51.1%)으로 나타났으며, 시각·청각·언어장애인 중 거소투표를 한 장애인은 15명(68.2%), 일반투표 또는 사전투표를 한 장애인은 7명(31.8%)이었다. 지적·자폐성 장애인 중 거소투표를 한 장애인은 21명(22.3%), 일반투표 또는 사전투표를 한 장애인은 73명(77.7%)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장애인 중 투표를 한 장애인은 100%(11명 - 정신요양 시설 이용자 6명, 정신의료기관 이용자 4명, 시설유형 무응답 1명) 일반투표 또는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장애유형에 따른 투표방법은  $\chi^2 = 27.366(p < 0.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장애유형별 투표 방법

| 구 분     | 지체/뇌병변<br>장애인  | 시각/청각/언어<br>장애인 | 지적/자폐성<br>장애인  | 정신<br>장애인      | 합 계             |
|---------|----------------|-----------------|----------------|----------------|-----------------|
| 거소투표    | 22<br>(48.9%)  | 15<br>(68.2%)   | 21<br>(22.3%)  | 0<br>(0.0%)    | 58<br>(33.7%)   |
| 일반·사전투표 | 23<br>(51.1%)  | 7<br>(31.8%)    | 73<br>(77.7%)  | 11<br>(100.0%) | 114<br>(66.3%)  |
| 합 계     | 45<br>(100.0%) | 22<br>(100.0%)  | 94<br>(100.0%) | 11<br>(100.0%) | 172<br>(100.0%) |

$\chi^2 = 27.366$ ,  $df = 3$ ,  $p < 0.001$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을 동시에 고려하여 투표방법을 분석한 결과는 <표 4-23>과 같다.

<표 4-23>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에 따른 투표 방법

| 구 분     |         | 1급             | 2급             | 3급 이하          | 합 계             |
|---------|---------|----------------|----------------|----------------|-----------------|
| 신체적 장애인 | 거소투표    | 17<br>(58.6%)  | 3<br>(37.5%)   | 1<br>(14.3%)   | 21<br>(47.7%)   |
|         | 일반·사전투표 | 12<br>(41.4%)  | 5<br>(62.5%)   | 6<br>(85.7%)   | 23<br>(52.3%)   |
|         | 합계      | 29<br>(100.0%) | 8<br>(100.0%)  | 7<br>(100.0%)  | 44<br>(100.0%)  |
| 감각적 장애인 | 거소투표    | 9<br>(90.0%)   | 2<br>(33.3%)   | 3<br>(100.0%)  | 14<br>(73.7%)   |
|         | 일반·사전투표 | 1<br>(10.0%)   | 4<br>(66.7%)   | 0<br>(0.0%)    | 5<br>(26.3%)    |
|         | 합계      | 10<br>(100.0%) | 6<br>(100.0%)  | 3<br>(100.0%)  | 19<br>(100.0%)  |
| 정신적 장애인 | 거소투표    | 12<br>(30.0%)  | 6<br>(16.2%)   | 3<br>(13.6%)   | 21<br>(21.2%)   |
|         | 일반·사전투표 | 28<br>(70.0%)  | 31<br>(83.8%)  | 19<br>(86.4%)  | 78<br>(78.8%)   |
|         | 합계      | 40<br>(100.0%) | 37<br>(100.0%) | 22<br>(100.0%) | 99<br>(100.0%)  |
| 전체      | 거소투표    | 38<br>(48.1%)  | 11<br>(21.6%)  | 7<br>(21.9%)   | 56<br>(34.6%)   |
|         | 일반·사전투표 | 41<br>(51.9%)  | 40<br>(78.4%)  | 25<br>(78.1%)  | 106<br>(65.4%)  |
|         | 합계      | 79<br>(100.0%) | 51<br>(100.0%) | 32<br>(100.0%) | 162<br>(100.0%) |

1) 신체적 장애인: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많아 chi-square test가 적절하지 않음

2) 감각적 장애인: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많아 chi-square test가 적절하지 않음

3) 정신적 장애인: chi-square = 3.156, df = 2, p = 0.206

4) 전체: chi-square = 12.468, df = 2, p < 0.01

장애등급에 따른 투표방법의 차이는  $\chi^2 = 12.468(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급 장애인의 경우 거소투표가 38명(48.1%), 일반투표 또는 사전투표가 41명(51.9%)으로, 2급 이하 장애인에 비해 거소투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급 장애인은 거소투표가 11명(21.6%), 일반투표 또는 사전투표가 40명(78.4%), 3급 이하 장애인은 거소투표 7명(21.9%), 일반투표 또는 사전투표 25명(78.1%)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각 장애유형별로 거소투표를 한 비율은 1급 장애인이 2급 이하 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논의한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6·4 지방선거 투표방법 관련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거소투표 비율은 지체·뇌병변 등 신체적 장애인과 시각·청각·언어 등 감각적 장애인이 정신적 장애인보다 높고, 1급 장애인이 2급 이하 장애인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일반투표 또는 사전투표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신체적 장애인과 감각적 장애인이 투표 진행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6·4 지방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시설(병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거소투표, 사전투표, 일반투표 등의 투표방법을 누가 결정했는지를 질문한 결과(<표 4-24> 참조), 본인 스스로 결정했다는 응답이 111명(56.3%)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병원) 직원이 결정했다는 응답이 63명(32.0%), 기억나는 않는 등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시설(병원) 이용자가 23명(11.7%)으로 나타났다.

<표 4-24> 6·4 지방선거 투표방법 결정 주체

| 구 분              | 빈도  | 퍼센트   |
|------------------|-----|-------|
| 내가 결정했다          | 111 | 56.3  |
| 시설직원이 결정했다       | 63  | 32.0  |
| 잘 모르겠다(기억나지 않는다) | 23  | 11.7  |
| 합 계              | 197 | 100.0 |

6·4 지방선거에서 투표방법을 누가 결정했는지를 모르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응답한 장애인을 제외하고, 장애유형별로 투표방법 결정주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25>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4-25> 장애유형별 투표 방법 결정주체

| 구 분      | 지체/뇌병변<br>장애인  | 시각/청각/언어<br>장애인 | 지적/자폐성<br>장애인  | 정신<br>장애인      | 합 계             |
|----------|----------------|-----------------|----------------|----------------|-----------------|
| 내가 결정했다  | 30<br>(61.2%)  | 26<br>(83.9%)   | 45<br>(54.2%)  | 9<br>(90.0%)   | 110<br>(63.6%)  |
| 직원이 결정했다 | 19<br>(38.8%)  | 5<br>(16.1%)    | 38<br>(45.8%)  | 1<br>(10.0%)   | 63<br>(36.4%)   |
| 합 계      | 49<br>(100.0%) | 31<br>(100.0%)  | 83<br>(100.0%) | 10<br>(100.0%) | 173<br>(100.0%) |

chi-square = 11.787, df = 3, p < 0.01

지체·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본인이 직접 투표방법을 결정했다는 응답이 30명(61.2%), 시설 직원이 결정했다는 응답이 19명(38.8%)으로 조사되었다. 시각·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에는 직접 투표방법을 결정했다는 응답이 26명(83.9%), 시설 직원이 결정했다는 응답이 5명(16.1%)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적·자폐성장애인의 경우 투표방법을 직접 결정한 경우는 45명(54.2%)으로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에 비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직원이 결정했다는 응답이 38명(45.8%)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결정한 장애인이 9명(90.0%), 직원이 결정했다는 응답이 1명(10.0%)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에 따른 투표방법 결정주체는 chi-square = 11.787(p <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장애등급에 따른 투표방법 결정주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방법을 시설(병원) 직원이 결정했다는 응답비율이 36.4%에 이른다는 점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특히 투표방법 결정주체가 장애등급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설(병원) 직원이 이용자의 투표방법

을 결정한 기준과 근거를 찾기 힘들어 보인다. 장애인의 선거권은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며, 정당한 투표권 보장은 어떤 방법으로 투표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설 거주 장애인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는 투표방법 결정의 자기결정권 보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시설(병원) 직원이 장애인의 투표방법을 결정했다고 응답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유형을 분석한 결과(<표 4-26> 참조), 지체·뇌병변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가 31명(49.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적·자폐성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가 22명(34.9%),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가 7명(11.1%),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청각·언어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이용자가 각각 1명(1.6%)으로 분석되었다.

<표 4-26> 투표방법을 직원이 선택한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유형

| 구 분           | 빈도 | 퍼센트   |
|---------------|----|-------|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7  | 11.1  |
| 지체/뇌병변장애인거주시설 | 31 | 49.2  |
| 시각장애인거주시설     | 1  | 1.6   |
| 청각/언어장애인거주시설  | 1  | 1.6   |
| 지적/자폐성장애인거주시설 | 22 | 34.9  |
| 정신요양시설        | 1  | 1.6   |
| 합 계           | 63 | 100.0 |

6·4 지방선거에서 거소투표, 사전투표, 일반투표 등 투표방법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표 4-27> 참조), 설명을 들었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124명(72.1%),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장애인이 22명(12.8%), 잘 모르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26명(15.1%)으로 나타났다.

<표 4-27> 투표방법 결정에 필요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 구 분              | 빈도  | 퍼센트   |
|------------------|-----|-------|
| 설명을 들었다          | 124 | 72.1  |
| 설명을 듣지 못했다       | 22  | 12.8  |
| 잘 모르겠다(기억나지 않는다) | 26  | 15.1  |
| 합 계              | 172 | 100.0 |

투표방법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설명을 들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장애인을 제외하고, 장애유형에 따른 투표방법 결정을 위한 설명 청취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표 4-28>과 같다.

<표 4-28> 장애유형별 투표방법 결정에 필요한 설명 청취 여부

| 구 분       | 지체/뇌병변<br>장애인  | 시각/청각/언어<br>장애인 | 지적/자폐성<br>장애인  | 정신<br>장애인     | 합 계             |
|-----------|----------------|-----------------|----------------|---------------|-----------------|
| 설명을 들었다   | 35<br>(83.3%)  | 28<br>(100.0%)  | 53<br>(79.1%)  | 8<br>(88.9%)  | 124<br>(84.9%)  |
| 설명 듣지 못했다 | 7<br>(16.7%)   | 0<br>(0.0%)     | 14<br>(20.9%)  | 1<br>(11.1%)  | 22<br>(15.1%)   |
| 합 계       | 42<br>(100.0%) | 28<br>(100.0%)  | 67<br>(100.0%) | 9<br>(100.0%) | 146<br>(100.0%) |

chi-square = 6.939, df = 3, p = 0.074

지체·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투표방법 결정에 필요한 설명을 들었다는 응답이 35명(83.3%),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응답이 7명(16.7%)으로 나타났으며, 시각·청각·언어장애인은 100% 설명을 들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지적·자폐성장애인의 경우에는 투표방법 결정에 필요한 응답을 들었다는 응답이 53명(79.1%),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응답이 14명(20.9%),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설명을 들었다는 응답이 8명(88.9%),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응답이 1명(11.1%)으로 나타났다.

투표방법 결정에 필요한 설명 청취여부는 장애유형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투표방법 결정에 필요한 설명을 듣지 못한 비

율은 지적·자폐성장장애인과 지체·뇌병변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장애등급과 투표방법 결정에 필요한 설명 청취 여부는 완전히 독립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투표방법 결정에 필요한 설명 청취여부에 따라 투표방법 결정주체를 분석한 결과(<표 4-29> 참조), chi-square = 6.694(p < 0.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방법 결정에 필요한 설명을 들은 장애인이 투표방법을 스스로 결정한 경우는 85명(69.7%), 직원이 결정한 경우는 37명(30.3%)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장애인의 경우 투표방법을 장애인이 스스로 결정한 경우는 8명(40.0%), 직원이 투표방법을 결정한 경우는 12명(60.0%)으로 조사되었다. 즉 투표방법 결정에 필요한 설명을 들은 장애인이 스스로 투표방법을 결정한 비율이 높고, 투표방법 결정에 필요한 설명을 듣지 못한 장애인은 직원이 결정한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투표방법 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수준의 설명을 하고, 장애인이 스스로 본인의 투표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표 4-29> 투표방법 결정에 필요한 설명 청취 여부에 따른 투표방법 결정주체

| 구 분      | 설명을 들었다         | 설명을 듣지 못했다     | 합 계             |
|----------|-----------------|----------------|-----------------|
| 내가 결정했다  | 85<br>(69.7%)   | 8<br>(40.0%)   | 93<br>(65.5%)   |
| 직원이 결정했다 | 37<br>(30.3%)   | 12<br>(60.0%)  | 49<br>(34.5%)   |
| 합 계      | 122<br>(100.0%) | 20<br>(100.0%) | 142<br>(100.0%) |

chi-square = 6.694, df = 1, p < 0.05

시설(병원) 거주 장애인이 선거와 관련된 정보(선거일정, 후보자, 공약 등)를 얻게 된 방법을 다중응답으로 질문한 결과(<표 4-30> 참조), 텔레비전을 통해 정보를 얻었다고 응답한 이용자가 149명(24.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설(병원) 직원의 설명을 들었다는 응답이 123명(20.5%), 선거공보물

을 우편으로 받았다는 응답이 105명(17.5%), 거리의 벽에 붙어 있는 사진(벽보)을 보고 알았다는 응답이 83명(13.8%), 시설(병원)에서 같이 생활하는 장애인으로부터 정보를 얻었다는 응답이 71명(11.8%),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었다는 응답이 37명(6.2%), 가족으로부터 선거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경우가 33명(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타 방법으로 라디오를 통해 선거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는 응답자가 1명, 시설(병원) 밖에서 후보자의 유세를 들었다는 장애인이 1명 있었다.

<표 4-30> 선거에 대한 정보취득 방법(다중응답)

| 구 분   | 빈도  | 퍼센트   |
|-------|-----|-------|
| 우편    | 105 | 17.5  |
| 텔레비전  | 149 | 24.8  |
| 직원설명  | 123 | 20.5  |
| 가족    | 33  | 5.5   |
| 인터넷   | 37  | 6.2   |
| 벽보    | 83  | 13.8  |
| 동료장애인 | 71  | 11.8  |
| 합 계   | 601 | 100.0 |

우편 선고공보물은 투표권이 있는 모든 유권자에게 발송되며, 투표일정과 장소, 내용과 함께 후보자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체이다. 그런데 시설 거주 장애인들 중에서 우편 선거공보물을 통해 선거에 관련된 정보를 얻었다는 장애인의 비율은 17.5% 밖에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장애인의 특성과 관련된 이유를 생각해보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선거공보물이나 음성선거정보(CD, 보이스아이 등)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용 선고공보물 제공이 미흡하다는 점, 우편 선거공보물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있을 수 있다.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은 단순히 투표의 4대 원칙 보장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투표절차가 비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된다 하더라도, 장애인  
은 투표와 관련된 적절한 수준의 정보를 얻기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원하는 후보자를 선택함에 있어 처음부터 상당히 제약을 가지고 있다. 따  
라서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준과 방법의 선거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선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사전·일반투표

여기서는 시설 거주 장애인 중 6·4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 또는 일반투표  
를 한 장애인의 투표 경험을 분석하여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 실태  
를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표 4-31>은 사전투표 또는 일반투표를 위해 시설(병원)에서부터 투  
표장까지 이동할 때, 같이 간 사람에 대한 다중응답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4-31> 사전투표, 일반투표 시 투표장까지 동행한 사람(다중응답)

| 구 분              | 빈도  | 퍼센트   |
|------------------|-----|-------|
| 직원               | 105 | 49.3  |
| 자원봉사자            | 9   | 4.2   |
| 가족               | 3   | 1.4   |
| 동료장애인            | 72  | 33.8  |
| 혼자               | 18  | 8.5   |
| 잘 모르겠다(기억나지 않는다) | 6   | 2.8   |
| 합 계              | 213 | 100.0 |

시설(병원)에서 투표장까지 시설(병원) 직원과 함께 이동했다는 응답자가  
105명(49.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동료장애인 72명(33.8%), 혼자서  
갔다는 응답이 18명(8.5%), 자원봉사자 9명(4.2%), 가족 3명(1.4%) 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

사전투표 또는 일반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장까지 이동을 위해 어떤 교통수단  
을 이용했는지를 분석한 결과(<표 4-32> 참조), 시설(병원) 차량을 이용하였다

는 응답이 75명(53.2%), 걸어서 갔다는 응답이 48명(34.0%),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으로 이동했다는 응답이 6명(4.3%), 기타 4명(2.8%), 기억나지 않는다는 응답이 8명(5.7%)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전동휠체어로 이동했다는 응답이 2명, 가족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 1명,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한 경우가 1명 있었다. 사전투표 또는 일반투표를 위해 투표장까지 이동에 활용한 교통수단은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2> 사전투표, 일반투표 시 투표장까지 이동 수단

| 구 분              | 빈도  | 퍼센트   |
|------------------|-----|-------|
| 시설 차량            | 75  | 53.2  |
|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 6   | 4.3   |
| 걸어서              | 48  | 34.0  |
| 기타               | 4   | 2.8   |
| 잘 모르겠다(기억나지 않는다) | 8   | 5.7   |
| 합 계              | 141 | 100.0 |

<표 4-33>은 사전투표 또는 일반투표를 한 시설 거주 장애인의 신분증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장애인이 직접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71명(50.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시설 직원이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56명(39.7%), 가족이나 친구 등 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우와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7명(5.0%)으로 나타났다.

<표 4-33> 신분증 소지자

| 구 분              | 빈도  | 퍼센트   |
|------------------|-----|-------|
| 본인               | 71  | 50.4  |
| 시설 직원            | 56  | 39.7  |
| 가족, 친구 등 시설 외부사람 | 7   | 5.0   |
| 잘 모르겠다(기억나지 않는다) | 7   | 5.0   |
| 합 계              | 141 | 100.0 |

장애인의 신분증을 가족이나 친구 등 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우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장애인을 제외하고, 장애유형별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분석한 결과(<표 4-34> 참조),  $\chi^2 = 13.556(p < 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장애인의 경우 본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15명(57.7%), 시설 직원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11명(42.3%)으로 나타났으며, 감각적 장애인도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17명(94.4%), 시설 직원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1명(5.6%)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에는 직접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39명(47.0%), 시설 직원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44명(53.0%)으로 나타났다.

<표 4-34> 장애유형별 신분증 소지자

| 구 분   | 신체적 장애인        | 감각적 장애인        | 정신적 장애인        | 합 계             |
|-------|----------------|----------------|----------------|-----------------|
| 본인    | 15<br>(57.7%)  | 17<br>(94.4%)  | 39<br>(47.0%)  | 71<br>(55.9%)   |
| 시설 직원 | 11<br>(42.3%)  | 1<br>(5.6%)    | 44<br>(53.0%)  | 56<br>(44.1%)   |
| 합 계   | 26<br>(100.0%) | 18<br>(100.0%) | 83<br>(100.0%) | 127<br>(100.0%) |

$\chi^2 = 13.556$ ,  $df = 2$ ,  $p < 0.01$

<표 4-35>는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을 동시에 고려하여 신분증 소지자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장애등급에 따른 신분증 소지자의 분포는  $\chi^2 = 9.522(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급 장애인의 경우 신분증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16명(34.8%), 시설 직원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30명(65.2%)으로 2급 이하 장애인에 비해 시설 직원이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급 장애인과 3급 이하 장애인은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각각 29명(63.0%)과 14명(66.7%), 시설 직원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각각 17명(37.0%)과

7명(33.3%)로 나타났다.

<표 4-35>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에 따른 신분증 소지자

| 구 분     |       | 1급             | 2급             | 3급 이하          | 합 계             |
|---------|-------|----------------|----------------|----------------|-----------------|
| 신체적 장애인 | 본인    | 8<br>(57.1%)   | 5<br>(83.3%)   | 2<br>(40.0%)   | 15<br>(60.0%)   |
|         | 시설 직원 | 6<br>(42.9%)   | 1<br>(16.7%)   | 3<br>(60.0%)   | 10<br>(40.0%)   |
|         | 합계    | 14<br>(100.0%) | 6<br>(100.0%)  | 5<br>(100.0%)  | 25<br>(100.0%)  |
| 감각적 장애인 | 본인    | 1<br>(50.0%)   | 8<br>(100.0%)  |                | 9<br>(90.0%)    |
|         | 시설 직원 | 1<br>(50.0%)   | 0<br>(0.0%)    |                | 1<br>(10.0%)    |
|         | 합계    | 2<br>(100.0%)  | 8<br>(100.0%)  |                | 10<br>(100.0%)  |
| 정신적 장애인 | 본인    | 7<br>(23.3%)   | 16<br>(50.0%)  | 12<br>(75.0%)  | 35<br>(44.9%)   |
|         | 시설 직원 | 23<br>(76.7%)  | 16<br>(50.0%)  | 4<br>(25.0%)   | 43<br>(55.1%)   |
|         | 합계    | 30<br>(100.0%) | 32<br>(100.0%) | 16<br>(100.0%) | 78<br>(100.0%)  |
| 전체      | 본인    | 16<br>(34.8%)  | 29<br>(63.0%)  | 14<br>(66.7%)  | 59<br>(52.2%)   |
|         | 시설 직원 | 30<br>(65.2%)  | 17<br>(37.0%)  | 7<br>(33.3%)   | 54<br>(47.8%)   |
|         | 합계    | 46<br>(100.0%) | 46<br>(100.0%) | 21<br>(100.0%) | 113<br>(100.0%) |

1) 신체적 장애인: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많아 chi-square test가 적절하지 않음

2) 감각적 장애인: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많아 chi-square test가 적절하지 않음

3) 정신적 장애인: chi-square = 11.837, df = 2, p < 0.01

4) 전체: chi-square = 9.522, df = 2, p < 0.01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등급에 따라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의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chi-square = 11.837, p < 0.01)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급 정신적 장애인은 본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7명(23.3%), 시설직원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23명(76.7%)으로 2급 이하 정신적 장애인보다 시설 직원이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급 정신적 장애인과 3급 이하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신분증을 직접 소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16명(50.0%)과 12명(75.0%), 시설 직원이 가지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16명(50.0%), 4명(25.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체적 장애인과 감각적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인 신분증 소지자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정할 수 없었으나, 각 장애유형별로 장애인의 신분증을 시설 직원이 소지하고 있는 비율을 살펴보면, 1급 장애인이 2급 이하 장애인에 비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6>은 투표장에서 투표용지를 받기 위한 신분확인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시설 거주 장애인이 직접 신분증을 보여주고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응답이 102명(72.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사람이 장애인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투표용지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응답이 13명(9.2%), 다른 사람이 장애인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장애인이 직접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응답이 6명(4.3%), 잘 모르겠다(기억나지 않는다)는 응답이 20명(14.2%)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투표장에서 신분증을 확인한 방법은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시설 거주 장애인도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해 거소투표를 지양하고, 가능한 일반투표와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투표장에서의 신분 확인과 투표용지 수령은 가급적 장애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특성으로 인해 신분확인과 투표용지 수령을 본인이 직접 하기 힘든 경우에는 투표참관인 등 장애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최소한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4-36> 투표장에서 신분증 확인 방법

| 구 분                                  | 빈도  | 퍼센트   |
|--------------------------------------|-----|-------|
| 직접 신분증을 보여주고, 투표용지를 받았다              | 102 | 72.3  |
| 다른 사람이 나의 신분증을 보여주고,<br>직접 투표용지를 받았다 | 6   | 4.3   |
| 다른 사람이 나의 신분증을 보여주고,<br>투표용지도 전달받았다  | 13  | 9.2   |
| 잘 모르겠다(기억나지 않는다)                     | 20  | 14.2  |
| 합 계                                  | 141 | 100.0 |

사전투표 또는 일반투표를 위해 기표소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간 사람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4-37>과 같다. 시설 거주 장애인이 혼자서 기표소에 들어간 경우가 114명(80.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사람이 같이 들어갔다는 응답은 15명(10.6%), 기억나지 않는다는 응답이 12명(8.5%)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기표소에 같이 들어간 사람이 있는지 여부는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4-37> 기표소 동행 여부

| 구 분              | 빈도  | 퍼센트   |
|------------------|-----|-------|
| 혼자 들어갔다          | 114 | 80.9  |
| 다른 사람이 같이 들어갔다   | 15  | 10.6  |
| 잘 모르겠다(기억나지 않는다) | 12  | 8.5   |
| 합 계              | 141 | 100.0 |

시설 거주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간 경우,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중응답으로 분석한 결과(<표 4-38> 참조), 시설 직원이 동행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6명(54.5%)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원봉사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투표참관인 등 모르는 사람이 함께 들어갔다고 응답한 사람이 3명(27.3%), 기억나지 않는다는 응답이 2명(18.2%)으로 나타났다.

<표 4-38> 기표소에 같이 들어간 사람

| 구 분              | 빈도 | 퍼센트   |
|------------------|----|-------|
| 시설(병원) 직원        | 6  | 54.5  |
| 모르는 사람           | 3  | 27.3  |
| 잘 모르겠다(기억나지 않는다) | 2  | 18.2  |
| 합 계              | 11 | 100.0 |

<표 4-39>는 시설 거주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간 경우, 몇 명이 함께 들어갔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기표소로 들어갈 때 1명이 동행했다는 응답이 12명(80.0%), 2명이 함께 들어갔다는 응답이 3명(20.0%)으로 나타났다.

<표 4-39> 기표소에 같이 들어간 사람 수

| 구 분 | 빈도 | 퍼센트   |
|-----|----|-------|
| 1명  | 12 | 80.0  |
| 2명  | 3  | 20.0  |
| 합 계 | 15 | 100.0 |

시설 거주 장애인이 투표를 할 때, 기표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4-40>과 같다. 혼자서 직접 기표했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125명(89.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기표했다는 장애인이 6명(4.3%), 다른 사람이 기표했다는 장애인이 1명(0.7%)으로 나타났다.

<표 4-40> 기표한 사람

| 구 분                    | 빈도  | 퍼센트   |
|------------------------|-----|-------|
| 혼자서 직접 도장을 찍었다         | 125 | 89.3  |
|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도장을 찍었다 | 6   | 4.3   |
| 다른 사람이 도장을 찍었다         | 1   | 0.7   |
| 잘 모르겠다(기억나지 않는다)       | 8   | 5.7   |
| 합 계                    | 140 | 100.0 |

투표용지에 기표를 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기표한 것으로 응답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투표했는지를 질문한 결과는 <표 4-41>과 같다. 장애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이 5명,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이 1명, 기타가 1명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은 기표소에 함께 들어간 시설 직원이 누구에게 투표해야 하는지를 알려줘서 기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41> 원하는 사람에게 투표했는지 여부

| 구 분                  | 빈도 | 퍼센트   |
|----------------------|----|-------|
|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투표하였다    | 5  | 62.5  |
|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투표하였다 | 1  | 12.5  |
| 잘 모르겠다(기억나지 않는다)     | 1  | 12.5  |
| 기타                   | 1  | 12.5  |
| 합 계                  | 8  | 100.0 |

기표소에 동행한 사람, 동행한 인원, 기표를 한 사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기표한 장애인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투표했는지에 대한 논의를 종합해보면, 기표소에 동행하는 사람의 자격과 동행하는 사람 수, 기표를 도와주거나 대신할 필요가 있는 장애인에 대한 구분 기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 직접 기표를 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기표하는 경우 장애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도와주는 사람이나 대신 기표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기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직접 기표할 수 없는 장애인을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기표를 도와주거나 대신 기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과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신 기표하는 사람이 장애인과 동행하여 기표소에 들어갈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 장애인이나 대신 기표하는 사람과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1인 이상 동행하도록 하여 장애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기표하는지를 상호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기표 후에는 장애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기표했는지를 장애인이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법적 장치를 통해 제도화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공정한 선거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표 4-42>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은 방법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시설 거주 장애인이 직접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은 경우가 125명(89.3%),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직접 투표함에 넣은 경우가 4명(2.9%), 어떻게 넣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응답이 11명(7.9%)으로 나타났다.

<표 4-42>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은 사람

| 구 분                       | 빈도  | 퍼센트   |
|---------------------------|-----|-------|
| 직접투표함에 넣었다                | 125 | 89.3  |
|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직접 투표함에 넣었다 | 4   | 2.9   |
| 잘 모르겠다(기억나지 않는다)          | 11  | 7.9   |
| 합 계                       | 140 | 100.0 |

### (3) 거소투표

여기서는 시설 거주 장애인 중 6·4 지방선거에서 거소투표를 한 장애인의 투표 경험을 분석하여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거소투표의 경우 <표 4-2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소투표를 한 시설 거주 장애인이 59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거소투표 경험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 사례 수는 더 적어지며, 교차분석을 실시할 경우 두 변수 모두에 대해 응답한 사례만 분석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효 사례 수는 더 적어질 수 있다. 따라서 빈도분석을 기본으로 하고 장애유형이나 장애등급에 따른 종속변수의 분포가 시설 장애인의 선거권 실태 파악에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만 교차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장애유형이나 장애등급에 따른 종속변수의 분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는 없었다.

<표 4-43>은 시설 거주 장애인 중 거소투표를 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분증 소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시설 거주 장애인이 직접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33명(64.7%)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 직원이 가지고 있는 경우

가 16명(31.4%), 가족, 친구 등 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우와 분실 등으로 신분증이 없는 경우가 각각 1명(2.0%)으로 나타났다.

<표 4-43> 신분증 소지 현황(거소투표)

| 구 분                      | 빈도 | 퍼센트   |
|--------------------------|----|-------|
| 직접 가지고 있다                | 33 | 64.7  |
| 시설직원이 가지고 있다             | 16 | 31.4  |
| 가족 친구 등 시설 외부 사람이 가지고 있다 | 1  | 2.0   |
| 신분증이 없다(분실 등)            | 1  | 2.0   |
| 합 계                      | 51 | 100.0 |

신분증을 가족, 친구 등 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우와 신분증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장애유형별로 신분증 소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표 4-44> 참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시각장애인의 경우 직접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이 12명(92.3%), 시설 직원이 가지고 있다는 응답이 1명(7.7%)으로 나타나, 지체·뇌병변장애인(14명, 63.6%)과 지적·자폐성장장애인(7명, 50.0%)보다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애등급에 따른 신분증 소지 현황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4> 장애유형별 신분증 소지자(거소투표)

| 구 분   | 지체/뇌병변장애인      | 시각장애인          | 지적/자폐성장장애인     | 합 계            |
|-------|----------------|----------------|----------------|----------------|
| 본인    | 14<br>(63.6%)  | 12<br>(92.3%)  | 7<br>(50.0%)   | 33<br>(67.3%)  |
| 시설 직원 | 8<br>(36.4%)   | 1<br>(7.7%)    | 7<br>(50.0%)   | 16<br>(32.7%)  |
| 합 계   | 22<br>(100.0%) | 13<br>(100.0%) | 14<br>(100.0%) | 49<br>(100.0%) |

chi-square = 5.737, df = 2, p = 0.057

<표 4-45>는 거소투표를 하기 전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누구에게 보여

주었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거소투표 전 시설 직원에게 보여주었다는 장애인이 33명(64.7%), 투표사무원 등 모르는 사람에게 보여주었다는 장애인이 16명(31.4%),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응답이 1명(2.0%)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에 따른 신분증 확인 방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소투표의 경우 본인 확인 절차가 사전투표나 일반투표에 비해 허술하여 대리투표 등 부정선거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을 파견하여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투표용지 배포와 기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4-45> 신분증 확인 방법(거소투표)

| 구 분            | 빈도 | 퍼센트   |
|----------------|----|-------|
| 시설 직원에게 보여주었다  | 33 | 64.7  |
| 모르는 사람에게 보여주었다 | 16 | 31.4  |
| 보여주지 않았다       | 1  | 2.0   |
| 합 계            | 46 | 100.0 |

거소투표를 할 때, 어디에서 기표했는지를 분석한 결과(<표 4-46> 참조), 시설 내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기표했다는 응답이 48명(94.1%), 사무실, 식당 등 이용자나 시설 직원들이 있는 장소에서 투표했다는 응답이 3명(5.9%)으로 나타났다.

거소투표라 하더라도 일반투표 또는 사전투표와 마찬가지로 투표의 4대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사무실, 식당 등 다른 장애인이나 시설 직원이 있는 장소에서 투표를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소투표를 해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거소투표를 하는 장애인 수와 무관하게 시설 내에 기표소를 설치하여 투표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설 내에서 거소투표를 하는 장애인이 1-2명 정도로 극소수인 경우에는 의무적 기표소 설치가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사전에 시설을 방문하여 거소투표 장애

인에게 직접 투표용지를 전달하고, 기표된 투표용지의 우편발송을 돕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4-46> 투표 장소(거소투표)

| 구 분                        | 빈도 | 퍼센트   |
|----------------------------|----|-------|
| 시설 내에 설치된 기표소              | 48 | 94.1  |
| 사무실, 식당 등 이용자나 시설직원이 있는 장소 | 3  | 5.9   |
| 합 계                        | 51 | 100.0 |

<표 4-47>은 시설에서 거소투표를 진행함에 있어 참관인이 배석했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참관인이 배석했다는 응답이 35명(79.5%), 참관인이 배석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9명(20.5%)으로 나타났다.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거소투표의 경우 부정투표 의혹도 있었고, 실제로 기표소도 설치하지 않고 참관인도 배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가 이루어질 경우 공정한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거소투표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나 각 정당의 투표참관인 배석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49조(기관·시설 안의 기표소)제3항에서 거소투표 시 기표소 의무설치 기준을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이 있는 기관·시설로 정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투표참관인의 의무적 배석은 기표소 설치 의무가 있는 기관·시설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47> 참관인 배석 여부(거소투표)

| 구 분         | 빈도 | 퍼센트   |
|-------------|----|-------|
| 참관인 배석      | 35 | 79.5  |
| 참관인 배석하지 않음 | 9  | 20.5  |
| 합 계         | 44 | 100.0 |

<표 4-48>은 투표용지에 누가 기표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혼자서 직접 기표했다는 응답자가 29명(59.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사람의 도움

을 받아 직접 기표를 했다는 응답이 18명(36.7%), 다른 사람이 기표한 경우가 2명(4.1%)으로 나타났다.

<표 4-48> 투표용지 기표 주체(거소투표)

| 구 분                   | 빈도 | 퍼센트   |
|-----------------------|----|-------|
| 혼자서 직접 기표했다           | 29 | 59.2  |
|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직접 기표했다 | 18 | 36.7  |
| 다른 사람이 기표했다           | 2  | 4.1   |
| 합 계                   | 49 | 100.0 |

<표 4-49> 장애등급별 투표용지 기표 주체(거소투표)

| 구 분                      | 1급             | 2급            | 3급 이하         | 합 계            |
|--------------------------|----------------|---------------|---------------|----------------|
| 혼자서 직접 기표했다              | 16<br>(47.1%)  | 5<br>(83.3%)  | 6<br>(85.7%)  | 27<br>(57.4%)  |
|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br>직접 기표했다 | 16<br>(47.1%)  | 1<br>(16.7%)  | 1<br>(14.3%)  | 18<br>(38.3%)  |
| 다른 사람이 기표했다              | 2<br>(5.8%)    | 0<br>(0.0%)   | 0<br>(0.0%)   | 2<br>(4.3%)    |
| 합 계                      | 34<br>(100.0%) | 6<br>(100.0%) | 7<br>(100.0%) | 47<br>(100.0%) |

chi-square = 5.545, df = 4, p = 0.236

<표 4-49>는 투표용지에 누가 기표했는지를 장애등급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1급 장애인은 혼자서 직접 기표한 경우가 16명(47.1%),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기표한 경우는 18명(62.9%)으로 2급 이하의 장애인에 비해 혼자서 직접 기표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급 장애인과 3급 이하 장애인은 혼자서 직접 기표한 경우가 각각 5명(83.3%)과 6명(85.7%)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장애등급별 투표용지 기표 주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기표했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기표했다고 응답한 경우, 본인이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투표하였는지를 질문한 결

과 응답자 18명 모두가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투표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4-50>은 거소투표를 통해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은 주체가 누구인지를 장애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본인이 직접 봉투에 투표용지를 넣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34명(70.8%),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아 직접 봉투에 넣은 경우가 13명(27.1%), 다른 사람이 봉투에 대신 넣은 경우가 1명(2.1%)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에 따른 기표한 투표용지를 봉투에 투입한 주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체·뇌병변장애인이 투표용지를 직접 봉투에 투입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봉투에 투입한 경우는 각각 11명(50.0%)으로 시각장애인이나 지적·자폐성장애인에 비해 직접 봉투에 투입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각장애인과 지적·자폐성장애인 중 기표한 투표용지를 직접 봉투에 투입한 경우는 각각 12명(92.3%)과 11명(84.6%),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봉투에 투입한 경우는 각각 1명(7.7%)과 2명(15.4%)으로 나타났다.

<표 4-50> 장애유형별 투표용지 봉투 투입 주체(거소투표)

| 구 분                        | 지체/뇌병변<br>장애인  | 시각장애인          | 지적/자폐성<br>장애인  | 합 계            |
|----------------------------|----------------|----------------|----------------|----------------|
| 직접 봉투에 투입                  | 11<br>(50.0%)  | 12<br>(92.3%)  | 11<br>(84.6%)  | 34<br>(70.8%)  |
| 다른 사람의 도움을<br>받아 직접 봉투에 투입 | 10<br>(45.5%)  | 1<br>(7.7%)    | 2<br>(15.4%)   | 13<br>(27.1%)  |
| 다른 사람이<br>봉투에 대신 투입        | 1<br>(4.5%)    | 0<br>(0.0%)    | 0<br>(0.0%)    | 1<br>(2.1%)    |
| 합 계                        | 22<br>(100.0%) | 13<br>(100.0%) | 13<br>(100.0%) | 48<br>(100.0%) |

chi-square = 8.928, df = 4, p = 0.063

<표 4-51>은 다음 선거에서 사전투표, 일반투표, 거소투표 중 어떤 방법으

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지를 장애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다음 선거에 사전투표 또는 일반투표를 하고 싶다는 응답이 23명(46.9%), 거소투표를 하고 싶다는 응답이 26명(53.1%)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에 따른 다음 선거에서의 희망 투표방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체·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사전투표 또는 일반투표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14명(63.6%), 거소투표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8명(36.4%)으로 조사되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사전투표 또는 일반투표를 희망하는 장애인이 3명(23.1%), 거소투표를 희망하는 장애인이 10명(76.9%)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적·자폐성장애인 중 사전투표 또는 일반투표를 희망하는 장애인이 6명(42.9%), 거소투표를 희망하는 장애인이 8명(57.1%)으로 분석되었다. 즉 시각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소투표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51> 장애유형별 차기 선거 희망 투표방법(거소투표)

| 구 분       | 지체/뇌병변<br>장애인  | 시각장애인          | 지적/자폐성<br>장애인  | 합 계            |
|-----------|----------------|----------------|----------------|----------------|
| 사전투표/일반투표 | 14<br>(63.6%)  | 3<br>(23.1%)   | 6<br>(42.9%)   | 23<br>(46.9%)  |
| 거소투표      | 8<br>(36.4%)   | 10<br>(76.9%)  | 8<br>(57.1%)   | 26<br>(53.1%)  |
| 합 계       | 22<br>(100.0%) | 13<br>(100.0%) | 14<br>(100.0%) | 49<br>(100.0%) |

chi-square = 5.528, df = 2, p = 0.063

## 2) 종사자

지금까지는 장애인의 6·4 전국동시지방선거 경험을 바탕으로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여기에서는 시설 종사자들의 장애인 선거권에 관한 인식과 장애인 선거권 지원 경험을 통해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선거권 보장실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것이다.

시설 거주 장애인들 선거권 실태조사에 참여한 시설 종사자들의 성별은 남성 103명(53.1%), 여성 91명(46.9%)으로 나타났다(<표 4-52> 참조).

<표 4-52> 응답자 성별

| 구 분 | 빈도  | 퍼센트   |
|-----|-----|-------|
| 남성  | 103 | 53.1  |
| 여성  | 91  | 46.9  |
| 합 계 | 194 | 100.0 |

유효응답자 190명 중 최연소자는 24세, 최연장자는 59세이며, 평균 38.72세(표준편차 = 7.5684세)로 나타났다(<표 4-53> 참조).

<표 4-53> 응답자 연령

| 사례 수 | 최소값   | 최대값   | 평균      | 표준편차    |
|------|-------|-------|---------|---------|
| 190  | 24.00 | 59.00 | 38.7211 | 7.56846 |

응답자의 직위는 시설 내 선거담당자가 90명(46.9%), 사무국장(사무장 등)이 52명(27.2%), 기타 47명(24.5%), 기관장 3명(1.6%)으로 나타났다(<표 4-54> 참조). 기타 직위 응답으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사회재활교사, 사무원, 행정직원, 시설 내 인권담당자 등이 있었다.

<표 4-54> 응답자 직위

| 구 분         | 빈도  | 퍼센트   |
|-------------|-----|-------|
| 기관장(원장 등)   | 3   | 1.6   |
| 사무국장(사무장 등) | 52  | 27.1  |
| 시설 내 선거담당자  | 90  | 46.9  |
| 기타          | 47  | 24.5  |
| 합 계         | 192 | 100.0 |

응답자들이 근무하는 시설의 소재지(광역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비교적 편향되지 않고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경기도가 32개소(17.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55> 참조).

<표 4-55> 응답자 시설 소재지 - 광역자치단체

| 지역 | 빈도 | 퍼센트  | 지역 | 빈도  | 퍼센트   |
|----|----|------|----|-----|-------|
| 강원 | 13 | 7.0  | 세종 | 3   | 1.6   |
| 경기 | 32 | 17.1 | 울산 | 5   | 2.7   |
| 경남 | 16 | 8.6  | 인천 | 11  | 5.9   |
| 경북 | 17 | 9.1  | 전남 | 7   | 3.7   |
| 광주 | 10 | 5.3  | 전북 | 11  | 5.9   |
| 대구 | 7  | 3.7  | 제주 | 6   | 3.2   |
| 대전 | 9  | 4.8  | 충남 | 13  | 7.0   |
| 부산 | 6  | 3.2  | 충북 | 12  | 6.4   |
| 서울 | 9  | 4.8  | 합계 | 187 | 100.0 |

시설 종사자들이 근무하는 시설 유형은 <표 4-56>과 같다. 지적·자폐성장애큰을 위한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응답자가 74명(38.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66명(34.2%), 정신요양시설 종사자가 37명(19.1%), 지체·뇌병변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9명(4.7%),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6명(3.1%), 청각·언어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1명(0.5%) 순으로 나타났다.

<표 4-56> 응답자 소속 시설 유형

| 구 분            | 빈도  | 퍼센트   |
|----------------|-----|-------|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66  | 34.0  |
| 지체·뇌병변장애인 거주시설 | 10  | 5.2   |
|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 6   | 3.1   |
| 청각·언어장애인 거주시설  | 1   | 0.5   |
| 지적·자폐성장애큰 거주시설 | 74  | 38.1  |
| 정신요양시설         | 37  | 19.1  |
| 합 계            | 193 | 100.0 |

응답자 비율이 높지 않은 지체·뇌병변장애인 거주시설,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청각·언어장애인 거주시설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시설유형별 분석에서 하나의 범주(“기타 장애인 거주시설”)로 재분류하여 활용할 것이다(<표 4-57> 참조).

<표 4-57> 응답자 소속 시설 유형 재범주화

| 구 분            | 빈도  | 퍼센트   |
|----------------|-----|-------|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66  | 34.0  |
| 지적/자폐성장래인 거주시설 | 74  | 38.1  |
| 기타 장애인 거주시설    | 17  | 8.8   |
| 정신요양시설         | 37  | 19.1  |
| 합 계            | 194 | 100.0 |

응답자 시설의 이용자 수를 시설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4-58>과 같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평균 이용자 수는 59.4명(표준편차 = 45.2330명)으로 나타났으며, 지적·자폐성장래인 거주시설 평균 이용자 수는 58.15명(표준편차 = 46.1260명)으로 나타났다. 기타 장애인 거주시설 평균 이용자 수는 53.94명(표준편차 = 23.4473명), 정신요양시설 평균 이용자 수는 177.51명(표준편차 = 72.9275명)으로 나타났다.

<표 4-58> 시설유형별 이용자 수

| 구 분            | 사례 수 | 최소값   | 최대값    | 평균       | 표준편차    |
|----------------|------|-------|--------|----------|---------|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65   | 20.00 | 300.00 | 59.4000  | 45.2330 |
| 지적/자폐성장래인 거주시설 | 74   | 15.00 | 269.00 | 58.1486  | 46.1260 |
| 기타 장애인 거주시설    | 16   | 10.00 | 104.00 | 53.9375  | 23.4477 |
| 정신요양시설         | 37   | 49.00 | 430.00 | 177.5135 | 72.9275 |
| 합 계            | 192  | 10.00 | 430.00 | 81.2240  | 69.0738 |

## (1) 공통 질문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선거와 관련된 정보(선거일정, 후보자, 공약 등) 제공 방법을 다중응답으로 질문하여, 시설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4-59>와 같다.

<표 4-59> 시설유형별 선거 관련 정보 제공 방법(다중응답)

| 구 분            | 중증장애인<br>거주시설   | 지적/자폐성<br>장애인 거주시설 | 기타 장애인<br>거주시설 | 정신요양시설         | 합 계             |
|----------------|-----------------|--------------------|----------------|----------------|-----------------|
| 선거공보물<br>우편 전달 | 54<br>(37.5%)   | 64<br>(37.6%)      | 17<br>(42.5%)  | 35<br>(43.2%)  | 170<br>(39.1%)  |
| TV토론회 시청       | 18<br>(12.5%)   | 24<br>(14.1%)      | 3<br>(7.5%)    | 8<br>(9.9%)    | 53<br>(12.2%)   |
| 집단설명           | 51<br>(35.4%)   | 63<br>(37.1%)      | 14<br>(35.0%)  | 31<br>(38.3%)  | 159<br>(36.6%)  |
| 개별설명           | 12<br>(8.3%)    | 12<br>(7.1%)       | 5<br>(12.5%)   | 4<br>(4.9%)    | 33<br>(7.6%)    |
| 정보 제공하지<br>않음  | 2<br>(1.4%)     | 2<br>(1.2%)        | 1<br>(2.5%)    | 0<br>(0.0%)    | 5<br>(1.1%)     |
| 기타             | 7<br>(4.9%)     | 5<br>(2.9%)        | 0<br>(0.0%)    | 3<br>(3.7%)    | 15<br>(3.4%)    |
| 합 계            | 144<br>(100.0%) | 170<br>(100.0%)    | 40<br>(100.0%) | 81<br>(100.0%) | 435<br>(100.0%) |

시설유형별로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거공보물 우편을 전달해 주었다는 응답이 170명(39.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시설 이용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선거에 대해 설명했다는 응답이 159명(36.6%), TV토론회를 함께 시청했다는 응답이 53명(12.2%), 개별면담을 통해 선거에 대해 설명했다는 응답이 33명(7.6%),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응답이 15명(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선거관련 게시물을 시설 내에 게시하였다는 응답과 장애인 담당 직원이 아침과 저녁 근무교대를 하는 시간에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등의 응답이 있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응답은 시설의 요청으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선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선거에 대한 정보를 누가, 어떤 방법과 내용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특정 후보에 편향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가 시설을 방문하여 선거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의 의무적 시행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설에서 투표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이 진행되었는지를 시설유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4-60>과 같다. 시설유형별로 사전교육 진행 여부에 큰 차이는 없으나 정신요양시설이 투표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진행한 비율이 89.2%(33명)로 가장 낮으며, 기타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사전교육을 실시한 비율이 94.1%(1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194명 중 사전교육을 진행했다는 응답이 178명(91.8%), 사전교육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16명(8.2%)으로 조사되었다.

<표 4-60> 유형별 투표방법 사전교육 실시 여부

| 구 분         | 중증장애인<br>거주시설  | 지적/지체성<br>장애인 거주시설 | 기타 장애인<br>거주시설 | 정신요양시설         | 합 계             |
|-------------|----------------|--------------------|----------------|----------------|-----------------|
| 사전교육<br>실시  | 61<br>(92.4%)  | 68<br>(91.9%)      | 16<br>(94.1%)  | 33<br>(89.2%)  | 178<br>(91.8%)  |
| 사전교육<br>미실시 | 5<br>(7.6%)    | 6<br>(8.1%)        | 1<br>(5.9%)    | 4<br>(10.8%)   | 16<br>(8.2%)    |
| 합 계         | 66<br>(100.0%) | 74<br>(100.0%)     | 17<br>(100.0%) | 37<br>(100.0%) | 194<br>(100.0%) |

chi-square = 0.488, df = 3, p = 0.921

시설에서 투표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그 방법을 시설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4-61>과 같다. 투표용지나 투표소 관련 사진, 그림을 통해 설명했다는 응답이 133명(44.9%)으로 가장 많았으며, 투표절차를 실제로 실습했다는 응답이 78명(26.4%), 원하는 후보자를 선택하기 위한 방법(숫자선택방법 등)을 설명했다는 응답이 73명(24.7%), 기타 방법으로 사전교육

을 했다는 응답이 12명(4.1%)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방법으로는 동영상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여 방문 실습을 진행한 경우 등이 있었다. 앞에서 논의한 선거관련 정보 제공 방법과 마찬가지로, 투표절차를 실습하는 과정에서 특정후보로 편향된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을 요청하여 투표절차에 대한 실습을 진행하는 방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설유형별로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다른 시설유형에 비해 투표용지나 투표소 관련 사진, 그림을 통해 설명했다는 응답비율(46명, 51.1%)이 높았으며, 지적·자폐성장래인 거주시설은 투표절차를 실제로 실습했다는 응답비율(37명, 28.9%)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기타 장애인 거주시설은 원하는 후보자를 선택하기 위한 방법(숫자선택방법 등)을 설명했다는 응답비율(10명, 35.7%)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4-61> 시설유형별 투표방법 사전교육 방법(다중응답)

| 구 분            | 중증장애인<br>거주시설 | 지적/자폐성<br>장애인 거주시설 | 기타 장애인<br>거주시설 | 정신요양시설        | 합 계            |
|----------------|---------------|--------------------|----------------|---------------|----------------|
| 투표절차 실습        | 24<br>(26.7%) | 37<br>(28.9%)      | 5<br>(17.9%)   | 12<br>(24.0%) | 78<br>(26.4%)  |
| 사진, 그림으로<br>설명 | 46<br>(51.1%) | 54<br>(42.2%)      | 11<br>(39.3%)  | 22<br>(44.0%) | 133<br>(44.9%) |
| 숫자선택방법<br>설명   | 17<br>(18.9%) | 35<br>(27.3%)      | 10<br>(35.7%)  | 11<br>(22.0%) | 73<br>(24.7%)  |
| 기타             | 3<br>(3.3%)   | 2<br>(1.6%)        | 2<br>(7.1%)    | 5<br>(10.0%)  | 12<br>(4.1%)   |
| 합 계            | 90<br>(100%)  | 128<br>(100%)      | 28<br>(100%)   | 50<br>(100%)  | 296<br>(100%)  |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시설 이용자들이 투표를 한 방법을 시설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4-62>와 같다. 전체 응답에서는 일반투표가 122명(46.2%)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소투표 73명(27.7%), 사전투표 69명(26.1%)으로 조사되었다.

<표 4-62> 시설유형별 투표방법(다중응답)

| 구 분  | 중증장애인<br>거주시설 | 지적/자폐성<br>장애인 거주시설 | 기타 장애인<br>거주시설 | 정신요양시설        | 합 계            |
|------|---------------|--------------------|----------------|---------------|----------------|
| 사전투표 | 21<br>(23.1%) | 29<br>(28.7%)      | 6<br>(26.1%)   | 13<br>(26.5%) | 69<br>(26.1%)  |
| 거소투표 | 32<br>(35.2%) | 17<br>(16.8%)      | 4<br>(17.4%)   | 20<br>(40.8%) | 73<br>(27.7%)  |
| 일반투표 | 38<br>(41.8%) | 55<br>(54.5%)      | 13<br>(56.5%)  | 16<br>(32.7%) | 122<br>(46.2%) |
| 합 계  | 91<br>(100%)  | 101<br>(100%)      | 23<br>(100%)   | 49<br>(100%)  | 264<br>(100%)  |

시설유형에 따른 투표방법을 살펴보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일반투표가 38명(41.8%)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소투표가 32명(35.2%), 사전투표 21명(23.1%)으로 나타나, 정신요양시설에 비해서는 거소투표 비율이 낮지만, 다른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에 비해서는 거소투표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적·자폐성장래인 거주시설의 경우 일반투표가 55명(54.5%)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전투표가 29명(28.7%), 거소투표가 17명(16.8%)으로 나타났다. 기타 장애인 거주시설은 일반투표가 13명(56.5%), 사전투표 6명(26.4%), 거소투표 4명(17.4%)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적·자폐성장래인 거주시설과 기타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다른 시설유형에 비해 일반투표를 한 비율이 높고, 거소투표를 한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는 거소투표가 20명(40.8%)<sup>15)</sup>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투표가 16명(32.7%), 사전투표가 13명(26.5%)으로 조사되었다. 정신요양

15) 6·4 지방선거 당시 투표방법은 <표 4-22>에서도 제시되었으나, <표 4-62>와는 다르게 이해해야 한다. <표 4-22>는 장애인 설문조사(분석단위: 개인)결과로, 11명의 정신장애인(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포함)이 모두 일반·사전투표를 했음을 보여준다. 반면, <표 4-62>는 시설 종사자 설문조사(분석단위: 시설)결과로, 정신요양시설에서 거소투표가 진행된 경우가 40.8%인 것을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40.8%는 정신요양시설 이용자의 40.8%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서 단 1명의 장애인이 거소투표를 했더라도 거소투표를 한 것으로 응답하도록 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표 4-22>와 <표 4-62>를 연관시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비해 거소투표를 한 비율이 높고, 일반투표를 한 비율이 낮으며, 사전투표를 한 비율은 시설유형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이용자 중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를 다중응답으로 질문한 결과(<표 4-63> 참조), 의사소통이 어려워 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100명(41.0%)으로 가장 많았으며, 본인의 선택으로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89명(35.7%), 외출 등 부재중으로 투표할 수 없었다는 응답이 43명(17.6%)으로 나타났다. 기타(14명, 5.7%) 응답으로는 금치산자로 투표권이 없어서 투표하지 못한 경우, 와상 장애인 또는 건강이 좋지 않은 장애인 등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신분증을 보호자가 소지하고 있거나 무연고 장애인이어서 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 시각장애가 있어 투표하지 못한 경우 등이 있었다.

<표 4-63> 시설유형별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다중응답)

| 구 분                 | 중증장애인<br>거주시설 | 지적/지체성<br>장애인 거주시설 | 기타 장애인<br>거주시설 | 정신요양시설        | 합 계            |
|---------------------|---------------|--------------------|----------------|---------------|----------------|
| 본인 선택으로<br>미투표      | 28<br>(32.2%) | 22<br>(30.6%)      | 9<br>(39.1%)   | 28<br>(45.2%) | 87<br>(35.7%)  |
| 의사소통이 어려워<br>투표 불가능 | 41<br>(47.1%) | 28<br>(38.9%)      | 9<br>(39.1%)   | 22<br>(35.5%) | 100<br>(41.0%) |
| 부재중으로 투표<br>불가능     | 11<br>(12.6%) | 18<br>(25.0%)      | 4<br>(17.4%)   | 10<br>(16.1%) | 43<br>(17.6%)  |
| 기타                  | 7<br>(8.0%)   | 4<br>(5.6%)        | 1<br>(4.3%)    | 2<br>(3.2%)   | 14<br>(5.7%)   |
| 합 계                 | 87<br>(100%)  | 72<br>(100%)       | 23<br>(100%)   | 62<br>(100%)  | 244<br>(100%)  |

시설유형별로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의사소통이 어려워 투표가 불가능 했다는 응답비율(41명, 47.1%)이 다른 유형의 시설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지적·자

폐성장래인 거주시설은 장애인이 외출, 입원 등 투표당일 시설에 있지 않아 투표가 불가능하였다는 응답비율(18명, 25.0%)이 다른 시설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신요양시설은 장애인 본인의 선택으로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비율(28명, 45.2%)이 다른 시설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의사소통이 어려워 투표를 하지 못한 장애인에 대한 접근방법이다.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지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지는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으며, 의사소통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투표가 가능한 장애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특히 선거공보물은 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제작할 필요가 있으며, 투표용지 또한 후보자의 기호, 이름뿐 아니라 사진을 함께 제시해 줌으로써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선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 스스로 의미 있는 투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타 응답으로 시각장애인이어서 투표를 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있는데, 이것은 투표보조기구 또는 투표보조 인력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선거관리관, 선거사무원, 시설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의 투표보조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적절한 지원을 받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설 이용자들이 투표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전·거소·일반투표에 대해 설명한 정도를 시설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4-64>와 같다. 사전·거소·일반투표에 대해 모두 다 설명한 것으로 응답한 경우가 127명(66.5%)으로 가장 많았고, 결정된 선거방법에 대해서만 설명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54명(28.3%)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투표방법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2명(1.0%)으로 조사되었으며, 기타(8명, 4.2%) 응답으로는 거소투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투표와 일반투표에 대해서만 설명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시설 방문 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한 경우, 비장애인들과 함께 일반투표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었다.

다른 시설유형에 비해 기타 장애인 거주시설이 모든 선거방법에 대해 설명한 비율이 88.2%(15명)로 가장 높았으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 모든 선거방법에 대해 설명한 비율(58.5%, 50명)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투표방법에 대해서만 설명했다는 응답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 35.4%(23명), 정신요양시설이 33.3%(12명)로 나타났다.

<표 4-64> 시설유형별 투표방법 설명 정도

| 구 분                | 중증장애인<br>거주시설  | 지적/지체성<br>장애인 거주시설 | 기타 장애인<br>거주시설 | 정신요양시설         | 합 계             |
|--------------------|----------------|--------------------|----------------|----------------|-----------------|
| 모든 투표방법에<br>대해서 설명 | 38<br>(58.5%)  | 50<br>(68.5%)      | 15<br>(88.2%)  | 24<br>(66.7%)  | 127<br>(66.5%)  |
| 결정된 투표방법만<br>설명    | 23<br>(35.4%)  | 18<br>(24.7%)      | 1<br>(5.9%)    | 12<br>(33.3%)  | 54<br>(28.3%)   |
| 설명하지 않았음           | 1<br>(1.5%)    | 1<br>(1.4%)        | 0<br>(0.0%)    | 0<br>(0.0%)    | 2<br>(1.0%)     |
| 기타                 | 3<br>(4.6%)    | 4<br>(5.5%)        | 1<br>(5.9%)    | 0<br>(0.0%)    | 8<br>(4.2%)     |
| 합 계                | 65<br>(100.0%) | 73<br>(100.0%)     | 17<br>(100.0%) | 36<br>(100.0%) | 191<br>(100.0%) |

시설 이용자가 어떤 방법으로 투표할지를 결정한 방법을 시설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4-65>와 같다. 장애인이 직접 원하는 투표방법으로 결정했다는 응답이 90명(51.4%)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원회의를 통해 결정했다는 응답이 22명(12.6%), 시설 이용자의 다수결로 결정한 경우가 19명(10.9%), 시설 또는 직원이 개입할 수 없는 사안으로 특별한 결정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8명(11.2%)으로 나타났다. 기타(14명, 9.8%) 응답으로는 이용자 자치회의를 통해 결정하거나, 투표장에서 가서 투표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회의나 다수결에 의한 결정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거소투표, 사전투표, 일반투표 등의 방법으로 결정했다는 응답이 있었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장애인이 직접 원하는 투표방법으로 결정했다

는 응답이 28명(45.2%)으로 다른 시설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시설 거주 장애인의 투표방법을 직원회의를 통해 결정하거나 시설장이 결정했다는 응답이 9명(14.5%)으로 기타 장애인 거주시설에 비해 높고, 정신요양시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5> 시설유형별 투표방법 결정 방법

| 구 분             | 중증장애인<br>거주시설  | 지적/자폐성<br>장애인 거주시설 | 기타 장애인<br>거주시설 | 정신요양시설         | 합 계             |
|-----------------|----------------|--------------------|----------------|----------------|-----------------|
| 장애인이 직접<br>선택   | 28<br>(45.2%)  | 36<br>(55.4%)      | 13<br>(86.7%)  | 13<br>(39.4%)  | 90<br>(51.4%)   |
| 장애인의 다수결로<br>결정 | 9<br>(14.5%)   | 9<br>(13.8%)       | 0<br>(0.0%)    | 1<br>(3.0%)    | 19<br>(10.9%)   |
| 직원회의를 통해<br>결정  | 6<br>(9.7%)    | 8<br>(12.3%)       | 1<br>(6.7%)    | 7<br>(21.2%)   | 22<br>(12.6%)   |
| 시설장의 결정         | 3<br>(4.8%)    | 1<br>(1.5%)        | 0<br>(0.0%)    | 9<br>(27.3%)   | 13<br>(7.4%)    |
| 결정과정 없음         | 9<br>(14.5%)   | 7<br>(10.8%)       | 0<br>(0.0%)    | 2<br>(6.1%)    | 18<br>(10.3%)   |
| 기타              | 7<br>(11.3%)   | 4<br>(6.2%)        | 1<br>(6.7%)    | 1<br>(3.0%)    | 13<br>(7.4%)    |
| 합 계             | 62<br>(100.0%) | 65<br>(100.0%)     | 15<br>(100.0%) | 33<br>(100.0%) | 175<br>(100.0%) |

지적·자폐성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투표방법 결정은 장애인이 직접 원하는 투표방법으로 결정했다는 응답이 36명(55.4%), 장애인의 다수결로 결정했다는 응답과 직원회의를 통해 결정했다는 응답, 시설장이 결정했다는 응답이 각각 9명(13.8%)으로 나타났다.

기타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86.7%(13명)가 장애인이 직접 원하는 투표방법으로 결정한 것으로 조사되어, 다른 시설유형에 비해 투표방법을 장애인이 직접 선택한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시설 이용자가 직접 투표방법을 결정했다는 응답은 13명(39.4%)으로 다른 시설유형에 비해 낮으며, 직원회의 또는 시설

장이 결정했다는 응답비율이 48.5%(16명)로 다른 시설유형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거주 장애인이 자신의 선택으로 투표방법을 결정하지 못하고, 직원회의를 통하거나 시설장이 결정했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20.0%에 이르며, 특히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48.5%로 나타난 것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권이 투표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상당히 제약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 거소투표 지원

여기에서는 시설 직원 중 2014년 6월 14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거소투표를 지원한 응답자 대상의 거소투표 지원경험에 관한 질문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선거권리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소투표를 권유받은 경험인 있는지를 시설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4-66>과 같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거소투표를 권유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91명(49.7%)으로 나타났으며, 시설유형별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대적으로는 지적·자폐성장애인 거주시설 응답자들이 장애인의 거소투표를 권유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55.9%(38명)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6> 시설유형에 따른 거소투표 권유받은 경험

| 구 분                | 중증장애인<br>거주시설  | 지적/자폐성<br>장애인 거주시설 | 기타 장애인<br>거주시설 | 정신요양시설         | 합 계             |
|--------------------|----------------|--------------------|----------------|----------------|-----------------|
| 거소투표 권유받은<br>경험 있음 | 29<br>(45.3%)  | 38<br>(55.9%)      | 7<br>(46.7%)   | 17<br>(47.2%)  | 91<br>(49.7%)   |
| 거소투표 권유받은<br>경험 없음 | 35<br>(54.7%)  | 30<br>(44.1%)      | 8<br>(53.3%)   | 19<br>(52.8%)  | 92<br>(50.3%)   |
| 합 계                | 64<br>(100.0%) | 68<br>(100.0%)     | 15<br>(100.0%) | 36<br>(100.0%) | 183<br>(100.0%) |

chi-square = 1.676, df = 3, p = 0.642

장애인의 정상화(normalization),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 등의 이념이 장애인에 대한 주류적 관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해 거소투표를 권유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9.7%에 이른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설 거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통합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며, 투표행위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완전한 지역사회통합과 선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사전투표 또는 일반투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투표나 일반투표가 불가능한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해 예외적으로 거소투표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설 이용자들이 거소투표를 한 이유를 시설유형별로 다중응답 교차분석을 한 결과는 <표 4-67>과 같다.

<표 4-67> 시설유형별 거소투표를 한 이유(다중응답)

| 구 분                     | 중증장애인<br>거주시설 | 지적/지체성<br>장애인 거주시설 | 기타 장애인<br>거주시설 | 정신요양시설        | 합 계           |
|-------------------------|---------------|--------------------|----------------|---------------|---------------|
| 장애인이 직접 선택              | 13<br>(27.1%) | 8<br>(25.8%)       | 2<br>(33.3%)   | 7<br>(13.7%)  | 30<br>(22.1%) |
| 항상 거소투표를해<br>왔기 때문      | 1<br>(2.1%)   | 0<br>(0.0%)        | 1<br>(16.7%)   | 9<br>(17.6%)  | 11<br>(8.1%)  |
| 투표진행 방해 우려              | 7<br>(14.6%)  | 4<br>(12.9%)       | 0<br>(0.0%)    | 5<br>(9.8%)   | 16<br>(11.8%) |
| 선관위, 지자체 요청             | 3<br>(6.3%)   | 1<br>(3.2%)        | 0<br>(0.0%)    | 7<br>(13.7%)  | 11<br>(8.1%)  |
| 장애특성 상<br>투표장 투표<br>불가능 | 23<br>(47.9%) | 17<br>(54.8%)      | 2<br>(33.3%)   | 20<br>(39.2%) | 62<br>(45.6%) |
| 기타                      | 1<br>(2.1%)   | 1<br>(3.2%)        | 1<br>(16.7%)   | 3<br>(5.9%)   | 6<br>(4.4%)   |
| 합 계                     | 48<br>(100%)  | 31<br>(100%)       | 6<br>(100%)    | 51<br>(100%)  | 136<br>(100%) |

시설 이용자들의 장애특성 상 이동 등 투표장에서의 투표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2명(45.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시설 이용자들이 직접 거소투표를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0명(22.1%), 일반(사전)투표장에서 장애인이 투표 진행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6명(11.8%), 선거관리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거소투표를 진행했다는 응답과 항상 거소투표를 해 왔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각각 11명(8.1%)으로 나타났다. 기타(6명, 4.4%) 응답으로는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재하여 이동권이 확보되지 않아 거소투표를 한 경우와 사전·일반투표장까지 이동에 필요한 차량과 인솔직원 부족으로 인해 거소투표를 한 경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거소투표를 한 경우 등이 있었다.

거소투표를 한 이유는 시설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거소투표를 하게 되었다는 응답(7명, 13.7%)이 다른 시설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애특성 상 이동 등 투표장에서의 투표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지적·자폐성장애인 거주시설(17명, 54.8%)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23명, 47.9%)이 다른 유형의 시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투표 또는 사전투표장에서 장애인이 투표 진행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거소투표를 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11.8%에 이른다는 점은 장애인 선거권에 대한 시설 직원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응답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사전·일반투표장까지 이동에 필요한 차량과 인솔직원 부족으로 인해 거소투표를 하게 되었다는 응답은 투표장까지의 이동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시설 거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사전·일반투표장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일반투표장까지의 이동을 위해 차량과 인력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시설 내에서 거소투표를 실시한 경우 어떤 장소에서 투표가 진행되었는지

를 시설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4-68>과 같다. 거소투표가 시설 내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진행되었다는 응답이 59명(79.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시설 이용자가 생활하는 방 등 투표에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에서 거소투표가 이루어졌다는 응답이 14명(18.9%) 등으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로는 지적·자폐성장애큰 거주시설에서 시설 내에 기표소를 설치한 비율이 가장 낮았고, 정신요양시설이 시설 내에 기표소를 설치하여 거소투표를 진행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8> 시설유형별 거소투표 장소(다중응답)

| 구 분              | 중증장애인<br>거주시설 | 지적/자폐성<br>장애인 거주시설 | 기타 장애인<br>거주시설 | 정신요양시설        | 합 계           |
|------------------|---------------|--------------------|----------------|---------------|---------------|
| 시설 내 설치된<br>기표소  | 24<br>(80.0%) | 13<br>(65.0%)      | 4<br>(100.0%)  | 18<br>(90.0%) | 59<br>(79.7%) |
| 다른 사람이 있는<br>장소  | 0<br>(0.0%)   | 1<br>(5.0%)        | 0<br>(0.0%)    | 0<br>(0.0%)   | 1<br>(1.4%)   |
| 투표 방해받지 않을<br>장소 | 6<br>(20.0%)  | 6<br>(30.0%)       | 0<br>(0.0%)    | 2<br>(10.0%)  | 14<br>(18.9%) |
| 합 계              | 30<br>(100%)  | 20<br>(100%)       | 4<br>(100%)    | 20<br>(100%)  | 74<br>(100%)  |

상대적으로 비율은 높지 않지만 주목해서 보아야 할 점은 사무실, 식당 등 다른 이용자나 직원들이 있는 장소에서 투표를 진행한 경우가 1.4%, 장애인이 생활하는 방 등 장애인이 투표에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에서 투표가 이루어진 경우가 18.9%에 이른다는 점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시설 거주 장애인의 투표는 원칙적으로 사전투표나 일반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별한 이유로 거소투표를 할 수 밖에 없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시설 내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시설 이용 장애인의 선거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설에서 거소투표를 진행한 경우, 시설 외부 참관인이 참석하였는지를 시설유형별로 분석한 결과(<표 4-69> 참조), 시설유형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설 거소투표 시 외부 참관인이 참석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63명(84.0%), 외부 참관인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2명(16.0%)으로 나타났다.

시설 외부 참관인이 참석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소투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보다 공정한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거소투표 시 기표소 설치와 함께 시설 외부 참관인의 참석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표 4-69> 시설유형별 거소투표 시 외부 참관인 참석 여부

| 구 분                  | 중증장애인<br>거주시설 | 지적/자폐성<br>장애인 거주시설 | 기타 장애인<br>거주시설 | 정신요양시설       | 합 계          |
|----------------------|---------------|--------------------|----------------|--------------|--------------|
| 시설 외부 참관인<br>배석      | 25<br>83.3%   | 16<br>84.2%        | 3<br>75.0%     | 19<br>86.4%  | 63<br>84.0%  |
| 시설 외부 참관인<br>배석하지 않음 | 5<br>16.7%    | 3<br>15.8%         | 1<br>25.0%     | 3<br>13.6%   | 12<br>16.0%  |
| 합 계                  | 30<br>100.0%  | 19<br>100.0%       | 4<br>100.0%    | 22<br>100.0% | 75<br>100.0% |

chi-square = 0.343, df = 3, p = 0.952

시설에서 거소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시설유형별로 다중응답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70>과 같다. 시설 내 모든 장애인이 혼자서 직접 기표했다는 응답이 39명(56.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기표를 한 시설 이용자가 있다는 응답이 26명(37.7%), 장애인 대신 다른 사람이 기표한 경우가 있다는 응답이 4명(5.8%)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기표한 장애인과 다른 사람이 대신 기표한 장애인의 특성을 질문한 결과, 많은 경우가 1급의 중증장애인이며,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 문해가 불가능한 장애인, 손으로 도구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기표한 장애인이 있다는 응답비율(13명, 52.0%)이 다른 시설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모든 장애인이 혼자서 직접 기표했다는 응답비율(9명, 36.0%)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장애인이 혼자서 직접 기표했다는 응답비율(17명, 73.9%)이 다른 시설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일부 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기표했다는 응답비율(6명, 26.1%)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내에서 거소투표를 진행함에 있어, 장애인을 대신해 다른 사람이 기표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사례(4명, 5.8%)가 많지는 않지만,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투표경험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부득이하게 혼자서 기표를 할 수 없는 장애인을 구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신 기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과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과 기표소에 동행하는 인원은 2인으로 정하여 장애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기표하는지를 상호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4-70> 시설 유형별 거소투표 시 기표한 사람(다중응답)

| 구 분                          | 중증장애인<br>거주시설 | 지적/자폐성<br>장애인 거주시설 | 기타 장애인<br>거주시설 | 정신요양시설        | 합 계           |
|------------------------------|---------------|--------------------|----------------|---------------|---------------|
| 모든 장애인이<br>혼자서 직접 기표         | 9<br>(36.0%)  | 11<br>(68.8%)      | 2<br>(40.0%)   | 17<br>(73.9%) | 39<br>(56.5%) |
| 일부 장애인은<br>다른 사람<br>도움 받아 기표 | 13<br>(52.0%) | 5<br>(31.3%)       | 2<br>(40.0%)   | 6<br>(26.1%)  | 26<br>(37.7%) |
| 일부 장애인은<br>다른 사람이<br>대신 기표   | 3<br>(12.0%)  | 0<br>(0.0%)        | 1<br>(20.0%)   | 0<br>(0.0%)   | 4<br>(5.8%)   |
| 합 계                          | 25<br>(100%)  | 16<br>(100%)       | 5<br>(100%)    | 23<br>(100%)  | 69<br>(100%)  |

거소투표 시 기표한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시설유형별로 다중응답 교차분석을 한 결과는 <표 4-71>과 같다.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 장애인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0명(48.8%)으로 가장 많았으며, 모든 장애인이 혼자서 직접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35명(42.7%)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투표용지를 다른 사람이 대신 봉투에 투입한 장애인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5명(6.1%), 모든 장애인의 투표용지를 직원이 대신 봉투에 넣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2명(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과 지적·자폐성장래인 거주시설에서 일부 장애인의 경우 직원의 도움을 받아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장애인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직접 봉투에 넣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1> 시설유형별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은 사람

| 구 분                            | 중증장애인<br>거주시설 | 지적/자폐성<br>장애인 거주시설 | 기타 장애인<br>거주시설 | 정신요양시설        | 합 계           |
|--------------------------------|---------------|--------------------|----------------|---------------|---------------|
| 모든 장애인이<br>직접 봉투에 넣음           | 9<br>(26.5%)  | 8<br>(40.0%)       | 2<br>(40.0%)   | 16<br>(69.6%) | 35<br>(42.7%) |
| 일부 장애인<br>다른 사람 도움<br>받아 봉투 투입 | 21<br>(61.8%) | 10<br>(50.0%)      | 2<br>(40.0%)   | 7<br>(30.4%)  | 40<br>(48.8%) |
| 일부 장애인<br>다른 사람이<br>대신 봉투 투입   | 3<br>(8.8%)   | 1<br>(5.0%)        | 1<br>(20.0%)   | 0<br>(0.0%)   | 5<br>(6.1%)   |
| 모든 장애인<br>직원이 대신<br>봉투 투입      | 1<br>(2.9%)   | 1<br>(5.0%)        | 0<br>(0.0%)    | 0<br>(0.0%)   | 2<br>(2.4%)   |
| 합 계                            | 34<br>(100%)  | 20<br>(100%)       | 5<br>(100%)    | 23<br>(100%)  | 82<br>(100%)  |

시설 거주 장애인이 거소투표를 함에 있어 보다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논의한 바 있는 기표소 의무 설치, 참관인 의무 배석 등과 함께 기표를 완료한 투표용지를 직접 봉투에 넣을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해 선거 관리위원회 직원 등이 지원 또는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3) 사전·일반투표 지원

여기에서는 시설 직원 중 2014년 6월 14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나 일반투표를 지원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사전투표나 일반투표 지원 경험에 관한 질문을 통해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살펴볼 것이다.

<표 4-72> 시설유형별 사전·일반투표를 선택한 이유

| 구 분                           | 중증장애인<br>거주시설  | 지적/자폐성<br>장애인 거주시설 | 기타 장애인<br>거주시설 | 정신요양시설         | 합 계             |
|-------------------------------|----------------|--------------------|----------------|----------------|-----------------|
| 장애인이 사전/<br>일반투표하기를<br>원했기 때문 | 9<br>(27.3%)   | 18<br>(39.1%)      | 5<br>(50.0%)   | 6<br>(37.5%)   | 38<br>(36.2%)   |
| 사전/일반투표를<br>하는 것이 바람직<br>하므로  | 20<br>(60.6%)  | 27<br>(58.7%)      | 4<br>(40.0%)   | 7<br>(43.8%)   | 58<br>(55.2%)   |
| 항상 지역투표소에<br>서 투표했기 때문        | 2<br>(6.1%)    | 1<br>(2.2%)        | 0<br>(0.0%)    | 3<br>(18.8%)   | 6<br>(5.7%)     |
| 기타                            | 2<br>(6.1%)    | 0<br>(0.0%)        | 1<br>(10.0%)   | 0<br>(0.0%)    | 3<br>(2.9%)     |
| 합 계                           | 33<br>(100.0%) | 46<br>(100.0%)     | 10<br>(100.0%) | 16<br>(100.0%) | 105<br>(100.0%) |

chi-square = 13.532, df = 9, p = 0.140

<표 4-72>는 시설 이용자가 사전투표 또는 일반투표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시설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사전투표 또는 일반투표를 선택한 이유는 시설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전·일반투표를 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58명(55.2%)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 이용자가 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8명(36.2%), 항상 지역투표소에서 투표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명(5.7%)으로 나타났다.

사전투표 또는 일반투표를 위해 투표소로 이동할 때 동행한 사람을 시설유형별로 다중응답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73>과 같다. 시설유형별로 투표소까지 이동할 때 동행한 사람의 분포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투표소까지 이동할 때 시설 직원이 동행한 경우가 151명(61.6%)으로 가장 많았으며, 같이 생활하는 장애인과 함께 이동한 경우가 56명(35.9%)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애인이 혼자서 이동했다는 응답이 14명(5.7%), 자원봉사자와 이동한 경우가 11명(4.5%), 장애인의 가족이 함께 이동한 경우가 7명(2.9%), 선거관리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인력과 함께 이동한 경우가 5명(2.0%)으로 조사되었다.

<표 4-73> 시설유형별 투표소 이동에 동행한 사람(다중응답)

| 구 분             | 중증장애인<br>거주시설  | 지적/자폐성<br>장애인 거주시설 | 기타 장애인<br>거주시설 | 정신요양시설         | 합 계             |
|-----------------|----------------|--------------------|----------------|----------------|-----------------|
| 직원              | 47<br>(65.3%)  | 67<br>(59.3%)      | 13<br>(59.1%)  | 24<br>(63.2%)  | 151<br>(61.6%)  |
| 자원봉사자           | 2<br>(2.8%)    | 4<br>(3.5%)        | 3<br>(13.6%)   | 2<br>(5.3%)    | 11<br>(4.5%)    |
| 장애인의 가족         | 2<br>(2.8%)    | 4<br>(3.5%)        | 0<br>(0.0%)    | 1<br>(2.6%)    | 7<br>(2.9%)     |
| 선관위/지자체<br>지원인력 | 3<br>(4.2%)    | 2<br>(1.8%)        | 0<br>(0.0%)    | 0<br>(0.0%)    | 5<br>(2.0%)     |
| 동료 장애인          | 15<br>(20.8%)  | 29<br>(25.7%)      | 5<br>(22.7%)   | 7<br>(18.4%)   | 56<br>(35.9%)   |
| 장애인 혼자서         | 3<br>(4.2%)    | 6<br>(5.3%)        | 1<br>(4.5%)    | 4<br>(10.5%)   | 14<br>(5.7%)    |
| 동행자 알 수 없음      | 0<br>(0.0%)    | 1<br>(0.9%)        | 0<br>(0.0%)    | 0<br>(0.0%)    | 1<br>(0.4%)     |
| 합 계             | 72<br>(100.0%) | 113<br>(100.0%)    | 22<br>(100.0%) | 38<br>(100.0%) | 245<br>(100.0%) |

사전투표, 일반투표를 위해 투표소에 방문할 때, 장애인에 대한 이동지원 방법을 시설유형별로 다중응답 분석을 한 결과(<표 4-74> 참조), 시설유형별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시설 차량을 이용하여 투표소까지 이동했다는 응답이 135명(72.2%)으로 가장 많으며, 투표소까지 걸어서 이동했다는 응답이 39명(20.9%)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했다는 응답이 6명(3.2%),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했다는 응답이 3명(1.6%)으로 나타났다. 기타(4명, 2.1%) 응답으로는 시설 직원의 차량을 활용한 경우, 전동휠체어로 이동한 경우 등이 있었다.

<표 4-74> 시설유형별 투표소까지 이동방법(다중응답)

| 구 분             | 중증장애인<br>거주시설  | 지적/자폐성<br>장애인 거주시설 | 기타 장애인<br>거주시설 | 정신요양시설         | 합 계             |
|-----------------|----------------|--------------------|----------------|----------------|-----------------|
| 시설 차량           | 46<br>(74.2%)  | 54<br>(67.5%)      | 11<br>(64.7%)  | 24<br>(85.7%)  | 135<br>(72.2%)  |
| 선관위/지자체<br>지원차량 | 2<br>(3.2%)    | 1<br>(1.3%)        | 0<br>(0.0%)    | 0<br>(0.0%)    | 3<br>(1.6%)     |
| 대중교통            | 2<br>(3.2%)    | 4<br>(5.0%)        | 0<br>(0.0%)    | 0<br>(0.0%)    | 6<br>(3.2%)     |
| 걸어서             | 10<br>(16.1%)  | 19<br>(23.8%)      | 6<br>(35.3%)   | 4<br>(14.3%)   | 39<br>(20.9%)   |
| 기타              | 2<br>(3.2%)    | 2<br>(2.5%)        | 0<br>(0.0%)    | 0<br>(0.0%)    | 4<br>(2.1%)     |
| 합 계             | 62<br>(100.0%) | 80<br>(100.0%)     | 17<br>(100.0%) | 28<br>(100.0%) | 187<br>(100.0%) |

사전투표 또는 일반투표 장소에서 투표용지를 받기 전 신분확인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시설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4-75>와 같다. 시설유형별로 신분확인 방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직접 자신의 신분증을 가지고 신분확인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92명(78.0%)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원이 장애인 각각에 대해 신분확인을

도왔다는 응답이 24명(20.3%)으로 나타났다. 기타(2명, 1.7%) 응답으로는 직접 신분확인이 가능한 장애인은 스스로 신분확인을 받았고, 손 강직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직원이 신분확인을 도와준 경우가 있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직원이 장애인 각각에 대해 신분확인을 도왔다는 응답비율(12명, 34.3%)이 다른 시설유형 응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특성에 따라 신분확인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분명히 있지만, 가급적 장애인이 혼자서 신분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표 4-75> 시설유형별 신분확인 방법

| 구 분     | 중증장애인<br>거주시설  | 지적/자폐성<br>장애인 거주시설 | 기타 장애인<br>거주시설 | 정신요양시설         | 합 계             |
|---------|----------------|--------------------|----------------|----------------|-----------------|
| 장애인이 직접 | 21<br>(60.0%)  | 43<br>(86.0%)      | 8<br>(80.0%)   | 20<br>(87.0%)  | 92<br>(78.0%)   |
| 직원이 도움  | 12<br>(34.3%)  | 7<br>(14.0%)       | 2<br>(20.0%)   | 3<br>(13.0%)   | 24<br>(20.3%)   |
| 기타      | 2<br>(5.7%)    | 0<br>(0.0%)        | 0<br>(0.0%)    | 0<br>(0.0%)    | 2<br>(1.7%)     |
| 합 계     | 35<br>(100.0%) | 50<br>(100.0%)     | 10<br>(100.0%) | 23<br>(100.0%) | 118<br>(100.0%) |

chi-square = 11.787, df = 6, p = 0.067

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으로부터 장애인 대신 신분확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시설유형별로 분석한 결과(<표 4-76> 참조), 시설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신분을 대리로 확인해 줄 것을 요청받은 경험이 있는 시설 종사자는 16명(10.3%), 그렇지 않은 경우가 140명(89.7%)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시설유형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이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대리 신분확인 요청을 받은 경

험이 있는 경우가 20.4%인 반면,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는 대리 신분확인 요청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 신분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있지만, 전적으로 시설 직원에게 대리 신분확인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신분확인절차를 담당하는 투표사무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교육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4-76> 시설유형별 대리 신분확인 요청 받은 경험

| 구 분 | 중증장애인<br>거주시설  | 지적/자폐성<br>장애인 거주시설 | 기타 장애인<br>거주시설 | 정신요양시설         | 합 계             |
|-----|----------------|--------------------|----------------|----------------|-----------------|
| 있음  | 10<br>(20.4%)  | 4<br>(6.0%)        | 2<br>(14.3%)   | 0<br>(0.0%)    | 16<br>(10.3%)   |
| 없음  | 39<br>(79.6%)  | 63<br>(94.0%)      | 12<br>(85.7%)  | 26<br>(100.0%) | 140<br>(89.7%)  |
| 합 계 | 49<br>(100.0%) | 67<br>(100.0%)     | 14<br>(100.0%) | 26<br>(100.0%) | 156<br>(100.0%) |

chi-square = 10.042, df = 2, p < 0.05

기표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나 참관인 등으로부터 장애인 대신 투표를 하라는 권유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권유를 받은 경험이 있는 시설 직원은 없었다.

<표 4-77>은 사전투표 또는 일반투표 시 혼자서 투표할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 기표소에 함께 들어간 사람을 시설유형별로 다중응답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시설 거주 장애인이 기표소에 들어갈 때 모든 장애인이 혼자서 들어갔다는 응답이 101명(63.1%)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또는 투표참관인이 기표소에 같이 들어갔다는 응답이 31명(19.4%), 시설 직원이 같이 들어갔다는 응답이 26명(16.3%), 장애인의 가족이 함께 들어갔다는 응답이 2명(1.3%)으로 조사되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장애인이 혼자서 들어갔다는 응답

이 28명(53.8%),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또는 투표참관인이 같이 들어갔다는 응답이 13명(25.0%), 시설직원이 같이 들어갔다는 응답이 10명(19.2%)으로 나타났다. 지적·자폐성장래인 거주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장애인이 혼자서 들어갔다는 응답이 43명(63.2%),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또는 투표참관인이 같이 들어갔다는 응답이 14명(20.6%), 시설직원이 같이 들어갔다는 응답이 12명(16.2%)으로 나타났다. 기타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장애인이 혼자서 들어갔다는 응답이 43명(63.2%),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또는 투표참관인이 같이 들어갔다는 응답과 시설직원이 같이 들어갔다는 응답이 각각 4명(26.7%)으로 나타났다.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다른 시설유형에 비해 모든 장애인이 혼자서 들어갔다는 응답비율(24명, 96.0%)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7> 시설유형별 기표소에 같이 들어간 사람(다중응답)

| 구 분                 | 중증장애인<br>거주시설  | 지적/자폐성<br>장애인 거주시설 | 기타 장애인<br>거주시설 | 정신요양시설         | 합 계             |
|---------------------|----------------|--------------------|----------------|----------------|-----------------|
| 모든 장애인이<br>혼자서 들어감  | 28<br>(53.8%)  | 43<br>(63.2%)      | 6<br>(40.0%)   | 24<br>(96.0%)  | 101<br>(63.1%)  |
| 가족                  | 1<br>(1.9%)    | 0<br>(0.0%)        | 1<br>(6.7%)    | 0<br>(0.0%)    | 2<br>(1.3%)     |
| 선관위 직원<br>또는 투표 참관인 | 13<br>(25.0%)  | 14<br>(20.6%)      | 4<br>(26.7%)   | 0<br>(0.0%)    | 31<br>(19.4%)   |
| 시설 직원               | 10<br>(19.2%)  | 11<br>(16.2%)      | 4<br>(26.7%)   | 1<br>(4.0%)    | 26<br>(16.3%)   |
| 합 계                 | 52<br>(100.0%) | 68<br>(100.0%)     | 15<br>(100.0%) | 25<br>(100.0%) | 160<br>(100.0%) |

<표 4-77>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혼자서 투표할 수 없는 장애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간 사람이 장애인의 가족이 아닌 경우, 장애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간 사람 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 4-78>과 같다. 장애인과 기표소에 동행한 사람이 1명인 경우가 28명(70.0%), 2명인 경우가 12명(30.0%)으로 나타났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투표경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혼자서 투표할

수 없는 장애인이 기표소로 들어갈 때 동행한 사람이 1명인 경우에는 장애인의 의사와는 달리, 동행자가 원하는 사람이나 정당에 투표하는 등의 부정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혼자서 투표할 수 없는 장애인이 있어 다른 사람이 동행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명이 기표소로 들어가 상호 점검함으로써 부정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제6항에서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투표보조가 필요한 장애인을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적장애인이거나 자폐성장장애인은 투표보조를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미비로 판단되며, 지적·자폐성장장애인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적·자폐성장장애인과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는 2인 중 1인은 투표관리관 또는 선거사무원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4-78> 기표소에 같이 들어간 사람 수

| 구 분 | 빈도 | 퍼센트   |
|-----|----|-------|
| 1명  | 28 | 70.0  |
| 2명  | 12 | 30.0  |
| 합 계 | 40 | 100.0 |

사전투표 또는 일반투표 시 투표용지에 기표한 사람을 시설유형별로 다중 응답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4-79> 참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모든 장애인이 혼자서 기표했다는 응답이 32명(69.6%)으로 다른 시설유형 직원의 응답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부 장애인은 타인의 도움을 받아 기표했다는 응답은 13명(28.3%)으로 분석되었다. 지적·자폐성장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중 모든 장애인이 혼자서 기표한 경우가 51명(79.7%),

일부 장애인은 타인의 도움을 받아 기표했다는 응답이 13명(20.3%)으로 나타났다. 기타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장애인이 혼자서 기표했다는 응답이 9명(90.0%), 일부 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기표했다는 응답이 1명(10.0%)으로 조사되었다.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는 100%(25명)가 모든 장애인이 혼자서 직접 기표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기타(1명, 0.7%)로는 기표소에 동행한 사람이 투표참관인이어서 누가 기표했는지 알 수 없다는 응답이 있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기표한 장애인의 특성은 중증장애인, 손 강직으로 도구를 쓸 수 없는 장애인, 손 떨림이 심해 기표가 불가능한 장애인, 팔을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 문맹인 장애인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79> 시설유형별 기표한 사람(다중응답)

| 구 분                        | 중증장애인<br>거주시설  | 지적/자폐성<br>장애인 거주시설 | 기타 장애인<br>거주시설 | 정신요양시설         | 합 계             |
|----------------------------|----------------|--------------------|----------------|----------------|-----------------|
| 모든 장애인<br>혼자서 기표           | 32<br>(69.6%)  | 51<br>(79.7%)      | 9<br>(90.0%)   | 25<br>(100.0%) | 117<br>(80.7%)  |
| 일부 장애인은<br>타인의 도움 받아<br>기표 | 13<br>(28.3%)  | 13<br>(20.3%)      | 1<br>(10.0%)   | 0<br>(0.0%)    | 27<br>(16.6%)   |
| 기타                         | 1<br>(2.2%)    | 0<br>(0.0%)        | 0<br>(0.0%)    | 0<br>(0.0%)    | 1<br>(0.7%)     |
| 합 계                        | 46<br>(100.0%) | 64<br>(100.0%)     | 10<br>(100.0%) | 25<br>(100.0%) | 145<br>(100.0%) |

<표 4-80>은 사전투표 또는 일반투표 시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시설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결과는 앞에서 시설유형별로 논의한 기표한 사람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모든 장애인이 혼자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했다는 응답이 31명(66.0%)으로 다른 시설유형의 응답과 비교해 가장 낮

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부 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투입했다는 응답이 16명(34.0%)으로 조사되었다. 지적·자폐성장래인 거주시설의 경우 모든 장애인이 혼자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했다는 응답이 42명(71.2%), 일부 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했다는 응답이 16명(27.1%), 일부 장애인은 다른 사람이 대신 투표함에 투입했다는 응답이 1명(1.7%)으로 나타났다. 기타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모든 장애인이 혼자서 투표함에 투입했다는 응답이 8명(80.0%), 일부 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투표함에 투입했다는 응답이 2명(20.0%)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은 응답자의 100%(26명)가 모든 장애인이 혼자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투표용지를 다른 사람이 대신 투표함에 투입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투입한 장애인의 특성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기표한 장애인의 특성과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80> 시설유형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은 사람(다중응답)

| 구 분                    | 중증장애인<br>거주시설  | 지적/자폐성<br>장애인 거주시설 | 기타 장애인<br>거주시설 | 정신요양시설         | 합 계             |
|------------------------|----------------|--------------------|----------------|----------------|-----------------|
| 모든 장애인<br>혼자서 투입       | 31<br>(66.0%)  | 42<br>(71.2%)      | 8<br>(80.0%)   | 26<br>(100.0%) | 107<br>(75.4%)  |
| 일부 장애인 타인의<br>도움 받아 투입 | 16<br>(34.0%)  | 16<br>(27.1%)      | 2<br>(20.0%)   | 0<br>(0.0%)    | 34<br>(23.9%)   |
| 일부 장애인 다른<br>사람이 대신 투입 | 0<br>(0.0%)    | 1<br>(1.7%)        | 0<br>(0.0%)    | 0<br>(0.0%)    | 1<br>(0.7%)     |
| 합 계                    | 47<br>(100.0%) | 59<br>(100.0%)     | 10<br>(100.0%) | 26<br>(100.0%) | 142<br>(100.0%) |

## 4. 시사점

지금까지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2014. 06. 14. 시행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양적조사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양적조사는 장애인 거주 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과 종사자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는 양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정신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선거관련 서비스 제공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 정신적 장애인이 투표에 대한 인지정도가 가장 낮고, 장애등급별로는 1급 장애인의 투표인지 정도가 가장 낮으므로, 정신장애인(특히 1급 정신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투표의 의미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투표에 대한 인지여부에 따른 시설에서의 투표 경험을 시설유형별로 분석한 결과(<표 4-16> 참조), 투표를 인지하고 있으면서 시설(병원)에서 투표경험이 없는 정신장애인이 81.0%에 이른다. 이것은 정신요양시설이나 정신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의 상당수가 투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있지만 투표경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정신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선거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투표 경험에 있는 정신장애인의 비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정신의료기관이 이용자들의 선거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시설 거주 장애인이 6·4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면,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선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투표와 관련된 절차와 이동 등의 지원이 있으면 투표를 하지 않은 장애인 중 70% 정도가 투표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에 관한 충분한 수준의 정보제공, 투표장까지

의 이동지원 등 투표와 관련된 전반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시설 거주 장애인이 거소투표보다는 일반투표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해 거소투표를 권유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종사자 비율이 49.7%에 이른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설 거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통합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비장애인과 함께 하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며, 투표행위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완전한 지역사회통합과 선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사전투표 또는 일반투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투표나 일반투표가 불가능한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해 예외적으로 거소투표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거소투표 비율은 지체·뇌병변 등 신체적 장애인과 시각·청각·언어 등 감각적 장애인이 정신적 장애인보다 높고, 1급 장애인이 2급 이하 장애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일반투표 또는 사전투표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신체적 장애인과 감각적 장애인이 투표 진행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투표방법의 결정부터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투표방법 결정과 관련하여, 장애인 대상 조사에서는 시설(병원) 직원이 결정했다는 응답이 36.4%에 이르고, 종사자 대상 조사에서는 직원회의를 통하거나 시설장이 결정했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20.0%에 이르며, 특히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48.5%로 나타난 것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권이 투표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상당히 제약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투표방법 결정주체가 장애등급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설(병원) 직원이 이용자의 투표방법을 결정한 기준과 근거를 찾기 힘들어 보인다. 장애인의 선거권은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며, 정당한 투표권 보장은 어떤 방법으로 투표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설 거주 장애인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는

투표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투표방법 결정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장애인의 경우 자신에게 적합한 투표방법을 스스로 결정한 경우가 많은 반면,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시설 직원 등이 대신 투표방법을 결정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투표방법의 결정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수준의 설명을 제공할 때 장애인들은 자기결정권에 기초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투표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온전한 선거참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수준과 방법으로 선거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우편 선거공보물은 투표권이 있는 모든 유권자에게 발송되며, 투표일정과 장소, 내용과 함께 후보자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체이다. 그런데 시설 거주 장애인들 중에서 우편 선거공보물을 통해 선거에 관련된 정보를 얻었다는 장애인의 비율은 17.5% 밖에 되지 않는다. 장애인의 특성과 관련된 이유를 생각해보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선거공보물이나 음성선거정보(CD, 보이스아이 등)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용 선거공보물 제공이 미흡하다는 점, 우편 선거공보물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선거공보물은 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제작할 필요가 있으며, 투표용지 또한 후보자의 기호, 이름뿐 아니라 사진을 함께 제시해 줌으로써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선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 스스로 의미 있는 투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은 단순히 투표의 4대 원칙 보장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투표절차가 비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된다 하더라도, 장애인 은 투표와 관련된 적절한 수준의 정보를 얻기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원하는 후보자를 선택함에 있어 처음부터 상당히 제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준과 방법의 선거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선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선거에 대한 정보를 누가, 어떤 방법과 내용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특정 후보에 편향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가 시설을 방문하여 선거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의 의무적 시행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신분확인과 투표용지 수령, 기표 등 일련의 투표과정을 가급적 장애인이 혼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 신분확인, 투표용지 수령, 기표 등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있지만, 전적으로 시설 직원 등 다른 사람이 대리로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투표관리관, 선거사무원, 선거관리위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들의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의 정치적 권리 실현을 위해 스스로 모든 투표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한편, 장애특성으로 인해 신분확인과 투표용지 수령, 기표 등을 본인이 직접 하기 힘든 장애인에 대해서는 투표관리관, 선거사무원 등 투표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장애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장애인의 투표절차를 도와야 할 것이다.

일곱째, 혼자서 기표를 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분명한 지원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기표소에 동행하는 사람의 자격과 범위, 동행하는 사람 수, 기표를 도와주거나 대신할 필요가 있는 장애인 구분 기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 직접 기표를 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기표하는 경우 장애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도와주는 사람이나 대신 기표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기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신 기표하는 사람이 장애인과 동행하여 기표소에 들어갈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 장애인이나 대신 기표하는 사람과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1인 이상 동행하도록 하여 장애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기표하는지를 상호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기표 후에는 장애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기표했는지를 장애인이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법적 장치를 통해 제도화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공정한 선거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거소투표에 관한 명확한 절차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거소투표의 경우 본인 확인 절차가 사전투표나 일반투표에 비해 허술하여 대리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을 파견하여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거소투표라 하더라도 일반투표 또는 사전투표와 마찬가지로 투표의 4대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사무실, 식당 등 다른 장애인이나 시설 직원이 있는 장소에서 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소투표를 해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거소투표를 하는 장애인 수와 무관하게 시설 내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하는 것을 의무화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시설을 방문하여 거소투표 절차를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설이용 장애인의 선거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조사에서 시설 외부 참관인이 참석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소투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보다 공정한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거소투표 시 기표소 설치와 함께 시설 외부 참관인의 참석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아홉째, 시설 직원에 대한 장애인 선거권에 대한 교육을 통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일반투표 또는 사전투표 시 장애인이 투표 진행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거소투표를 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11.8%에 이른다는 점은 장애인 선거권에 대한 시설 직원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의사소통이 어려워 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41.0%로 나타났는데,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지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지는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투표가 가능한 장애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하여, 장애인의 투표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V. 면접조사 분석

### 1. 면접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와 관련된 문제점과 대안들을 심층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FGI를 실시하였다.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선거지원이 충분하고 적절한지 또한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있어서 선거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시설과 다양한 관계의 결을 맺고 있는 대상들을 참여시키고자 하였다.

면접 조사의 조사대상은 전문가와 장애인으로 나누어진다. 전문가대상 FGI는 다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와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장애인거주시설(정신요양시설, 정신장애노숙인시설, 주거제공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그리고 장애인면접조사는 가장 선거참여율이 낮은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시설 안과 밖에서 선거를 경험한 탈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FGI는 다음과 같은 진행절차를 가지고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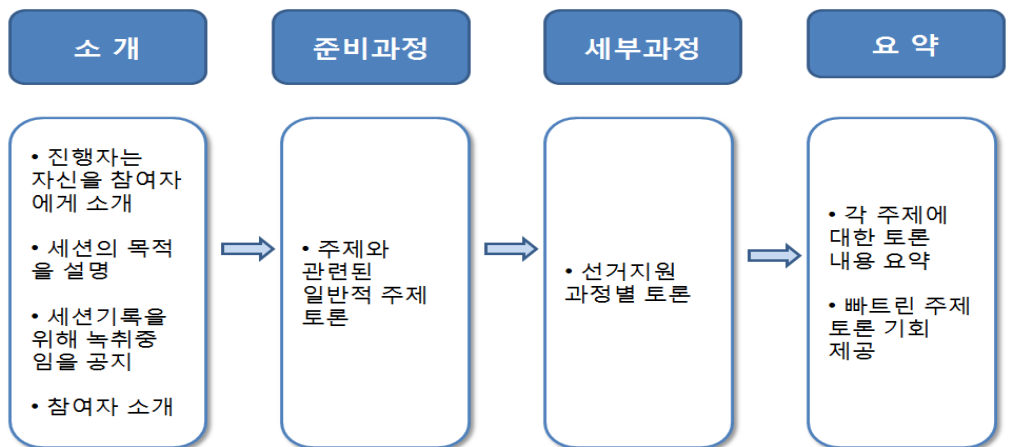


<그림 5-1> FGI 조사 절차

FGI조사를 위한 표집방법, 인터뷰방법, 자료수집방법, 분석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 후,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FGI조사에 참여할 참석자를 모집하였다. 조사는 전문가대상 FGI는 8월 27일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및 시설 근무경력이 있는 협회 종사자 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9월 2일에는 정

신장애인 거주시설(정신요양시설, 정신장애노숙인시설, 주거제공시설) 종사자 6명이 참여하여 2차 FGI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장애인인권단체 활동가 조사가 9월 22일 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장애인면접조사는 9월 5일 정신장애인 9명, 9월 30일 탈시설 장애인 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자료분석은 처음 FGI를 시작으로 10월 13일까지 진행하였다.

FGI는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의 진행으로 약 90-120분 동안 이루어졌다. 인터뷰 중에 각각의 질문에 대한 응답이 포화상태(같은 대답이 반복되는 상태)에 이르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FGI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5-2> FGI 진행과정

FGI 자료의 분석은 FGI 녹취록, 현장노트 등을 활용하여 중요한 진술을 추출하였다. 핵심적인 내용으로 축약하는 범주화를 진행하여 각각의 질문에 대한 결과를 요약·정리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면접조사자에 대한 인적사항은 <표 5-1> 종사자·전문가, <표 5-2> 장애인당사자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FGI 그룹마다 의미 있게 살펴볼 정보라고 생각한 것(종사기관 유형, 병원입원 경험, 장애유형)을 파악하

여 제시하였다. 각 참여자들을 알파벳으로 구분해 놓은 것은 보고서의 인용을 위함이다.

<표 5-1> 종사자·전문가 면접조사 참여자

| no. | 영역                       | 구분 | 연령  | 성별 | 종사기관 유형     |
|-----|--------------------------|----|-----|----|-------------|
| 1   | 장애인거주<br>시설종사자<br>(8/27) | A  | 30대 | 남  | 지적/발달장애인 시설 |
| 2   |                          | B  | 30대 | 남  | 시각장애인 시설    |
| 3   |                          | C  | 40대 | 여  | 청각장애인 시설    |
| 4   |                          | D  | 40대 | 여  | 연구소         |
| 5   |                          | E  | 30대 | 남  | 협회          |
| 6   |                          | F  | 40대 | 남  | 지적/발달장애인 시설 |
| 7   | 정신장애인<br>시설종사자<br>(9/2)  | G  | 20대 | 여  | 정신의료기관      |
| 8   |                          | H  | 20대 | 여  | 정신요양시설      |
| 9   |                          | I  | 30대 | 남  | 주거시설        |
| 10  |                          | J  | 40대 | 남  | 정신요양시설      |
| 11  |                          | K  | 30대 | 여  | 사회복귀시설      |
| 12  |                          | L  | 50대 | 남  | 정신재활시설      |
| 13  | 인권단체<br>활동가<br>(9/22)    | M  | 20대 | 여  | 장애인 인권 단체   |
| 14  |                          | N  | 50대 | 남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
| 15  |                          | O  | 40대 | 여  | 장애인 인권 단체   |
| 16  |                          | P  | 30대 | 여  | 장애인 인권 단체   |
| 17  |                          | Q  | 50대 | 남  | 장애인 인권 단체   |

<표 5-2> 장애인 면접조사 참여자

| no. | 영역                    | 구분 | 연령  | 성별 | 병원입원 경험 |
|-----|-----------------------|----|-----|----|---------|
| 18  | 탈시설<br>정신장애인<br>(9/5) | A  | 20대 | 남  | 있음      |
| 19  |                       | B  | 50대 | 남  | 있음      |
| 20  |                       | C  | 40대 | 여  | 있음      |
| 21  |                       | D  | 30대 | 여  | 있음      |
| 22  |                       | E  | 40대 | 여  | 있음      |
| 23  |                       | F  | 20대 | 남  | 있음      |
| 24  |                       | G  | 40대 | 남  | 있음      |
| 25  |                       | H  | 30대 | 여  | 있음      |
| 26  |                       | I  | 30대 | 여  | 있음      |

| no. | 영역                    | 구분 | 연령  | 성별 | 장애유형      |
|-----|-----------------------|----|-----|----|-----------|
| 27  | 탈시설 뇌병변 장애인<br>(9/30) | J  | 40대 | 여  | 뇌병변 장애 1급 |
| 28  |                       | K  | 30대 | 여  | 뇌병변 장애 1급 |
| 29  |                       | L  | 30대 | 남  | 뇌병변 장애 1급 |
| 30  |                       | M  | 30대 | 남  | 뇌병변 장애 1급 |

## 2. 면접조사 결과

### 1) 전문가 및 종사자

2012년에 이루어진 국가인권위 ‘시설거주인 거주 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본인의 자발적 입소가 13.90%인 반면,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의 설득이나 강요로 비자발적 입소를 한 경우가 82.88%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에 입소한 주된 이유 중 상위 1위, 2위로 ‘24시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가 20.74%, ‘가족이 응답자를 돌볼 수가 없어서’가 15.29%였는데, 연구에서는 이는 지역사회에서 가족의 부양 부담 및 활동보조와 같은 지원체계가 미비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즉 장애인들은 삶의 양식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 가운데 시설거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마지막’ 경로로서 시설거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시설에 거주함의 특수성은 물리적 공간 뿐 만 아니라 시설의 규칙을 공유하는 것에 있다. 시설의 규칙을 통해 공동의 생활공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질서를 만들게 된다. 하지만 비자발적 입소, 자원의 부족 등과 같은 배경으로 시설에 거주하게 되는 장애인의 경우, 시설의 규칙을 개인의 삶으로 내면화하고 이것이 개인의 생활양식을 규정하는 틀로 존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과 관련하여 시설의 입장과 가치가 장애인 개인에게 투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주요하게 문제제기되고 있다. 이는 장애인에게는 선거권 침해의 이슈로, 시설과 선관위에게는 선거 객관성 확보의 이슈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전문가 FGI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장애인 인권 활동가 등 시설과 다양한 관계의 결을 갖는 구성원으로 구성함으로써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권이 지켜지기 위한 방안과 선거 객관성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문가 FGI에서는 무엇보다 선거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삶에서 중요한 이벤트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후보자들이 시설에 적극적으로 선거유세를 하도록 하거나 선관위에서 선거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시설에서는 선거방식 뿐만 아니라 선거결과 역시 알려주어 선거의 전 과정에 시설 거주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사회전반의 분위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표유형 중, 보편적인 방식인 일반투표를 지향해야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일반투표를 하는 과정을 통해 장애인 자신이 투표권을 갖고 있는 존재임을 자각하게 되고, 사회활동 참여의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본다. 또한 거소투표가 비장애인을 가르는 벽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거소투표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인에게 최소한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선거과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있었다.

다음은 종사자 및 전문가 FGI를 통해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장애 유형별 선거과정 지원 내용과 보완할 점, 선거유형 지원상황, 시설과 선관위의 관계를 정리한 내용이다.

## **(1) 선거과정 지원**

선거과정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취득’, ‘기표행위’, ‘투표함에 넣기’ 라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 즉 개인은 후보자 정보에 기반하여 투표할 대상을 선택하고 선택한 바를 기표를 통해 나타내며 이것이 그 후보자의 득표로 현실화 되기 위해 투표함에 넣는 행위까지 연결되어야 한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

거과정은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 특성과 환경적 조건으로 인해 위 단계들이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FGI에서는 장애유형별로 각 단계의 지원이 적절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설거주라는 환경적 조건 속에서 장애인의 선거권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각 단계에 따른 지원의 적절성 여부는 현재 공직선거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애인 선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기준으로 하였다.

#### ① 선거/후보자에 대한 정보취득

‘선거/후보자선거에 대한 정보취득’의 경우, 시설 거주 장애인의 모든 장애 유형에서 불충분하게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직선거법에서 장애인을 위한 투표안내는 시각과 청각 장애에 대한 지원만으로 한정되어 있다.

시각장애인에겐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지원하고 청각장애인에겐 수화통역 안내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QR코드 제공과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수화와 자막방송을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전문가 FGI에서 이러한 지원내용이 비장애인들과 동일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먼저 시각장애인의 경우, 공보물의 무게와 매수의 제한이 비장애인 공보물과 동일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점자로 인쇄될 경우, 비시각장애인의 공보물과 동일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 더 많은 매수가 필요하다. 무게 역시 일반용지에 비해 점자용 용지가 무겁기 때문에 동일한 제한을 두었을 때 점자 공보물은 내용이 축약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점자 공보물이 비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공보물이 담고 있는 정보에서 차이가 나지 않도록 매수와 무게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수화통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후보자나 선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고물이 오는데 공고물 자체도 점자로 넣어주시는데 그 일반 공고물하고 점자 공고물하고 매수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 제한 때문에 일반 공고물이 2매, 그 다음에 점자도 2매,,, 점자용지가 한 장당 보통 150g 나가는데 무게제한이 있어가지고 일반용지로는 100g인데 점자용지는 120g 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그래서 점자용지로 점자 익히신 분들이 점자로 읽어 나간다 하더라도 점자용지는 일반용지에 3배에서 5배 까지도 용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2장으로 제한을 뒀기 때문에 일반투표자들이 봤을 때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B).

또 우리가 선거할 때 선거후보자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수화로 정보를 받으면 좋는데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각장애인들은 수화지원이 어렵고,,,선거 당일날도 보면 수화통역사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지원받기가 어렵고,,(C)

지적/정신장애인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지원 조항은 현재 전무한 상태인데 FGI를 통하여서 지적장애인을 위한 후보자·선거 정보의 제공이 여러 번 강조되었다. 먼저 공보물의 용어나 표현들이 어려워 시설직원들이 지적장애인들에게 후보자의 공약을 전달해주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눈높이에 맞춰 공보물을 제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에서는 선관위의 지원하여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그들의 시선과 언어로 선거와 투표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한 사례가 소개되었다.

O : 현재 공보물 지원(공보물 제작비를 선관위에 돌려받는 지원)은 점자 공고물에 한정되어 있어요.

연구자 : 발달장애인에게 쉽게 쓰여진 공고물은 없나요?

P : 발달장애로 하려면 이것은 지금 현재 법적인 배경이 없어요.

연구자 : 쉬운 홍보물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는 거네요.

P : SP. 전혀 없어요. 전혀 내용이 없어요. 지원이 아예 없어요 발달장애인은.

또한 지적장애인의 경우, 반복학습을 통해 행동을 익히기 때문에 실제현장과 유사한 방식의 투표과정을 여러 차례 경험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즉 사전교육은 지적장애인에게 있어 실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설에서 사전교육을 선관위

에 요청하더라도 지원받지 못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이 시설직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업무 부담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실제 투표현장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 사전교육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사전교육과 관련한 시설의 또 다른 부담감은 사전교육이 특정번호를 학습하게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때문에 시설은 사전교육이 지적장애인들이 선거방식을 이해하고 학습하는데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업무 부담과 선거법 위반에 대한 염려로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다. 때문에 사전교육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가이드 라인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사전투표에 대한 사전교육,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 선거후보자들에 대한 전단지 그런것과, 이 모든 것을 활용해서 전달을 하죠……이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어떻게 전달할건지가 참 고민되는게 하나가 있었고, 하나는 이 교육을 갖다가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해주기를 원했었어요. 요청을 많이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그쪽에서는 계속 NO를 했고,,(E).

또한 지적장애인 시설에서 선거를 안내 할 때 선거법 위반의 가능성을 들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선거방식을 결정하게 함(의도적 유도 방지)으로써 개인에게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례도 이야기되었다. 지적장애인 개인마다 갖는 장애정도에 맞추어 보충적인 설명을 듣는 것은 선거에 관련한 정보를 취득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지나친 통제가 지적장애인의 선거 관련한 정보취득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정신장애인의 선거관련 논의는 많은 부분 정보취득과 관련되어 있었다. 특히 입원경험이 있는 경우, 선거 관련 정보가 차단되는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 그것은 단지 공보물의 전달에 관련한 수준이 아니라, 시설에 자신의 선거권 행사를 결정할 수 있는 창구의 부재와 관련되어 있다.

(선거)욕구가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접근이 안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래서 정신장애인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것은 저는 첫번째가 접근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에서는 투표 의사를 파악하는 것을 의무화하면 어떨까,, 10인 이상이면 몇 백명이 입원한 기관에서는 10명이 안 나올 리가 없을 것 같아요(K).

선관위에서 정신의료기관으로 전달되는 공식적 선거안내는 거소투표소 설치신고 안내와 거소투표에 대하여 대상자들에게 안내할 것을 권유하는 공문이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안내공문은 정신의료기관내 행정라인에 접수되지만 그 내용이 의무사항이 아닌 경우 의료라인으로 전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고 있었다. 더욱이 거소투표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선관위가 투표관련 내용이 대상자들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행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정신의료기관의 행정라인에서 투표에 관한 정보제공문서는 폐기되고 선관위는 감독이 없고 위반에 대하여 제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기관으로 오는 건 있어요. (공문은) 두 가지로 나뉘서 오는데, 거소투표 설치관련 신고와 거소투표대한 것을 대상자한테 안내하라는 식의 내용? 원무과에 오기만할 뿐, 사회복지사들에게 전달되지 않아요……저희도 솔직히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게 더 컸어요. 환자분들이 욕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것이 여쭙본 적이 없었어요. 투표에 대한 의사를 물어볼 기회도 없었어요……공문을 원무과에서 받아오니까 원무과에서 하는 얘기는 왜, 이걸 왜 갑자기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재가 없으면, 병원에 해가 되는 것이 없으면 굳이 하지 않아서 일을 만들지 않으려 해요(G).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들은 정신장애인들의 표에 대해 점차 관심 갖기 시작하는 추세이다. 아직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후보자들이 정신장애인 시설에 선거유세를 하러 오거나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등 정신장애인을 유권자로서 인식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평가다. 종사자들은 후보자가 시설에서 선거유세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장애인이 자신의 선거권에 대해 관심을 갖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외부와 접촉이 활발한 기관에 있는 정신장애인들의 경우에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즉 실제로 선거 관련한 정보에 노출되었을 때 정신장애인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형성

되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선거 분위기를 정신장애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참여의 방법과 후보자 정보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는 (선거유세)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정당을 떠나서 우리는 누구는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오픈하자. 지역사회에서는 다 하는데 왜 굳이 그 분들이 오는 것을 막나, 그러다보니까 경쟁이 된다고, 어떤 팀은 공사 조직을 잡아놓고 그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의 우동 나누기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는 팀도 있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하더라고요. 각 정당에서 와서 하는 모습들이 분위기적으로도 좋더라고요(J).

저희 회원들은 공청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의원의 공약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요(H)

낮 병원 회원분들은 정보에 많이 노출되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많이 하니까 훨씬 더 받아들이는 게 현실적이라고 한다면 병동에 있는 분들은 얘기도 잘 안하고, 모일 시간도 잘 없고, 기본적으로는 정보에 노출되는 적어요. 모든 것이 폐쇄되어 있으니까 제한점이 많죠. 그럼 환자들이 어떻게 투표를 해야할까? 보호자가 와서 데리고 나가지 않는 한 투표를 할 수 없는데, 투표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지만 자기 목소리를 안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보제공에 대한 강제성이 필요한 거예요. 공문은 왔지만 제재가 없으니 주지 않잖아요. 주면 일이니까(G).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선거/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주목해야하는 이슈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정보전달이 ‘객관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의 문제이다. 모든 장애인 유형에서 충분히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각각의 선거 관련 정보가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지원 서비스들이 의무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지원제도들은 각 장애유형에 맞게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정보가 전달되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는 그러한 정보들이 ‘객관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후보자에 대한 정보취득의 과정에서 장

애인들이 시설에 심리적, 정서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선관위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교육이 선관위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선거 객관성 확보의 책임을 기관에게 지나치게 부여하고 있어 시설에는 업무 부담으로, 장애인에게는 선거권 보장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선거/후보자 정보취득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점은 시설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이다. 선거벽보나 유세 등을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환기가 일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시설 거주 장애인의 '정보'를 단순히 선거공보물 전달에 한정지어서는 안된다. 시설 거주 장애인이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교육을 비롯하여 선거벽보 기재, 선거유세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 ② 기표행위와 투표함에 넣기

이 두 가지 단계는 기표를 통해 장애인의 선거 의지가 실제로 구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선거과정에서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이다. 기표행위와 투표함에 넣는 행위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스스로가 아닌 다른이의 의도가 개입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이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에 관한 쟁점이 구체화 된다.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하여 기표행위와 투표함에 넣는 과정에서 지원되는 투표보조의 '보조' 범위를 어떻게 둘 것인가에 대해 선관위와의 해석의 차이를 주요하게 언급하였다. 또한 현재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인'(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단 신체 또는 시각장애인에 한정)으로 한정지은 투표 보조자 자격이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실제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규정이라고 보았다.

투표를 보조할 때 장애의 특성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물리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투표보조와 관련한 법 조항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즉 법에서 보조자가 도와줄 수 있는 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지게 되고 이로써 선관위 측에서 보조 내용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FGI에서 확인한 결과, 기표행위에 대한 동일한 보조 내용도 선거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안보이시는 분들이 더듬어서 도장을 찍어야하는데 기호밖에 없는데다 여러 가지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칸을 손으로 더듬어서 찍어야하는데 정확히 찍을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 중에 같이 가고자 원하시는 분들이 따라 들어가서 표기를 해야되는데 그러면 손을 잡아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sup>16)</sup>이 되고 옆에서 또 봐드려야 하는 부분이,,,그걸 선관위에서 보더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들어오시더라구요.(B)

현재 법에서는 기표행위 보조와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이 점자해독이 불가능하여 점자투표용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경우, 투표보조 가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지점은 ‘무엇을’ 장애로 인한 기표의 어려움으로 볼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본 연구의 FGI에서는 기표행위와 관련한 보조의 내용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정교한 손동작이 어렵다거나 낮은 환경에 행동을 멈추는 특징을 갖고 있다거나 잘 보이지 않는 등의 장애유형별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투표함에 넣는 행위는 법적으로 장애인이 단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역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로의 유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감독의 역할이 필요한데 이는 비밀보장의 문제와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관련하여서 추가적인 논

---

16) B시각장애인 기관에서는 거소투표를 진행하였는데 투표보조시 손을 잡아드릴 것에 대해서 선관위의 지적을 받은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다른 기관에서는 동일한 도움에 대해서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의가 필요하다.

투표보조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진 또 다른 주제는 누가 투표보조를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 현재 법에서는 ‘가족(1인 가능)이나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 투표보조 가능’ 하게 되어있음. 그러나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문제가 있으며 대부분 익숙한 직원들을 지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표에 직원들이 전 과정에 개입하는 상황이 된다. 이것은 물리적인 업무의 증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심리적인 부담감으로도 작용한다. 게다가 선관위에서는 직책이 높은 사람들이 특정 방향을 가지고 선거를 유도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여 특정직원의 보조는 꺼려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심리적 부담감을 경험한 기관에서는 투표보조인에 대한 특정 조건을 없애고 투표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지원해 줄 필요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대부분 고령이시다 보니 오랫동안 생활하시던 원장, 국장님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으셔서지고 그분들을 많이 믿으시니까 대부분이 원장님과 사무국장님을 이야기하셔서지고 ...일단 선관위에서 국장, 원장님은 무조건 빠져라. 제일 위에 사람이 하는거 아닌 것 같다 말씀하시더라구요(B).

장애유형별로 들여다본다면, 먼저 시각장애인의 경우 투표보조 용구에 대한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다. 일회용으로 지급된 시각장애 보조기구(점자로 표시해주었지만 막상 투표용지에는 대부분 기호로만 표시되어 있어 보조기구가 실제로 활용되지 못한 사례가 있다. 시각장애인의 보조도와 기표과정의 전 과정에서 시각 정보로 제시되는 모든 것을 음성이나 점자로 꼼꼼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선거지원이 매 선거마다 제기되는 불편사항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형태<sup>17)</sup>로 일어나고 있는데 시각장애로 인한 선거의

17) 불편사항을 부분 보완하는 것이 매해 완성형으로 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007년 점자투표용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디트 NEWS24, 2007.04.23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html?no=265820>)이 2014년 선거 이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59>).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바코드 지원 역시 2008년 선거, 2014년

어려움을 총체적으로 이해하여 일관된 흐름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에, 손떨림 현상 등으로 인해 기표 시 라인에 표기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서 기표를 하더라도 무효표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점을 들어 실제로 장애인의 기표가 선택한 후보자의 득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에 맞는 기표방식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투표용지의 크기를 키우는 것에 대한 의견이 많았으며 이는 대부분의 장애유형에서 이러한 필요를 언급하였다. 또한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데 여전히 무리가 있는 공간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를 돕는 보조인이 함께 들어가 기표를 도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기표소가 종이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 전동휠체어 사용 시 기표소가 뒤로 넘어갔다는 불편사항도 소개되었다. 이를 포함한 선거장소의 전반적인 편의시설에 대한 보장에 대해 언급되었다.

C : (기표소에) 휠체어 갖고 가기 힘들더라고요.

F : 휠체어가 다니는 통로에 대한 규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기표소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90cm, 편의시설 바뀐것에 따라 바뀐 것 같아요.

B : 휠체어 뿐만 아니라 보조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넓어야 할 것 같아요.

편의시설 확충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전신마비 장애인이 아주 중증인데 단차도 되게 높아요. 경사로 올라가기도 힘들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 기표소가 좀 넓어졌다고 하는데 종이로 되어 있더라고요. 종이로 되어 있었어요...휠체어가 들어가니까 기표대가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전동휠체어는 수동휠체어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반경이 넓은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장애인분들 투표하기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편의시설이나,,,장애인 화장실도 일반 화장실보다 훨씬 넓잖아요.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반경을 주는 것처럼 기표소도 마음대로 이동하고 어쨌든 우리가 선거가 하기 위함이라면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편의시설을 그 장애에 맞게 선관위나 이런 부분에서 제공이 된다면 이용자들도 사실 휠체어가 그냥 휠체어도 있지만 사실 누워서 계신 분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폭을 넓게 사용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면 이렇게 비장애인분들의 시선이나 이런것에 있어서

---

선거 이후에 동일하게 문제제기 되었다.

장애인분들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구조적으로 잘 되어야 할 것 같아요(C).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경우, 현재 투표보조인이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보조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것과 장애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지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와 같은 장애유형에도 신원을 확인하고,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모든 과정에서 상황을 설명해줄 수 있는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대규모로 일반투표를 하는 투표소에는 지적장애와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혹은 선거관리위원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사실 지적장애인이거나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선거할 때 보조인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설명해드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선관위에서도 보면 발달장애인이거나, 지적장애인이거나 언뜻 보면 크게 불편함이 없다고 외형적으로,,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같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쉽게 통과가 되지는 않아요. 왜 같이 들어가려고 하나면 그런 사전 설명들을 꼭 해주면,,,저희가 보통 함께 가면 한 다섯, 여섯 분 정도가 같이 가는데 일단 그 분 정도 할 때에는 직원들이 지원하는 것에서 크게 제재를 가하지는 않지만 처음에 갔을때는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는 것을 일단 제지를 합니다. 발달장애인이거나 지적장애인들은 계속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기할지를 끝까지 지원의 필요성 있기 때문에 사실은 투표에 대한 활동보조인이 필요한데 시설에 있는 분들은 활동보조 서비스에서도 제한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종사자들이 사실 그 모든 것 감당해야죠(F).

## (2) 선거유형

전문가 집단은 일반투표, 거소투표, 사전투표 중 일반투표를 지향해야 한다고 보았다. 장애인이 보편적인 방식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참여를 경험한다는 점,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강화한다는 측면이 일반투표의 중요한 장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저희가 거소투표를 지양하는 것은 어떤 불편함 때문은 아니구요. 저희는 이제 그냥 거소,사전,일반 굳이 나눈다면 보편적으로 헌법에서 국민이 주어지는 일반투표로 인식하는 거예요. 만약 거소를 한다면은 원래 거소가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뭔가 또하나의 스티그마가 될 수도 있겠다,,어쨌보면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생각일 수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기관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선거방식이 일반투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방식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다면 그 방법이 가장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성과 맞겠다 생각해서,,,거소에 대해서 이동이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일반투표로 선택을 한거고 물론 안내를 해드릴때는 두 가지를 다 했지만 일반쪽으로 많이,,,그분들도 나가보자는 것과 맞물려서 그쪽으로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거소는 아예 향후에도 그런 의미성을 갖는 거소투표는 하지 않는 것으로,,(F).

그럼에도 선거과정에서 기표 방식의 변화, 보조 인력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부분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선거권의 실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논의가 있었다.

일반투표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하는 것과 동시에 일반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장애인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선거유형의 지원도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선거방식의 세분화는 장애인이 처한 환경적 상황에 따른 어려움을 보완해주고 장애인 선거권을 더욱 강화시키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일반, 거소, 사전투표 이 세 가지 선거유형과 상관없이 선거과정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그것을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구조라면 세 가지 선거방식 중 어느 것이라도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러나 FGI에 참여한 시설종사자들은 선관위가 거소투표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투표에 대해 지나치게 주목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에 대한 부담감으로 신체가 불편하여 먼 거리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거소투표 방식이 더욱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기피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는 그러한 피로감으로 인해 거소투표를 선택하지 않게 되었을 때, 일반투표에서 불편함을 경험한 장애인들이 이후 선거자세를 포기한 경우도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장애인이 다양한 선거유형의 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기관의 업무적·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해 특정 선거유형을 선택하거나 혹은

반대로 특정 선거유형은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선거법 관련해서 검찰조사까지 받으면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피곤해하셨어요. 왜 이런걸 해야 하나,, 그런 와중에서 그 분들이 결론내리기는 거소투표해서 불편하다, 차라리 일반투표 하는게 더 깔끔하겠다,, 그 전에는 사실은 저희가 중증장애인을 계시고 뇌성마비 1급분들이시거든요. 집에서 하는게 편하긴 하셨는데 그 사건 이후로는 안에서만 하면 의심받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밖에서 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A).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선관위에서는 거소투표를 신청하는 시설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기표소를 설치 하십시오, 라고 계속 제안을 하는거죠. 그런데 시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O).

선관위와 시설이 느끼는 거소투표에 대한 부담감은 실제로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있다. 부정투표에 대한 많은 고소, 고발이 시설 거소투표(부재자투표) 과정에서 제기되었다<sup>18)</sup>. 현재 거소투표는 기표소를 설치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재자 투표 형식으로 진행해도 상관이 없다. 또한 거소투표를 진행하는 시설에 파견되어 있는 선관위 직원 수도 매우 적으며 참관인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선거 환경으로 인해 거소투표 과정에서 선거원칙들이 지켜지기 어려우며 현재 이러한 상황을 통제하는 역할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때문에 거소투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부정선거를 감시할 수 있는 단위와 역할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이것이 의무적으로 거소투표 시행하는 기관에서 이것이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방안에 하나로 제시되는 것 중에 하나로 참관인 제도가 있다. 참관인 제도는 거소투표 시, 시설의 개입 가능성을 감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

---

18) 어떠한 선거유형으로도 선거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장애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시설에서 한 후보자에 몰표가 나온 경우들이 시설 거소투표의 부정사례로 많이 이야기되었다.

안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적절히 작동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소투표 등록은 후보자 공약 발표와 일반투표가 진행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 시설에서 거소투표를 실행하고자 하는 날짜 2-3일 전에만 선관위에 연락을 하면 되도록 되어있다. 때문에 어느 기관이 어느 날짜에 선거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선관위 홈페이지를 매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더러 시설이 선관위에 날짜 공지 후, 거소투표 실행까지의 기간이 짧은 탓에 참관인들이 참관 신청을 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참관인 제도를 원하는 시설 측에서는 거소투표 진행시, 선관위 측에 참관인을 요청했지만 정당에서 선거유세 기간이 한창이라 인력부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정당에서 요청하면 정당에서 와서 보고 그런건 있었는데 선관위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실 정당에 와주십사 해도 안오신다 하더라구요. 한참 바쁜 선거철이니까 저희가 요청해도 못온다고,,,선관위 직원도 못온다고 하시고,,,저희같은 경우는 어쨌든 안에서 하지만 투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공고물 붙여놓고 투표함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마련하고 했었는데,,,그때는 지금은 10인, 그때는 30인 미만 이런건 있었죠,,선관위에서 나와서 해줬으면 사실 문제 없었을텐데,,(A)

O : 근데 만약에 각 당에 정당원이, 그 당에서 파견한 사람이 가면은 참관할 수 있어요. 각 정당에서 그런 의식 차제가 없어요.

P :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시설에서 2-3일전에, 통보를 해요. 투표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참가하고 싶은 정당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시설이 언제 투표하는지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여기서 신청하는걸 딱 보고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기간에 딱 정해놓고 투표를 하거나 일정한 시기에 일정하게 시설이 투표를 하는게 아니라 큰 테두리 안에서 내가 투표하기 2-3일 전에만 연락을 하면 되는거예요 지방 선관위에. 만약에 정당에서 들어가고 싶다고 하면 매일 매번 지방선관위 홈페이지를 계속 점검을 해서 신청이 된걸 보고 선거하는 날 들어가는 이런 방식이 돼서 실제로 참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실제로 저희가 해보려고 했거든요.

참관인 제도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정당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인권단체 등 관심 있는 단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참관인 제도 신청 절차를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시설에서 선관위에 원하는 거소투표 일정을 알릴 때에 참관인을 파견할지에 대해 묻고 정당을 비롯하여 참관을 원하는 사람들의 회합여부를 들은 다음 최종 선거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는 방법이 있다.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사용된다면 선관위는 거소투표시 부정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기관 입장에서는 지나친 부담감과 책임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사전투표는 일반투표장에서 겪는 어려움들로 인해 일반 투표하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sup>19)</sup>, 일반투표를 하고 싶지만 심리적, 육체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힘든 경우, 주소지가 시설과 다른 경우 등에 따라서 장애인들이 사전투표를 선택한다고 한다. 즉 사전투표는 일반투표나 거소투표 모두 참여하기 어려운 다양한 상황들을 보완할 수 있는 긍정적인 형식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이번에 사전투표 제도가 생기고 나서 이용해보니까 이용하신 분들이 만족도가 높더라구요. 일단은 투표 장소가 가까워요 동사무소가. 일반투표 할 때 보다 장소가 가깝고, 투표 날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자기가 도움 받고 싶은 직원한테 도움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사전투표 날 같은 경우는 직원 분들이 도와줄 수 있고, 그래서 사전투표제가 만족도가 높았습니다(A).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이동이 어렵거나 사람이 많은 곳에 가기 힘든 경우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소투표나, 주소지가 시설에 이전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전투표 모두 당사자에게 선택 할 수 있는 선거유형의 선택지로 제공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보다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정신장애인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요양시설에 있는 정신장애인은 투표과정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은 경우에 투표를 하지 않는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입원중인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선거

19) FGI에서는 일부 언급되었지만 본 연구의 종사자 설문조사의 선거권 관련 개선에 관한 개방형 질문에서 비장애인들이나 선관위 직원들의 비인격적인 처우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었다.

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 거주자는 시설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하지만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는 정신의료기관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았다. 때문에 주소지에서의 일반투표 대상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정신장애인이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은 정신의료기관에 인근지역에서 사전투표하거나 병원에서 우편투표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투표방법에 대하여 정신장애인의 병적, 기능적 상태를 이유로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형병원에 근무할 때 보면, 소형병원도 마찬가지이지만 강제입원이 많아요. 함부로 나갈 수 없어요. 나가려면 가족이 와서 외박이든 외출이든 시켜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K).

투표를 하러 나간다면 사전에 저희가 회의를 해야 돼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진이 오케이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서는 암암리에 묻어가죠, 안하는 걸로. 굳이 본인이 하시겠다. 보호자가 와서, 혹은 본인이 와서 요구한다면 회의를 하죠. 근데 병원에서는 기피를 하죠(I).

거소(우편)투표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입원의 종료시점에 관한 불확실성이 투표를 어렵게 한다. 정신의료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입원 정신장애인의 퇴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실제 입원은 입원 정신장애인들이 가족들에게 강력히 요구하여 이루어지거나 의사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퇴원일자를 예측하여 거소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드문 상황이 된다.

### (3) 시설과 선관위의 관계

시설과 선관위는 상호협력의 관계를 맺고 적절하고 충분한 선거지원을 통해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선관위는 시설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의 과정을 불신하고, 시설은 선관위에

이런 시선이 불편하다. 양쪽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불신과 불편의 관계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데에 있어서 양쪽 모두 소극적 태도를 갖게 하는데 있다.

그때 당시에 그런 부정투표 의혹 때문에 선관위에서 ○○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만약 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면 시설 안에다 기표소 설치하십시오,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그것도 이뤄지지 않았고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되니까 시설 내에 기표소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가게 된 거였죠(O).

거소투표 한다고 하면 보수적으로 되세요. 어떤 법 적용이라던가 선관위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거소투표 할거냐고 계속 물어보세요. ‘의견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그래서,,의견 듣고 나서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대놓고 좋아하진 않지만 느낌상으로도,,,거소투표 안한다고 하니 다행이다, 뭐 그런 느낌으로. 선관위에서도 그렇게 접근하시고,,(A).

선관위와 시설의 불신은 특히 거소투표 진행 과정에서 많은 부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들은 선관위가 거소투표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태도인 것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거소투표 과정에서 시설직원들의 투표보조에 대해서 지나치게 엄격하게 반응한다고 보았다. 반면 선관위 측은 거소투표 관련한 시설의 부정선거 사례가 적지 않게 제보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대안으로 기표소 설치를 권고하더라도 거부하는 시설들이 있어 부정선거에 대한 염려를 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본 연구의 FGI에서는 선관위와 시설이 이러한 불신의 관계를 끊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지원에 관련한 많은 부분들이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고 보았다. 기표하는 과정에서 보조를 할 때에 부정선거에 대한 위험성이 크다면 그러한 가능성을 통제하면서 선거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중립적 위치를 갖는 집단이 필요하다. 즉 기표과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배치가 요구됨에도 현재는 그러한 역할이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현재는 시설 종사자들이 선거보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유형에 따라 기표행위 과정에서 다양한 지원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

에 관한 법적인 지원 내용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선관위가 선거보조의 범위를 소극적으로 해석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거소투표 시, 선거과정에서 기관의 개입이 없도록 참관하는 기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럼에도 현재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감시할 수 있는 역할의 규모나 장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관위는 지원과 감시기능의 역할을 최소화하거나 시설에 그 기능을 부여하는 형태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선거지원 해주는)전문인력들이 많다면 굳이 시설직원들이 이렇게 불안감 이런것들을 외부의 따가운 시선 받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외부자원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거소투표를 2명 했었는데 저희는 ○○구에서는 되도록이면 지원이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 해서 거기 있는분들이 기표하는 것들을 도와주셨으면 했는데 그분들, 선관위에서 파견된 분들이 보니까 동사무소 공무원 분들이셨는데 거부감 나타내시더라구요.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대충 느낌은 일단 장애인분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의사표현이 어렵고,,그런 생각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나중에 장애인분들이 원했던 분이 아니라 다른 분 찍게 했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봐 꺼려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실제로 현장가보면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 정당에서 나오신 분들도 그냥 도움 주라고 하세요. 저희는 되도록이면 장애인분들이 직원들 도움 없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싶었는데 막상 투표소 가보면 다 그냥 도와주셔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A).

선관위가 시설에 대한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부정선거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선관위 스스로 그러한 가능성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설의 폐쇄적 구조로 인하여 부정선거나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통제가 일어날 수 있는 닫혀있는 지점들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선관위의 책임하의 관계정립이 필요하다. 시설이 선거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그 내용과 역할을 법적인 의무를 갖고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기존의 상호불신관계를 지속시킬 것이다. 하지만 현재 선관위가 시설에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거나 개인의 선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내용은 지엽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시설 거주 장애인이 선거권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지원 중에 하나는 교육

이다. 선거의 의미, 후보자 공약에 대한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기표를 통해 선택한 후보자의 득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선관위에서 공정한 투표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그것은 전적으로 시설 종사자들의 몫이었다.

사전투표에 대한 사전교육,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 선거후보자들에 대한 전단지 그런것과, 이 모든 것을 활용해서 전달을 하죠. 시설 내에 투표소 막아서 만들어보기도 하고 투표지도 선관위에 달라고 했는데 선관위에서 못준다 해서,,, (E).

(선관위가 시설에게 선거에 대한 방법 등과 같은 안내를 했느냐라는 질문에) 오히려 선관위에서 가장 조심스러워 하는 것은, 기관에서 편향적인 영향을 미칠까봐를 가장 크게 걱정하더라고요. 투표를 높이는 방향에 대한 것보다는 편향적인, 투표에 대한 영향을 걱정하는 느낌이었어요(L).

선관위는 시설 장애인들의 투표 참여의사 여부의 확인을 시설에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투표 의사를 매우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이는 선관위가 시설에 투표 가능한 자를 판단하는 역할을 전가하는 것으로 시설 종사자들이 느끼고 있었으며, 투표의사 해석에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갈등을 경험하는 상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이로 인해 시설 종사자들은 거소투표에 대한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경험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시설들은 거소투표를 포기하고 일반투표로 전환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나타나게 된다.

(선관위가) 이용인이 먼저 저희에게 투표를 하고 싶다 의사를 비추는 경우에만 지원을 하고 개별적으로는 물어보지 말아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욕구는 있는데 의사표현 못하시는 분들 어떻게 할까,,, 의사표현 안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표현 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된다는 거예요.. 선관위 직원하고 한참 논쟁이 오갔었는데 그 분들이 만약 시설이 아니고 가족이 있는 재가 장애인이면 부모님 도움 받아서 투표할 수 있었을텐데 이분들이 시설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되는건 아닌지,,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사실은 굉장히 자괴감이라고 해야 할까,,, 참정권은 나름대로 보장해주고 싶고 참정권 보장 해주는게 당연한 건데 이런 공직선거법 들이대면 움추려 들게 되고 그런 상황들 보면서 안타깝다고 생각을 많이,, (A).

이처럼 선거와 관련한 광범위한 영역에서 시설이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이는 결국 시설의 책임의 영역을 키우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시설은 부정선거의 소지를 불러일으킬만한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애쓰게 되고 이것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 독려를 축소하는 소극적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선관위와 시설의 불편과 불안의 관계는 근본적 해결 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였다. 선관위 직원들이 3년을 주기로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이해도가 깊지 않고, 그때마다 장애인선거권에 대한 민감성을 새롭게 키워나가야 하는 환경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 위원장은 자체적으로 규칙을 낼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없으므로 의원입법으로만 법 규정을 바꿔야 하는 한계가 있다.

#### (4)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선거의 의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선거는 국가권력을 창설하고 국가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민주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뜻한다. 개인은 선거를 통해 유권자, 즉 자신의 의사에 반응하는 대표자를 뽑음으로써 동등한 정치적 주체로서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다. 선거의 이런 보편적 의미가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설 거주 장애인들은 정치적 주체로서의 개인으로 인식되고 있지 못하다.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질서들이 개인의 사회적, 정치적 욕구를 압도하여 개별적 존재가 아닌 ‘시설’(거주 장애인)이라는 집단으로 인지하게 하기 때문이다.

연구자 : 혹시 누가 \*번 찍으라거나 시설 사람들이 이야기한 적 없었나요?

당사자 M : 유도 하죠,,

.....

연구자 : 시설사람들이 왜인지 \*번 찍으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한 거 있었어요?

당사자 L : 우리시설 많이 도와준다,,

시설에서 특정 후보인을 유도하면서 그 이유로 ‘시설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시설이 받는 도움이 곧 개별 장애인이 받는 도움과 동일한 것이라는 사고가 깔려있다. 많은 시설 거주 장애인들은 이러한 유도에 대해 큰 저항감 없이 그 후보자를 선택한다고 한다.

이는 장애인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에 기인한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경우 거주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삶은 다양한 선택지중 하나가 아니라 자원의 부족에 따른 마지막 경로일 가능성이 높다. 그로인해 개인의 필요와 욕구를 주장하기 보다는 시설의 질서에 순응하는 태도를 갖게 되기 쉽다. 때문에 시설 거주 장애인이 선거에 관한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장애유형별 지원이 무엇인지 사려 깊게 설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것이 갖는 의미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당사자 J : (선거하러)이동 할 때도 종사자들이 따라가지 말고 관리사무소라 그러냐?(선관위) 거기서 직접 나와 가지고 같이 이동하면 어떨까요,,

연구자 : 종사자들이 같이 가지 말고,,,선거관리위원회 사람이 직접 와서 같이 이동하면 좋겠다고,,직원 말고,,

당사자 M : 직원 말고, 직원이 가면 안돼.

당사자 J : 직원이 가면 아무래도 몇 번 찍으라고 옆에서 눈치를 주니까,, 나 같은 애는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가지고 \*번 찍으라면 그러면 반대로 찍고 그러는데 다른 친구들은 말을 잘 들어가지고 \*번 찍으라면 다,,,

시설 거주 장애인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기 쉽기 때문에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과 관련하여 장애인이 선거과정 속에서 정치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는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대

부분의 FGI에서 언급되었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지원 방향을 일반투표 형식으로 둘 필요가 있다고 하는 주장 역시 이러한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저희 원 같은 경우는 이용인 분들이 평균 연령이 70세에 육박하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동자체가 많이 어려우신 경우가 많아서요(거소투표 원하시는 경우 많음). 그런데 비교적 연세가 젊으신 분들은 본인들의 자존감 이런것들, 그런 욕구들이 많으세요. 일반투표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B).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시설 밖’은 단순히 물리적 해방감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과 동일한 활동을 할 때에 시설의 규율에 통제되는 개인이 아닌 주체적 인격과 권리를 가지는 개인으로서 자신을 자각하는 긍정적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종사자 FGI에서 시설 거주 장애인이 일반투표를 하기 원하는 경우, 선거를 통하여 자신의 자존감을 확인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때문에 자신이 투표권을 갖고 있는 시민으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밖’ 선거방식에 대한 지원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시민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선거의 보편적 의미를 가장 잘 실현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제 경험상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나도 남들과 똑같이 하고 싶다는 욕구가 가장 많으시죠……‘나는 시설 안에서가 아니고 바깥에서 하고 싶어요’. 라는 게 훨씬 많을거란 생각이 든다. 입원에 싫어서 피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병원에서 해야 해? 하는 것도 있어요(K).

장애인 당사자들이 FGI 집단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정신요양시설이나 복귀시설에 있는 정신장애인 FGI에서는 투표를 통하여 정신장애인에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 그것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특히 주목할 점은 복귀시설 등에서 공청회나 후보자 공약 스터디를 경험한 일부 장애인 당사자들은 선거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

를 갖을 수 있음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 우리가 이런 것을 해주면 너희(후보자)들을 뽑아주겠다. 토론회를 해서 공약을 세워서 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당사자 A).

일단 투표율 높이는 걸 목표로 한다면 표로 인식하게 만드는 작업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사자들이 모여서 여의도 광장에서 솔로대회처럼 그런 걸 열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과 다 같이해서 솔로대첩처럼 그런 걸 해서 여론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과 다 같이해서 정신보건 쪽에서 당사자, 가족을 위해서 정책을 내놔라(당사자 B).

이처럼 선거의 의미를 교육받고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스스로 유권자로 인식하게 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욕구가 사회에 반영되고 변화의 주체로 인식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 시설과 선관위의 태도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를 하나의 상징적 사회참여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이 선거과정은 개인이 후보자 정보에 기반하여 투표할 대상을 선택하고 선택한 바를 기표를 통해 나타내면 이것이 그 후보자의 득표로 현실화 되기 위해 투표함에 넣는 전체 행위를 일컫는다. 이 모든 과정이 온전히 실행됨을 통해 우리는 정치적 기본권을 누리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는 이 전체의 선거과정 중 일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선거가 무엇인지, 후보자와 공약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인력부족, 의무지원사항이 아닌 점을 들어 거의 지원되지 않고 있었다. 시설에는 선거 관련 내용전달 과정에서 객관성 확보 어려움, 업무 부담 등으로 인해 정보가 충분치 않게 제공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선거방식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발생한다. 선거를 하게 되더라도 적절한 선거보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기표를 하지 못하여 후보의 득표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 역시 높은 빈도로 언급되었다.

저희는 지적장애인 분들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선거를 할 때 같이 가기는 하는데 일단 기표할 때 손을 잡아주는 것 못하게 하더라고요. 본인이 찍게 하는데 사실은 거의 경계선에,,, 8-90% 어쩌다 운이 좋은 분은 기표 안에 딱 표기가 되고 나머지 분은 겹치는 라인에 선을 찍기 때문에 8-90%는 사실 무효표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물론 지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참여한다는 결국 모두 무효표가 되니까는 득표 보다는 그냥 이 선거라고 하는, 권리행사라는 것에 대한 참여 정도로 선거를 참여하고 있는데 정말 그 분들이 그렇게 권리차원에서 참여하는 그런 선거가 정말 선거의 의미가 있을 수 있기 위해서는 기표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지금과 같이 라인이 그려져 있고 도장을 찍는 그런것에서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무엇의 장치가 지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F).

이렇듯 선거지원이 선거 과정의 전체적인 하나의 흐름을 갖고 못하고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대안에 그치는 것에 대해서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선관위가 시설 거주 장애인을 유권자로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비판적 시각들이 많았다.

사전투표에 관련한 것도 기관 종사자들이 용을 쓰면서 해야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분들이 의지가 있다고 하면 개별 선거를 하시는 그 분들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게끔 조사를 하시고 해서 계속해서 발전을 해야되는 그 의지가 정말 부족한 것 같더라는 느낌이 있는거죠. 근데 권리행사 측면이 아니라 단순히 참여형태? 뭐 요런걸로 인식을 갖다가 '선거하니까, 뭐 이용자 분들 선거한번', 이런식으로 인식을 해버리면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제반적인 것들의 의견을 계속 개선하더라도 이게 개선이 잘 안되는 것이 아니냐,,(E).

정말 선관위나 후보자나 시설이, 시설에서 살고 있는 분들을 유권자로 인식하느냐,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시설에서는 사실 거리유세 같은게 있으면 주민들과 나가서 현장에서 보던지 좀 필요할 수 있겠고, 계속 보편적 방식들을 시설은 추구해가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요기 한정하지 말고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선거유세,,,뭐,,,활동들을,,,그런 자연스런 기회들을 자주 넓혀주고 해야 하는건데,,,사회적 인식의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니까(O).

무효표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표하기와 투표함에 넣기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없는 것은 선관위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가 권리행사보다는 사회활동의 상징적 참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각 시설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권에 대한 민감

성 정도의 차이가 커서 보편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일부 시설들 역시 시설 거주 장애인의 보호자를 자처하며 선거권을 대리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례들도 보고되었다.

장애인이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선거 장소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이동지원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기표과정에서 적절한 지원이 없으면 유효득표가 되기 어렵다는 점이 장애인의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지점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시설에서 거주하는 시설장애인의 경우 자기결정권의 박탈을 일상적으로 경험한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주체적 의지를 갖기 어렵게 하고 집단의 질서에 순응하기 쉽게 한다는 점 역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때문에 시설 거주 장애인의 후보자에 대한 선택이 득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보취득에서부터 투표함에 넣기까지의 조밀한 선거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 2) 장애인 면접조사

장애인면접조사는 4개의 집단으로 구분되어 각 장애유형별로 나타날 수 있는 선거권 행사의 장애요인을 탐색한다. 4개의 집단은 첫째, 투표율이 가장 낮은 정신장애인 둘째, 탈시설한 장애인 등이다.

이 두개의 집단을 인터뷰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신장애인은 선거참여율이 모든 장애유형 중 가장 낮다. 그들이 처한 어떠한 환경이 선거를 어렵게 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탈시설 장애인의 경우는 시설안과 밖의 온도 차이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비교대상을 가지고 있어 시설의 문제점을 보다 잘 인식할 수 있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장애유형에 상관없이 시설거주의 경험은 자기결정권 상실의 경험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시설에 거주하는 동안은 장애인들은 일상에서의 시설 통제를 내재화하고 순응하는 삶을 살아왔다. 즉 시설은 하나의 견고한 세계로서 존재하고 있다. 때문에 선거는 자신의 삶의 영역의 문제가 아닌 시설 ‘밖’, 즉

내 삶의 '밖'의 영역으로 인식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이 그 경계를 적극적으로 낮추지 않는 이상, 시설 거주 장애인 스스로 '밖'의 정보를 취득하기는 어려운 형태인 것이다. 장애유형별로 이러한 경계에 대한 자각과 인식에 경중이 나타났으며, 또한 장애 특성별로 선거참여를 위한 지원의 영역에도 다소 차이가 있었다.

다음은 장애유형별로 시설에서의 선거경험, 필요하다고 보는 선거지원 내용에 대해 정리한 내용이다.

### **(1) 정신장애인**

먼저 정치에의 무관심이나 냉소적 태도는 정신장애인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중요 이유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은 비장애인들의 투표 불참과 다를 바 없었다. 자신의 참여가 사회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혹은 나 한사람의 참여가 전체의 흐름에 어떤 변화도 주지 못한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정치가 정신장애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험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자신들의 삶과 관련되는 선거공약도 없었으며 자신들을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만나려고 하는 후보자도 보지 못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정신장애인에게 제공되지 않는 활동보조제도, 정신장애인들의 자립생활센터에의 공적 지원에 대하여 정치적 견해를 표시하는 후보자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또한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을 못받았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었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선거경험은 입원상태와 지역에 거주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로 입원상태에 있을 때의 선거경험이다. 정신의료기관에서의 투표와 관련하여, 정신장애로 입원경험이 있는 9명의 면접대상자 모두 입원상황에서는 투표를 한 경험이 없었다. 정신의료기관에서는 투표할 수 있는 여건

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병원에서 투표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투표 자체 혹은 부재자 투표에 대한 안내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다른 입원자들에게도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병원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것을 본 적이 없었다. 투표에 대하여 병원에 어떤 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입원경험 자체가 자기결정권 상실의 경험이었고 그 상황은 선거에 관한 관심을 가지기가 어려웠다고 하고 있다.

일단은 투표를 할 수 있는 시설같은 것도 마련되지 않았던 것 같고 병원에서 자기결정권이 박탈당한 경험은 되게 많잖아요. 투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았던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A).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부재자투표로 될 수 있으려면 병원에 입원한 동안 각자에 해당하는 안내문, 투표에 관련된 안내문이 올 텐데 그게 병원으로 오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병원으로 부재자 투표가 연결이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어요(H)

입원중인 정신장애인들의 투표참여를 통한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되었다. 투표에 관한 안내와 투표시설 설치를 법적 의무사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주장되었다. 입원자들간의 투표지역 상이성에서 오는 정보전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내에서 자신의 선거구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인터넷 검색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전투표의 기회를 제공하여 병원에서 가까운 투표소에 외출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후보자들이 정신장애인과 만날 기회를 제공하거나 선거에 관심을 끌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병원프로그램의 차원에서 투표에 관한 교육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도 하였다.

일단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투표일이 언제고, 후보자에 대한 것 등을 입원한 환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교육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밖에서 보지 않고 집에서 보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이제 뭐 집으로 오는 그런 후보자들의 그런 안내문을 보잖아요? 그런것도 병원에 준비를 해서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환자들이 자기네 지역구, 자기가 사는 지역구에 나온 후보들에 대해 검색을 할 수 있는 상태 정도는 만들어줘야 할 것 같아요(H).

두 번째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당시의 선거경험이다.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간에 선거에 참여한 경험이 많았다. FGI 참여자 9명 중 7명이 이번 2014년 지방선거에 참여하였다. 주위 정신장애인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언급되었다. 정치에 냉소적인 태도를 갖고 있거나 휴일인 선거 날을 이용하여 쉬기 위해서 투표 불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투표를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태, 혹은 투표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정신장애인의 경우도 있었다. 특히 정신장애의 증상의 일종인 폐쇄공포나 대인기피로 인하여 사람이 많은 투표장소에 가는 것이 힘든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 정신장애인에게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같이 익숙한 장소를 선거장소로 선정하여 투표를 진행하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비장애인들도 선거에 관심이 없으면 투표를 안하잖아요. 정신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럴 수 있거든요. 관심을 끌게끔, 선거에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무슨, 뭐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한다던지, 아니면 좀 많이 알려주는. 선거날이 언제고,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투표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좀 자주 알려주는, 반복해서 알려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비장애인들도 텔레비전이나 매체 같은 걸 많이 봐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정신장애인들은 더 할 것 같아요(I).

또한 정신장애인이 우울이나 무력감의 증상들로 인하여 집 안에 홀로 장시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정보를 습득력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선거에 대한 후보자나 공약 뿐만 아니라 선거날이 언제인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선거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필요가 반영될 수 있

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2) 탈시설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의 경우, 시설 안과 밖의 경계가 명확해지면 질수록 자기결정권의 영역이 시설에 의해 침범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하였다. 탈시설을 한 이후로, 자기결정의 넓은 폭을 경험함으로써 그에 대해 이해가 높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탈시설 장애인이 시설에서 거주할 당시 경험한 선거는 거소투표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선거당일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를 하는 일반적인 투표방식으로 선거에 참여한 경우는, 비교적 거동이 원활한 장애를 가진 거주인에 한정되었다고 한다.

거소투표 시, 기표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방안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재자 투표형태였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았다. 특히 방안에서 선거를 하는 경우,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방 대표(방장)가 일괄적으로 투표함으로써 자신의 표가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되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한다. 거소투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부정선거에 대해 감시할 수 있는 단위와 역할을 법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연구자 : 혹시 누가 \*번 찍으라거나 시설 사람들이 이야기한 적 없었나요?

M : 유도 하죠,,

L : 하진 않았는데 분위기가 \*번 분위기에요.

연구자 : \*번 분위기인건 어떻게 알았어요?

M : 딱 보면 알지,,

무엇보다 탈시설 장애인이 선거경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은 기관에서 특정 후보인에 대하여 투표를 유도하는 분위기를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정 후보가 당선될 경우, 시설에 도움이 된다는 뉘앙스를

공공연히 홀림으로써 종사자들에게 심리적·정서적 전이가 쉬운 시설 거주 장애인들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다.

M : 일단은 공고물 일찍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투표할 때 시설 측 에서 하지 말고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외부에서,,,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연구자: 시설 안에서 하는것보다 나가서 다른 사람들 투표하는데서 같이,,하는게 제일 좋고,,

M : 그게 제일 좋고요.

.....

연구자 : 요새는 투표소를 설치해서 안에서,,안에서 설치해서 해요.

M : 그것도 직원들이 해주는거 아닌가요?

연구자 : 직원들이 그거(보조) 하니까 똑같아요.

L : (직원들이 하면)분위기에 휩쓸려.

탈시설 장애인들은 시설과 장애인들간의 이러한 역동이 일어나는 것에는 자신들이 ‘밖’의 소식과 단절된 채로, ‘아무것도 모른채’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탈시설 장애인들은 시설에 교육이 필수적으로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시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심리적 역동들까지 일일이 선관위가 통제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사고가 환기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탈시설 장애인의 경우, 선거관련 지원에 대해 핵심은 선거의 객관성 확보였다. 즉 선거과정에서 종사자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선거 관련한 교육이 기관이 아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단위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거소투표 보다는 일반투표를 지향해야 한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일반투표를 지원하는 것도 시설관계가가 아니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시설 ‘밖’에서 장애인들의 선거권이 지켜질 수 있는 조직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덧붙여 보완되어야 할 선거지원의 내용으로는 장애인들이 선거를 자신의 삶의 영역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전반의 분위기가 논의되었다. 현재 시설 거주 장애인들은 공보물을 선거 당일 날 받아본다거나, 시설에 선거벽보

가 부착되어 있지 않고 선거유세를 볼 수 없는 등 선거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적이다. 이는 종사자, 정신장애인 면접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 사항이었다.

### 3. 시사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와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장애인거주시설(정신요양시설, 정신장애노숙인시설, 주거제공시설) 종사자 그리고 장애인면접조사의 시사점을 선거/후보자에 대한 정보취득, 기표행위와 투표함에 넣기, 선거유형 그리고 시설과 선관위의 관계로 나누어 정리해본다.

먼저 ‘선거/후보자선거에 대한 정보취득’에 관한 조사에서는 모든 장애유형에서 불충분하게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후보자와 공약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선거일정, 선거방법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드러났다.

첫째,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공고물의 무게와 매수의 제한이 비시각장애인 공고물과 동일하게 규정된 것은 선거관련 정보량의 차이를 가져다주었다. 즉 점자로 인쇄될 경우, 비시각장애인의 공고물과 동일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 더 많은 매수가 필요하고 공고물의 무게 역시 일반용지에 비해 점자용 용지가 무겁기 때문에 동일한 제한을 두게 되면 점자 공고물은 내용이 축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 지적장애인의 경우 공고물의 용어나 표현들이 어려워 시설직원들이 지적장애인들에게 후보자의 공약을 전달해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지적장애인의 경우 반복학습을 통해 행동을 익히기 때문에 실제현장과 유사한 방식의 투표과정을 여러 차례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지적 장애인의 선거지원을 위한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장애의 특성이나 정도에 부합하는 지원제도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셋째,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정신장애인의 경우 선거권의 행사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에서 발송하는 거소투표소 설치신고와 거소투표를 대상자들에게 안내할 것을 권유하는 공문은 행정라인에서 폐기되고 있었지만 선관위의 감독이 없고 위반에 대하여도 제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정신장애인 면접조사에서도 입원기간 중 투표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기관으로부터 습득한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149조 제1항은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 장애인 거주시설 등 기관·시설의 장은 그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 후 3일까지 관할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3항은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일시·장소를 정하여 해당 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벌칙규정인 제237조 제1항의 3은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즉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태만히 한 것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이 불비한 것이다.

넷째, 정신의료기관 입원중인 정신장애인을 위해서는 주소 미이전으로 인한 투표지역 상이성에서 오는 정보전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 내에서 자신의 선거구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인터넷 검색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표행위와 투표함에 넣기와 관련된 시사점을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투표와 관련하여 투표보조의 ‘보조행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관하여 혼란이 존재하고 있었다. 공직선거법이 투표보조자가 도와줄 수 있는 행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민감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기표행위에 대한 동일한 보조내용도 선거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장애 특성에 따라 기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들을 상이하기 때문에 보조의 내용을 확장하

고 구체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누가 투표보조를 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 6항은 신체 또는 시각장애인에 한정하여 가족(1인 가능)이나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 투표를 보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규정과 관련하여 본 연구분석 결과는 신체 또는 시각장애인에 한정된 투표보조 허용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도 적절한 보조가 없는 경우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익숙한 직원들을 지목하는 경우가 많은 것에 대하여 선관위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나 적절한 대안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장애인의 투표보조인에 대한 선거관리인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과 같은 공식적 보조인제도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셋째 시각장애인의 경우 투표보조 용구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 일회용으로 지급된 시각장애 보조기구(점자로 표시해주었지만 막상 투표용지는 대부분 기호로만 표시되어 있다. 시각장애인의 보조도구와 기표과정(표지)이 하나의 일관된 흐름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장애의 특성에 부합하는 기표용지의 개발이 필요하다. 손떨림 현상 등으로 인해 표시라인에 정확히 표기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 기표를 하더라도 무효표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

다섯째, 기표박스의 크기가 더 커질 필요가 있다. 현재의 기표소는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데 여전히 무리가 있는 공간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를 돕는 보조인이 함께 들어가 기표를 도울 경우 매우 협소하다.

여섯째,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경우, 현재 투표보조인이 지원 안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다. 신원을 확인하고,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모든 과정에서 상황을 설명해줄 수 있는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 특히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대규모로 일반투표를 하는 투표소에는 지적장애와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자원봉사 선거관리위원의 배치가 필요하다.

선거유형과 관련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투표를 선거지원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둘 필요가 있다. 거소투표는 방식과 절차가 일정부분 강화되더라도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선관위와 시설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 무엇보다 거소투표의 문제점을 넘어서,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당사자들이 일반투표를 가장 원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일반투표는 장애인들이 스스로를 주권자로서 인식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투표방식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거소투표의 경우 신체가 불편하여 먼 거리 이동이 어렵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기피증이 있는 장애인에게는 매우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선관위의 부정투표에 대한 민감한 주목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시설이나 기관은 거소투표를 기피하고 있다. 본 연구의 FGI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안으로 중요하게 다뤄진 것은 참관인 제도였다. 참관인 제도는 거소투표 시, 시설의 개입 가능성을 감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참관인 신청의 번거로움, 인력 부족등의 이유로 적절히 작동되고 있지 못하다. 참관인 제도를 비롯하여 거소투표의 적정 관리에 관한 모델 개발이나 구체적인 지침의 마련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일반투표에서 불편함을 경험한 장애인들이 이후 선거자체를 포기한 경우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선거권 보장을 위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선거유형과 관련하여 중요한 과제는 선거권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상황의 정신장애인문제이다.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는 정신의료기관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에 관한 공보도 정신의료기관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실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정신장애인이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은 정신의료기관에 인근지역에서 사전투표하거나 거소에서 우편투표를 하는 것이다. 기존의 거소투표방식으로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신의료기관의 선거관련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함께 별칙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장기입원이 만연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주민등록법 제6조 제1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위반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특정 장애인에 대한 선거법 방임이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선관위와 시설의 관계는 불신과 불편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관위는 상대적으로 감독이 느슨한 격리된 장소에서 시설종사자의 보조 하에 이루어지는 거소투표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각은 시설에 대한 통제로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시설은 선관위의 통제를 과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책임을 시설에 전가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상반된 입장은 선관위와 시설간의 상호불신으로 드러나고 있다. 즉 선관위는 투표정보 제공과 투표보조에 대하여 시설에 불신을 가지고 있는 반면, 시설은 투표준비와 진행에서 선관위의 방임과 무책임에 대하여 대안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설에서의 거소투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지침 마련과 이에 대한 선관위의 관리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시설에 과도하게 부가되어 있는 책임에 관한 문제이다. 현행 제도는 선거관리 책임을 선관위가 시설에 떠넘기고 선거관리의 역할 수행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럴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시설에서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선관위가 시설에 대한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부정선거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스스로 그러한 가능성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선관위는 투표보조에 대한 내용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등의 지엽적인 수준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있어서 선거의 의미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시설 거주 장애인이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적 권리가 시설이라는 환경과 상황 안에서 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가에 대한 배경, '시설

밖'에서의 보편적인 선거 절차가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주는 의미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주체되는 삶의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질서들이 개인의 사회적, 정치적 욕구를 압도하여 개별적 존재가 아닌 '시설'(거주장애인)이라는 집단으로 인지하게 하기 때문이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시설에서 했던 선거경험 중에 부정적인 기억으로 남아있는 장면 중에 하나는 특정 후보인에 대하여 투표를 유도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다. 특정 후보인을 뽑으면 '시설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시설이 받는 도움이 곧 개별 장애인이 받는 도움과 동일한 것이라는 사고가 깔려있다. 많은 시설 거주 장애인들은 이러한 유도에 대해 큰 저항감 없이 그 후보자를 선택한다고 한다. 이는 장애인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에 기인한다. 시설거주 장애인은 장기적으로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들의 삶에서 시설 이외에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해 개인의 필요와 욕구를 주장하기 보다는 시설의 질서에 순응하는 태도를 갖게 되기 쉽다. 때문에 시설 거주 장애인이 선거에 관한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장애유형별 지원이 무엇인지 사려 깊게 설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것이 갖는 의미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보편적인 선거방식인 일반투표를 지향하는 것은 시설 거주 장애인 스스로 시민으로서 자각하게 한다.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시설 밖'은 단순히 물리적 해방감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과 동일한 활동을 할 때에 집단이 아닌 주체를 갖는 개인으로서의 자신을 자각할 수 있게 한다. 자신이 투표권을 갖고 있는 시민으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밖' 선거방식에 대한 지원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시민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선거의 보편적 의미를 가장 잘 실현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시설 거주 장애인이 스스로 정치적 주체로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도

록 하는 또다른 방법은 교육을 비롯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장애인의 경우, 선거의 의미를 교육받고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파악하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스스로 유권자로 인식하게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지역일 수 있으나 선관위의 태도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를 하나의 상징적 사회참여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시설 장애인의 투표참여 의사를 선관위가 매우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유효한 투표를 위한 시설거주 장애인의 투표교육과 같은 지원에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선거 장소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이동지원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기표과정에서 적절한 지원이 없으면 유효득표가 되기 어렵다는 점이 장애인의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지점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시설에서 거주하는 시설장애인의 경우 자기결정권의 박탈을 일상적으로 경험한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주체적 의지를 갖기 어렵게 하고 집단의 질서에 순응하기 쉽게 한다는 점 역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때문에 시설 거주 장애인의 후보자에 대한 선택이 득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보취득에서부터 투표함에 넣기까지의 조밀한 선거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 VI. 결론 및 정책제언

### 1. 조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병원·정신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선거공보, 선거관련 방송을 포함한 각종 정보가 제대로 도달하고 있는지, 일반투표 및 거소투표로 선거권을 행할 경우 합리적이고 공정한 투표관리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선거권 행사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발견되는 절차적·실체적 문제에 대한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애인 선거권 보장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장애인 선거권 보장 관련 국내 정책 및 법제와 선거권보장 현황을 검토하였다. 또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장애인 선거권 보장 관련 해외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들에서 제안하고 있는 장애인 선거권 보장을 위한 방안들을 정리해 보면 <표 6-1>과 같다.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장애유형별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선거과정별로 개선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었으며,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권을 다룬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 비중을 두고 있는 정신장애인 선거권 보장에 관한 실증 연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안들은 일반투표를 하는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 다만 시설 거주 장애인의 거소투표에 대해서는 이를 지양(발달, 지체) 혹은 장려(시각)해야 한다는 연구자 간의 입장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표 6-1>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장애인 선거권 보장방안

| 구분      | 발달                                                                                                                                                                                                                                                                                                                                                                                                                                                                                                                                                                                                                                                                                                        | 시각                                                                                                                        | 청각·언어                                                                                                              | 지체                                                                                                                             |
|---------|-----------------------------------------------------------------------------------------------------------------------------------------------------------------------------------------------------------------------------------------------------------------------------------------------------------------------------------------------------------------------------------------------------------------------------------------------------------------------------------------------------------------------------------------------------------------------------------------------------------------------------------------------------------------------------------------------------------|---------------------------------------------------------------------------------------------------------------------------|--------------------------------------------------------------------------------------------------------------------|--------------------------------------------------------------------------------------------------------------------------------|
| 공통      | <p>&lt;장애유형별 공통&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투표참여방법(거소투표, 사전투표) 적극 홍보</li> <li>-투표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 내 공공시설(주민센터, 장애인복지관) 활용</li> <li>-투표소 안내를 점자 또는 문자, 전화를 통한 음성안내와 함께 투표당일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과 연계</li> <li>-다양한 물리적 환경지원</li> <li>-전자투표기 도입</li> <li>-투표보조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li> <li>-후보자 홈페이지 웹접근성 보장 규정 마련</li> <li>-투표소 접근성 보장 법조문의 사전투표 적용</li> <li>-선거관계자들의 관련 직무교육과 장애인식개선 교육</li> <li>-선거권보장에 관한 임의규정들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운동</li> </ul> <p>&lt;거주시설 공통&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표소 투표의 원칙 고수(부재자 투표는 당일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에 한정)</li> <li>-거소투표 신청 절차 엄격화(선관위 심사를 통한 거소투표 요건 강화)</li> <li>-거소투표에 대해 기표소 설치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선관위의 관리감독 규정 신설</li> </ul> |                                                                                                                           |                                                                                                                    |                                                                                                                                |
| 선거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쉬운읽기형 선거공보물 제작·배포</li> <li>-읽기 쉬운 방송광고 방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보물 원고 전체를 점자공보물로 제작</li> <li>-선거공보 활자크기 확대</li> <li>-선거공보 접근형식에 대한 안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거방송 시 자막과 수화방송 동시제공</li> <li>-수어용 선거공보 마련 및 제작비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부담</li> </ul> |                                                                                                                                |
| 투표소 접근성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체 운용방식을 그대로 존중하는 방식으로 실현되도록 보조</li> <li>-최대한 많은 투표소에 전신마비장애인기준 다양한 보조기구 비치</li> </ul> |

| 구분                  | 발달                                                                               | 시각                         | 청각·언어 | 지체                                                     |
|---------------------|----------------------------------------------------------------------------------|----------------------------|-------|--------------------------------------------------------|
| 투표편의 제공<br>(투표방법 등) | -기표소 입장 및 기표행위 지원을 위한 조력자 배치<br>-투표용지에 상징 및 후보자 사진 병기                            | -기표도장의 크기를 줄이거나 천공식 기표기 도입 |       | -장애인검용 기표대 설치<br>-다양한 기표보조기구 도입 및 지원 절차 규정 마련          |
| 시설·기관<br>거소투표       | -거소투표 절차의 투명성을 위한 투표 절차 전체촬영<br>-부재자투표신고에 충분한 시간할애                               | -거소투표 장려를 위한 대책 마련         |       | -장애인의 정치적 의사 왜곡소지 있는 거소투표 원칙적 지양<br>-비밀선거를 위한 투표관리의 강화 |
| 법 개정·제도 등           | -「공직선거법」 등의 금지산선고에 따른 투표권 박탈조항 삭제<br>-당사자의 선거종류 및 투표절차 등에 대한 교육<br>-당사자의 모의투표 체험 |                            |       | -신형 장애인 기표대에 대한 당사자의 시연                                |

해외사례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대의제 민주정치를 구현해온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국가들이 장애인 선거권 보장을 위해 어떠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나라 장애인 선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미국 사례에서는 연방법인 미국선거지원법(HAVA)과 노인·장애인 투표편의법을 살펴보고 장기 치료시설 거주자의 투표에 관한 법률로 5개주(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뉴욕주, 플로리다주, 매사추세츠주)의 관련 법률들을 검토하였다. 영국 사례에서는 장애인의 투표권에 관한 법률로 선거관리법과 정신능력법을, 투표 방식에 관한 법률로 국민대표법(2000, 1983)을, 우편투표 및 대리투표의 신청 및 요건과 관련하여 국민대표법을, 그리고 투표 보조에 관한 법률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민대표법의 조

문들을 검토하였다. 호주의 사례에서는 호주 연방 선거법을 고찰하였고 병원과 보호 시설에서의 이동 투표제도를 살펴보았다.

한편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① 정신요양시설이나 정신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의 상당수가 투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있지만 투표경험이 없으므로 정신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선거관련 서비스 제공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점, ②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에 관한 충분한 수준의 정보제공, 투표장까지의 이동지원 등 투표와 관련된 전반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③ 시설 거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통합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비장애인과 함께 하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며, 투표행위 또한 예외일 수 없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소투표를 권유받은 경험이 높기 때문에 사전투표 또는 일반투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점, ④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권이 투표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상당히 제약되고 있으므로 투표방법 결정의 자기결정권 보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⑤ 시설 거주 장애인들 중 우편 선거공보물을 통해 선거에 관련된 정보를 얻었다는 장애인의 비율이 매우 낮고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로 제공되기 때문에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수준과 방법으로 선거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 ⑥ 신분확인과 투표용지 수령, 기표 등 일련의 투표과정을 가급적 장애인이 혼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점, ⑦ 기소표에 동행하는 사람의 자격과 범위, 동행하는 사람 수, 기표를 도와주거나 대신할 필요가 있는 장애인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여 혼자 기표를 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분명한 지원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 ⑧ 거소투표의 경우 본인 확인 절차가 사전투표나 일반투표에 비해 허술하여 대리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소투표에 관한 명확한 절차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⑨ 선거에 시설 종사자의 주관적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 선거권에 대한 직무교육을 통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면접조사를 통해서도 다양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선거/후보자선거에 대한 정보취득'에 관해서는 ① 시각장애인의 경우 공고물의 무게와 매수의 제한이 비장애인 공고물과 동일하게 규정된 것은 선거관련 정보량의 차이를 가져다주었다는 점, ② 지적장애인의 경우 공고물의 용어나 표현들이 어려워 시설직원들이 지적장애인들에게 후보자의 공약을 전달해주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③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정신장애인의 경우 선거권의 행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 ④ 정신의료기관 입원중인 정신장애인을 위해서는 주소 미이전으로 인한 투표지역 상이성에서 오는 정보전달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 기표행위와 투표함에 넣기와 관련해서는 ① 장애인의 투표와 관련하여 투표보조의 '보조행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관하여 혼란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 ②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익숙한 직원들을 지목하는 경우가 많아 누가 투표보조를 할 것이냐의 문제가 발견되었다는 점, ③ 시각장애인의 경우 보조기구는 점자로 표시해주었지만 막상 투표용지는 대부분 기호로만 표시되어 있어 투표보조 용구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 ④ 손떨림 현상 등으로 인해 표시라인에 정확히 표기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 장애의 특성에 부합하는 기표용지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 ⑤ 전동휠체어, 보조인 등을 고려하여 기표박스의 크기가 더 커질 필요가 있다는 점, ⑥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도 투표보조인이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선거유형과 관련해서는 ① 거소투표의 부정선거의 가능성에 따라 일반투표를 선거지원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둘 필요가 있다는 점, ② 거소투표의 경우 참관인 제도를 비롯하여 적정 관리에 관한 모델 개발이나 구체적인 지침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 ③ 선거권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상황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선거법 방임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넷째, 선관위와 시설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① 선관위는 상대적으로 감독이 느슨한 격리된 장소에서 투표보조인의 개입 하에 이루어지는 거소투표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을 우려한 민감함과 투표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가지게

된 시설 종사자들의 경험 사이에는 상호불신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 ② 현행 제도는 선거관리 책임에 대해 시설에 과도하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 본 연구의 정책제언에서는 선행연구와 국내외 법제 및 정책을 포함한 문헌조사, 장애인 및 시설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 각 주체별 집단면접조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먼저 시설 거주 장애인이 자각하는 선거권의 의미를 점검한 이후, 이들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의 개선방향과 보다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의 의미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수행된 본 연구는 그들에게서 선거의 의미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연구분석 결과를 토대로 세 가지 방향에서 정리해보았다. 먼저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면서 경험한 선거권의 의미를 간략히 제시하였다. 그리고 향후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논의에서 염두에 두어야한 그들의 경험이 무엇인지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설 거주 장애인이 자각하는 선거권의 의미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선거권 행사 특히 보편적인 선거방식인 일반투표 경험은 시설거주 장애인 스스로 시민으로서의 자각을 형성하게 하고, 함께 투표하는 일반시민들에게도 장애인들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재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즉 장애인들이 여러 시민들과 함께 투표소에 와 다양한 기표방식의 지원을 받아 투표를 하는 행위는, 장애인 당사자가 정치적 주체성을 자각하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는 다른 시민들에게도 정치적, 시민적 주체로서의 장애인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계기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둘째,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선거권 보장방안 논의는 그들이 삶의 경험에

기초하여야 한다.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주체되는 삶의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질서들이 개인의 사회적, 정치적 욕구를 압도하여 개별적 존재가 아닌 ‘시설’(거주장애인)이라는 집단으로 인지하게 하기 때문이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시설에서 했던 선거경험의 부정적인 기억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유도하는 분위기였다. 시설이 특정 후보인을 뽑으면 ‘시설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시설과 시설 거주 장애인을 동일시 하는 사고를 은연중에 주입하고 있었다. 많은 시설 거주 장애인들은 이러한 유도에 대해 큰 저항감 없이 그 후보자를 선택한다고 한다. 개별 시민으로서의 선거권의 주체는 자각되지 못했다. 이는 장애인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에 기인한다. 오랜 시설생활은 개인의 필요와 욕구를 주장하기 보다는 시설의 질서에 순응하는 태도를 갖게 되기 쉽다. 때문에 시설 거주 장애인이 선거에 관한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장애유형별 지원이 무엇인지 사려 깊게 설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것이 갖는 의미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셋째, 시설 거주 장애인이 스스로 정치적 주체로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방법은 관련교육과 충분하고 적절한 정보의 제공 그리고 정당한 편의의 제공이다.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장애인의 경우, 선거의 의미를 교육받고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파악하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스스로 유권자로 인식하게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 시설과 선관위의 태도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를 하나의 상징적 사회참여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지원이 선거 과정의 전체적인 하나의 흐름을 갖고 못하고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대안에 그치는 것에 대해서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선관위가 시설 거주 장애인을 유권자로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비판적 시각들이 본 연구에서 드러났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권의 의미를 정리하면 원칙적으로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일반투표를 통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반투표를 지향해가기 위해서는 선거 장소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이동지원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기표과정에서 적절한 지원이 없으면 유효득표가 되기 어렵다는 점이 장애인의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지점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시설에서 거주하는 시설장애인의 경우 자기결정권의 박탈을 일상적으로 경험한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주체적 의지를 갖기 어렵게 하고 집단의 질서에 순응하기 쉽게 한다는 점 역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이러한 삶의 맥락을 고려한 선거권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 **3.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의 개선방향**

본 연구의 문헌조사, 시설 거주 장애인 및 시설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 장애인 및 전문가 그리고 시설종사자에 대한 집단면접조사 등을 통하여 도출된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 **1) 모든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에 관계없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지며(제24조), 선거절차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제11조 제1항). 그리고 헌법상 권리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참정권 행사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 (a)에서는 장애인의 정치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장애인이 투표하고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포함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자유롭게 선택된 대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정치적 및 공적 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하도록

~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들에게 선거권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2) 모든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함에 있어 장애특성에 부합하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는 선거정보의 취득, 사전 투표체험, 기표행위 및 투표함에 투표용지 투입 등과 같은 선거권 행사의 전 과정에서 장애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편의제공이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주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선거홍보물의 무게 제한으로 정보량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청각장애인은 수화통역에 관한 임의규정이 선거와 후보자에 관한 정보접근에 장벽을 만들었다. 지적장애인에게는 투표에 관한 사전 체험이나 교육에 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는 기표소의 크기가 협소한 것이었다. 이외에도 장애특성에 따른 선거참여의 장애요인들은 다양하게 도출되었다. 이는 장애특성에 따른 정당한 편의가 좀 더 다양하게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을 있다는 것이다.

## **3)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소투표를 지양하고 일반투표를 통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정상화라는 장애인복지의 기초이념은 단지 선거권을 행사한다는 자체뿐만 아니라 행사하는 방법에서도 일반성을 추구한다. 즉 장애인들도 분리된 장소에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투표가 행해지는 장소에서 투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념이 단지 지향점이 아니라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뚜렷한 욕구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용자 설문조사에서 거소투표의 비율이 33.7%로 나타났으나 거소투표자의 46.9%가 다음 선거에서는 시설 밖에서 투표하고 싶다고 응답하고 있다. 시설종사자의 FGI에서도 시설 자체가 거소투표를 지양하고 일반투표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제 일반투표에 참여하는 시설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설비와 공정한 투표 진행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 **4) 장애인들이 가능하면 기표와 투표함에 넣는 행위를 보조없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조장치를 지원하도록 한다.**

장애인들의 일반투표 참여는 투표보조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화시키게 된다. 그러나 투표보조행위의 기준 마련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할 일은 보조행위없이 기표와 투표함 투입이 가능한 보조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장애인들이 그들이 가진 어려움에 불구하고 보조행위없이 투표할 수 있는 보조장치가 마련된다면 보조행위에 관한 논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보조장치를 통해 선거과정에서 투표보조행위를 최소화한다면 보조행위에 관한 논란도 최소화될 것이다.

#### **5)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거소투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거소투표에 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격리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투표는 투표보조행위에 관한 기준 미비로 부정투표 가능성에 관한 시선이 존재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거소투표에 관한 적절한 책임과 역할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다. 이러한 규정의 부재는 선거관리의 책임을 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오히려 시설과 시설 종사자들에게 선거에 관한 책임을 전가시키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소투표의 관리에 관한 책임을 명확하게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지게 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을 필요가 있다.

## 6)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정신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

본 연구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정신장애인은 선거권 보장의 사각지대임을 밝혀주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과는 달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장애인은 주민등록지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점이 사각지대 형성의 토대가 된다. 이들은 거동이 가능하더라도 정신의료기관 소재지와 투표지역이 상이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거나 그것이 어려운 경우 거소투표가 유일한 방법이 된다.

그러나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선거와 거소투표에 관한 안내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으며, 정신의료기관의 선거와 거소투표에 관한 안내 불이행에 대한 벌칙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정신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 4. 정책과제

### 1) 선거관련 정보제공 확대방안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은 단순히 투표의 4대 원칙 보장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투표절차가 비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된다 하더라도, 장애인은 투표와 관련된 적절한 수준의 정보를 얻기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원하는 후보자를 선택함에 있어 처음부터 상당히 제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준과 방법의 선거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선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시설이나 병원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은 일상적인 생활과 평범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한 정보 습득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선거관련 정보는 우편 공보물, TV나 라디오를 통한 토론회와 광고, 인터넷, 벽보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추가적인 도움

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충분한 방법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장애유형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선거관련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먼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선거공보물 전체를 점자로 제공하거나 음성선거정보(CD, 보이스아이 등)를 제공하고, 비장애인용 선거공보물보다 활자를 크게 확대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웹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청각·언어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선거관련 토론회나 방송 시에 자막과 수화방송을 동시에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수어용 선거공보물 지원과 웹접근성 보장이 필요하다.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읽기 쉬운 형태의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방송을 통해서도 이해하기 쉬운 내용의 선거관련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선거관련 정보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시설에서는 의도적으로 저녁뉴스를 정기적으로 시청하도록 하거나 시설 밖으로의 외출이나 나들이를 통해 도로변의 현수막이나 선거벽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소규모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투표방법을 결정함에 있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장애인 스스로가 어떤 방법으로 투표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선거에 대한 정보를 누가, 어떤 방법과 내용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특정 후보에 편향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선거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2) 선거권보장을 위한 장애유형별 정당한 편의 제공 강화방안**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장애는 제도적·사회적 장치에 따라 없어지기도 하고,

더욱 심각해지기도 한다.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장애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장치가 마련된다면, 장애인에게 투표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닐 수 있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투표와 관련된 정당한 편의제공이다.

먼저 투표장까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여전히 투표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투표를 하지 못한 장애인들이 있다. 투표장까지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지 말고, 선거관리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이동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홍보하여 시설 거주 장애인뿐만 아니라 재가 장애인들도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투표장까지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투표장까지의 접근성은 상당히 개선된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엘리베이터가 없는 2층에 투표장이 마련되거나, 나무 등으로 제작된 임시경사로 설치로 인한 안전에 대한 우려 등으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있다. 투표장까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모든 투표장에서 꼼꼼히 점검되어야 한다. 투표장에 접근하기 위한 주출입구에는 단차를 제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임시경사로 는 미끄럽지 않아야 하며, 나무 재질을 사용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표대를 설치하는 곳이 2층 이상이거나 지하인 경우에는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출입구 턱 또는 경사로 상단 끝부터 건물입구(문)까지의 거리는, 휠체어가 안정적으로 건물입구에 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최소 1.2미터 이상 확보되어야 하며, 어떤 물건도 적재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기표대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의 주출입구의 통과 유효 폭은 휠체어사용자 등을 고려하여 최소 0.8미터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청각장애인이 투표장에서 적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청각장애인이 투표과정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어안내인이 배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투표소에 수어안내인을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적어도 필답을 위한 메모지와 필기도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넷째, 기표대와 관련된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표대는 휠체어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폭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휠체어 장애인이나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단순히 낮은 기표대로 충분하지 않으며,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기표대가 설치되어야 한다. 특히 6·4 지방선거에서 보급되어 활용된 종이 재질의 기표대는 충분한 폭과 높낮이 조절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없는 구조로 보인다.

다섯째, 장애특성에 맞는 투표용지와 보조도구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시각장애인용 투표보조도구의 경우 고정이 쉽지 않은 점, 기표도장과 기표 칸의 크기가 같아 작은 실수에도 무효표가 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형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기표도장을 기표 칸보다 작게 만들고, 투표보조도구를 현재보다 쉽고 정확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사용토록 해야 한다.

여섯째, 혼자서 투표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준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구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신분확인, 투표용지 수령, 기표과정에서 공정한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람의 자격과 범위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기표소에 장애인과 동행하는 사람은 투표사무원, 투표자원봉사자, 선거관리위원 등 선거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한정해야 하며, 상호확인이 가능하도록 2명이 기표소에 동행하도록 하여 장애인이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3) 발달장애인을 위한 선거 편의제공 및 교육**

흔히 발달장애인은 정보 이해력이 떨어지고 정확한 자기 의사표현이 어렵

다고 판단하여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재가공하여 반복적으로 제시하거나 교육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의사결정에의 합리적 판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가 장애 정도 및 특성에 맞게 제공되어야 하며, 발달장애인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선거정보와 관련된 내용들이 발달장애의 특성에 맞게 제공되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참정권) 제3항에서도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에게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선거관련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관련 정보를 재진술 및 재구성하여 반복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만 언급하고 있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버전의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합리적 판단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제65조에 발달장애인을 위해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를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현재 투표용지에는 기호(교육감 투표용지에는 기호가 없음)와 성명(또는 정당명)만 표시되어 있어 발달장애인이 투표를 함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투표를 지원함에 있어서는 투표용지에 후보자 사진과 정당의 상징(symbol) 등을 함께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이 기표행위를 할 때 투표일 전까지 습득했던 다양한 방식의 판단기준을 최대한 활용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다양하게 제시해 주어야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약 70%에 이르며, 시설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이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과 의심의 시각이 있어 보다 객관적인 방법의 선거관련 정보제공과 투표관리가 필요하다. 앞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실제로 선거에 대한 정보를 누가, 어떤 방법과 내용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특정 후보에 편향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시설을 방문하여 선거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이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실수를 통한 부정적 경험을 갖지 않도록 하고, 투표절차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많은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투표관련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투표절차를 실습하는 과정에서 특정후보로 편향된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거관련 정보제공 방법과 마찬가지로, 시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시설에 방문하여 투표절차 실습을 진행하는 방안의 의무화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시설 종사자들은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선거지원 방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선거지원을 위한 가이드북 등을 제작 배포하여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선거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 4) 이동투표제도 도입

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공직선거법 제38조 제4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일반 투표소에서의 투표할 권리를 보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자신이 머물고 있는 시설 또는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시설 거주인들에게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149조를 근거로 하여 일률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에게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일반투표소에서의 투표를 제약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중증의 와상장애인이 아닌

한 ‘거동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동편의가 제공된다면 얼마든지 일반 투표소에서의 투표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의무를 지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범위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거주시설 내에 기표소가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거주시설의 장애인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시설 또는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거동할 수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일반 투표소에서의 투표를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거동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부득이 하게 거주시설 내에서 투표를 하게 되더라도 공직선거의 4대 원칙인 보통선거·평등선거·직접선거·비밀선거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특히 시설장이나 시설직원으로부터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선거관리관으로 이루어진 이동투표팀에 의해 이동식 투표소를 운영한다면 선거의 공정성과 직접·비밀선거의 원칙을 보다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호주의 사례와 같이 선거관리관으로 이동투표팀을 구성하여 이들이 직접 거주시설, 교도소, 원거리 장소 등을 방문하여 투표자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동 투표 팀은 투표용지, 연필, 그리고 투표함을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가져다줌으로써 개인별 서비스를 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5) 선거관리관제도 도입과 선관위 책임 강화

‘예외적으로’ 자신이 머물고 있는 시설 또는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시설 거주인들에게 보장하기 위해 거주시설 내에 거소투표를 하더라도 투표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행과 같이 거주시설 내에서의 거소투표에 대한 설치와 관리를 시설장에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투표의 공정성이 확보되기 어렵고, 일반투표소이든 거소투표소이든 모두 선거관리위원회가 그에 관한 설치 및 관리의 책임을 지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만약 호주의 사례와 같이 선거관리관으로 이루어진 이동투표팀을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최소한 거소투표 실시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는 공정한 지위를 가진 선거관리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49조의 규정과 같이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은 선거권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기관·시설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기표소의 투표상황을 (임의적으로) 참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 후보자 측에서 투표상황을 참관하도록 하게 한다면 최소 2명의 후보자 측에서 동시에 나와서 참관하도록 하여야 투표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다. 현행대로 후보자 측에 투표상황 참관에 관하여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선거관리관이 시설 내의 기표소 투표상황을 관리·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 6) 정신의료기관의 투표안내 책임 강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선거권 문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시설선거권 논의가 주로 장애인거주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이명수 등(2009)이 서울시립정신병원 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신장애인들의 입원일수는 평균 45.5개월이고 조사대상자의 45.8%는 최근 5년간 지역사회에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박경수 등(2012)이 서울시립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는 평균 재원기간 5.7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명칭만 시설과 병원으로 분리될 뿐, 장기적으로 거주한다는 점에서 거주시설과 다를 바 없는 정신의료기관(병원)에 대해서도 거주시설과 동등한 수준의 선거권 보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입원경험이 있는 정신장애인과 정신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과의 인터뷰 결과에서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정신장애인의 경우 선거권 행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선관위에서 발

송하는 거소투표소 설치신고와 거소투표를 대상자들에게 안내할 것을 권유하는 공문은 입원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그리고 전달에 관한 선관위의 감독이 없고 위반에 대하여도 제재하지 않았다. 실제 정신장애인 면접조사에서도 입원기간 중 투표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기관으로부터 습득한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느슨한 관리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자가 장애인거주시설과는 달리 주민등록지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점에 크게 영향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거동이 가능하더라도 정신의료기관 소재지와 투표지역이 상이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입원중 사전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하지 않는다면 거소투표를 하는 방법만 남게 된다. 그러나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선거와 거소투표에 관한 안내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으며, 정신의료기관의 선거와 거소투표에 관한 안내 불이행에 대한 벌칙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에서 미국의 사례를 토대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환자의 선거권 보장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정신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정신의료기관의 거소투표에 관한 안내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의 3은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즉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태만히 한 것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이 불비한 것이다.

둘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특별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선관위는 주소이전에 되지 않는 정신의료기관의 실태를 기초로 일반 장애인거주시설보다 강화된 선거감독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환자들이 선거인명부등재와 부재자투표

신청 그리고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셋째, 정신의료기관에의 장기입원환자에 대하여 미국의 Pennsylvania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선택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은 입원시설에서의 거소투표와 입원전 거주지역에서의 투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신의료기관 입원중인 정신장애인을 위해서는 주소 미이전으로 인한 투표지역 상이성에서 오는 정보전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 내에서 자신의 선거구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인터넷 검색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 7) 투표보조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제157조 제6항). 우선 위 규정에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의 의미는 자신의 신체를 가지고 혼자 투표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하기보다, 각종 기표보조 기구 등을 동원하여서도 혼자 투표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해석해야 한다(김원영, 2013).

또한 발달장애인의 경우에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에 문리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투표소에서 발달장애인에게 투표보조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공직선거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sup>20)</sup>

한편 이러한 투표보조행위에 대한 범위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선거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투표보조행위의 범위

---

20)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행사의 문제는 복잡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 자신의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에 어떠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하는지, 선거권 보장은 어느 범위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또는 후견인)의 권한은 어느 범위까지인지 등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선거권 행사와 관련하여 모의선거훈련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와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 8)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 보장 법제 개선

공직선거법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법원의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제18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호).<sup>21)</sup> 그러나 법원에서 금치산(또는 피성년후견) 선고를 받는 것은 당사자(및 신청권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므로 금치산 선고 여부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금치산(또는 피성년후견) 선고를 받더라도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위 공직선거법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피선거권 행사와 관련하여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지에 관한 논의를 거쳐 그에 관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

21) 개정민법에 따르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 법 시행일(2013년 7월 1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2018년 6월 30일)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애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참고문헌

-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장애인참정권확보를위한공동행동(2010).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간담회 자료집.
- 2012장애인총선연대(2012).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 자료집.
- 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2014a).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 우리가 선택한다. 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 정책토론회 자료집.
- 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2014b). 장애인 참정권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 자료집.
- 고재욱(2013).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인권과 시설종사자 처우.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 공기춘(2005). 21C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장애인의 투표참여에 관한 소고. 선거논단 3: 40-59.
- 국가인권위원회(2006).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 국가인권위원회(2009).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2012).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 국가인권위원회(2012). 2012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2014).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중심으로.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09.2.23.). 투표소 선정시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시각장애인에게 투표보조용구 제공 않은 것은 차별.
- 김근식·권민숙(2008). 정신적장애인의 선거권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2(2): 403-423.
- 김명수(2010). 청각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에 관한 연구 : 현재 2009. 5. 28, 2006헌마285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11(1): 487-509.
- 김미옥 외(2006). 장애인생활시설 인권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 김미옥·정진경·김희성(2008).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 연구: 장애인당사자와 종사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3: 389-422.

- 김영진(2012). 정신 장애인의 투표권 보장에 관한 소고: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23(1): 61-91.
- 김원영(2013). 지체장애인의 선거권, 그 침해의 양상과 정교한 보장 방안. 사회보장법연구 2(1): 31-71.
- 김재왕(2014). 장애인 선거권과 공직선거법,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 김정열(2004). 장애인의 선거권을 막는 야만적 상황을 우려하며 : 할 말 있다. 총선!. 복지동향 65: 12-13.
- 김종범(2012). 취약계층의 투표편의제공 만족도 분석. 동북아연구 17: 83 - 112.
- 김진우 외(2013). 정당한 편의제공 판단기준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김치훈(2014).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해결과제, 장애인 참정권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 자료집. 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
- 김현철(2014).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방안. 장애인 참정권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 자료집. 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
- 남구현 외(2005).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 양성화된 조건 부사회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 노광호(2005).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수·이용표·장혜경(2012). 장기재원 정신장애인의 당사자 관점에서의 탈원화 실태조사. 서울특별시.
- 백은령·임성만(2006). 거주시설 이용자 참여의 현황과 대안.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보건복지부(2013). 보건복지 통계연보.
- 보건복지부(2014a). 2014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4b). 2014년 정신건강사업안내.
- 서미경·김재훈·이진향(2008).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정신장애인 권리침해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9: 330-367.

- 양영신(2003). 장애인 인권의 법적 실현방안.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준민(2014). 시설에서의 선거, 무엇이 문제인가. 장애인 참정권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 자료집. 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
- 염형국(2012).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 이명수·고정아·오정하·박정숙·전영미·박지인(2009). 서울시립정신병원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 이문희(2014). 선거를 통한 지역장애인복지 발전방안 마련.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 우리가 선택한다. 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 정책토론회 자료집. 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
- 이보람(2014).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및 진정사건을 통해 본 장애인 참정권 제한 실태 및 개선방향.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 이찬우(2014). 척수장애인의 선거권, 장애인 참정권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 자료집. 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
- 이창수·윤영철·김영옥(2005). 인권관련 정보통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임성만(2010). 지방선거와 장애인복지정책. 사회복지연구 184: 30-39.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008). 장애인의 선거환경 개선 및 정치의식 반영을 위한 여론 조사.
- 장호동(2014).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는 공정선거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 정상우 외(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정인원(2008). 정신보건시설 재원자 및 시설 실태조사. 2008 정신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 조기호(2012). 개정민법상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 제한 방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조한진(2014). 장애인의 참정권의 행사.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2012). 2012년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업보고서.
- 진보개혁입법연대(2010).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자료집.
- 진선미·김정록·국회장애인복지포럼(2012).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
- 하성준(2014).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행사와 문제점과 개선방안. 장애인 참정권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 자료집. 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
- 한국장총(2013.12). 장애인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장애인정책리포트.
- 한국장총(2014.4). 장애인의 투표를 가로막는 장벽들. 장애인정책리포트.
- Redley, M., Maina, E., Keeling, A. and Pattni, P.(2012). The voting rights of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reflection on the arguments, and situation in Kenya and England and Wale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56(11): 1026-1035.
-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2010). *The Right to Political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Mental Health Problems and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FRA-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Vienna.
- Human Rights Committee(1996). *General Comment No. 25: The Right to Participate in Public Affairs, Voting Rights and the Right to Equal Access to Public Service*. United Nations, Geneva.

<관련 사이트>

[http://www.dpmc.gov.au/consultation/elect\\_reform/strengthening\\_democracy/pdfs/90%20-%20People%20with%20Disability%20and%20Disability%20Discrimination%20Legal%20Centre%20\(NSW\).pdf](http://www.dpmc.gov.au/consultation/elect_reform/strengthening_democracy/pdfs/90%20-%20People%20with%20Disability%20and%20Disability%20Discrimination%20Legal%20Centre%20(NSW).pdf)

[http://www.comlaw.gov.au/Details/C2014C00127/Html/Text#\\_Toc382409545](http://www.comlaw.gov.au/Details/C2014C00127/Html/Text#_Toc382409545)

<http://agencysearch.australia.gov.au/s/search.html?collection=agencies&form=simple&profile=aec&query=nursing+home>

[http://www.aec.gov.au/media/media-releases/1999/Mobile\\_Polling\\_Hospital\\_99.htm](http://www.aec.gov.au/media/media-releases/1999/Mobile_Polling_Hospital_99.htm)



## [부록 1]

|                           |
|---------------------------|
| 2014년                     |
| 시설(병원) 거주 장애인<br>선거권 실태조사 |

|          |  |  |  |  |
|----------|--|--|--|--|
| 일련<br>번호 |  |  |  |  |
|----------|--|--|--|--|

###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지

#### (장애인용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권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선거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정보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선거권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종합적으로 통계 처리되므로 응답자 개인 및 시설에 대한 의견과 정보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며, 통계법으로도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 7월

조사 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책임자 : 박경수(한양사이버대 교수)

김성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문의처 02)732-3420, inpeople0401@naver.com

(150-043)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95-25 한얼빌딩 3층



한양사이버대학교  
www.hanyangcyber.ac.kr



|           |           |        |                     |
|-----------|-----------|--------|---------------------|
| 시설<br>소재지 | 광역시 _____ | 조사일    | 2014. ____ . ____ . |
|           | 기초 _____  | 조사원 성명 |                     |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거나 적어주십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성별                              | <input type="checkbox"/> ① 남성 <input type="checkbox"/> ② 여성                                                                                                                                                                                                                                                                                                                                                                                                                                                                                                                                                                                                                                                                                                                                                                                        | 연령                               | 만 _____세                         |                                 |                                  |                                 |                                 |                                 |                                 |                                  |                                 |                                 |                                 |                                  |                                |                                 |                                    |                                 |                                  |
| 장애 유형                           | <p>* 중복장애의 경우 해당되는 장애유형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p> <table border="0"> <tr> <td><input type="checkbox"/>① 지체장애</td> <td><input type="checkbox"/>② 뇌병변장애</td> <td><input type="checkbox"/>③ 시각장애</td> <td><input type="checkbox"/>④ 청각장애</td> </tr> <tr> <td><input type="checkbox"/>⑤ 언어장애</td> <td><input type="checkbox"/>⑥ 지적장애</td> <td><input type="checkbox"/>⑦ 자폐성장애</td> <td><input type="checkbox"/>⑧ 정신장애</td> </tr> <tr> <td><input type="checkbox"/>⑨ 신장장애</td> <td><input type="checkbox"/>⑩ 심장장애</td> <td><input type="checkbox"/>⑪ 호흡기장애</td> <td><input type="checkbox"/>⑫ 간장애</td> </tr> <tr> <td><input type="checkbox"/>⑬ 안면장애</td> <td><input type="checkbox"/>⑭ 장루·요루장애</td> <td><input type="checkbox"/>⑮ 간질장애</td> <td><input type="checkbox"/>⑯ 해당 없음</td> </tr> </table> <p>* '⑯ 해당 없음'의 경우 직접 작성해 주십시오.<br/>(예컨대, 알콜중독 등 _____)</p> |                                  |                                  | <input type="checkbox"/> ① 지체장애 | <input type="checkbox"/> ② 뇌병변장애 | <input type="checkbox"/> ③ 시각장애 | <input type="checkbox"/> ④ 청각장애 | <input type="checkbox"/> ⑤ 언어장애 | <input type="checkbox"/> ⑥ 지적장애 | <input type="checkbox"/> ⑦ 자폐성장애 | <input type="checkbox"/> ⑧ 정신장애 | <input type="checkbox"/> ⑨ 신장장애 | <input type="checkbox"/> ⑩ 심장장애 | <input type="checkbox"/> ⑪ 호흡기장애 | <input type="checkbox"/> ⑫ 간장애 | <input type="checkbox"/> ⑬ 안면장애 | <input type="checkbox"/> ⑭ 장루·요루장애 | <input type="checkbox"/> ⑮ 간질장애 | <input type="checkbox"/> ⑯ 해당 없음 |
| <input type="checkbox"/> ① 지체장애 | <input type="checkbox"/> ② 뇌병변장애                                                                                                                                                                                                                                                                                                                                                                                                                                                                                                                                                                                                                                                                                                                                                                                                                   | <input type="checkbox"/> ③ 시각장애  | <input type="checkbox"/> ④ 청각장애  |                                 |                                  |                                 |                                 |                                 |                                 |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⑤ 언어장애 | <input type="checkbox"/> ⑥ 지적장애                                                                                                                                                                                                                                                                                                                                                                                                                                                                                                                                                                                                                                                                                                                                                                                                                    | <input type="checkbox"/> ⑦ 자폐성장애 | <input type="checkbox"/> ⑧ 정신장애  |                                 |                                  |                                 |                                 |                                 |                                 |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⑨ 신장장애 | <input type="checkbox"/> ⑩ 심장장애                                                                                                                                                                                                                                                                                                                                                                                                                                                                                                                                                                                                                                                                                                                                                                                                                    | <input type="checkbox"/> ⑪ 호흡기장애 | <input type="checkbox"/> ⑫ 간장애   |                                 |                                  |                                 |                                 |                                 |                                 |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⑬ 안면장애 | <input type="checkbox"/> ⑭ 장루·요루장애                                                                                                                                                                                                                                                                                                                                                                                                                                                                                                                                                                                                                                                                                                                                                                                                                 | <input type="checkbox"/> ⑮ 간질장애  | <input type="checkbox"/> ⑯ 해당 없음 |                                 |                                  |                                 |                                 |                                 |                                 |                                  |                                 |                                 |                                 |                                  |                                |                                 |                                    |                                 |                                  |
| 장애 등급                           | * 장애인 등록이 된 경우만 응답해 주세요. _____ 급                                                                                                                                                                                                                                                                                                                                                                                                                                                                                                                                                                                                                                                                                                                                                                                                                   |                                  |                                  |                                 |                                  |                                 |                                 |                                 |                                 |                                  |                                 |                                 |                                 |                                  |                                |                                 |                                    |                                 |                                  |
| 시설 유형                           | <input type="checkbox"/> ① 장애인거주시설 <input type="checkbox"/> ② 정신요양시설 <input type="checkbox"/> ③ 정신의료기관                                                                                                                                                                                                                                                                                                                                                                                                                                                                                                                                                                                                                                                                                                                                             |                                  |                                  |                                 |                                  |                                 |                                 |                                 |                                 |                                  |                                 |                                 |                                 |                                  |                                |                                 |                                    |                                 |                                  |
| 시설(병원) 이용자 수                    | _____명                                                                                                                                                                                                                                                                                                                                                                                                                                                                                                                                                                                                                                                                                                                                                                                                                                             |                                  |                                  |                                 |                                  |                                 |                                 |                                 |                                 |                                  |                                 |                                 |                                 |                                  |                                |                                 |                                    |                                 |                                  |

◎ 다음은 6. 4 지방선거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거나 적어주십시오.

1. 귀하는 투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_\_① 예                      \_\_② 아니오                      \_\_③ 잘 모르겠다(기억나지 않는다)

2. 귀하는 원래의 집을 떠나 시설(병원)에서 생활하는 동안 투표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_\_① 예                      \_\_② 아니오                      \_\_③ 잘 모르겠다(기억나지 않는다)

3. 귀하는 최근 지방선거(5월 사전투표, 6월 일반투표)에 투표를 하셨습니까?

\_\_① 예                                              (☞ 3-1번 문항으로 이동)  
 \_\_② 아니오                                        (☞ 3-2번 문항으로 이동)  
 \_\_③ 잘 모르겠다(기억나지 않는다)            (☞ 5번 문항으로 이동)

3-1. (위 3번 문항에서 ①번을 선택한 경우) 귀하는 어디에서 투표하셨습니다?

- \_\_① 시설(병원) 안에서 투표했다(거소투표)  
 \_\_② 시설(병원) 밖에서 투표했다(일반투표 또는 사전투표)  
 \_\_③ 잘 모르겠다(기억나지 않는다)

3-2. (위 3번 문항에서 ②번을 선택한 경우) 귀하가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① 하고 싶지 않아서 (☑ 5번 문항 응답 후 설문조사 종료)  
 \_\_②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 5번 문항 응답 후 설문조사 종료)  
 \_\_③ 투표(선거)에 대해 몰라서 (☑ 설문조사 종료)  
 \_\_④ 기타(자세히 적어주세요: \_\_\_\_\_)

4. 귀하가 시설(병원) 안에서 투표할지, 밖에서 투표할지를 누가 결정했습니까?

- \_\_① 내가 결정했다  
 \_\_② 시설(병원) 직원이 결정했다  
 \_\_③ 부모님, 형제자매 등 보호자가 결정했다  
 \_\_④ 잘 모르겠다(기억나지 않는다)

4-1. 귀하가 시설(병원) 안에서 투표할지, 밖에서 투표할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설명을 들었습니까?

- \_\_① 설명을 들었다  
 \_\_② 설명을 듣지 못했다  
 \_\_③ 잘 모르겠다(기억나지 않는다)

5. 다음의 방법 중 귀하가 투표(선거일정, 후보자 등)에 대해 알게 된 방법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구 분             | ① 예 | ② 아니오 | ③ 잘 모르겠다<br>(기억안남) |
|-----------------|-----|-------|--------------------|
| 우편으로 받았다        | ①   | ②     | ③                  |
| 텔레비전으로 봤다       | ①   | ②     | ③                  |
| 시설(병원) 직원에게 들었다 | ①   | ②     | ③                  |
| 가족에게 들었다        | ①   | ②     | ③                  |
| 컴퓨터, 인터넷으로 봤다   | ①   | ②     | ③                  |

| 구 분                 | ① 예                                | ② 아니오 | ③ 잘 모르겠다<br>(기억안남) |
|---------------------|------------------------------------|-------|--------------------|
| 벽에 붙어 있는 사진(벽보)을 봤다 | ①                                  | ②     | ③                  |
| 같이 생활하는 장애인에게 들었다   | ①                                  | ②     | ③                  |
| 기타 다른 방법으로 알았다      | 자세히 적어주세요: _____<br>_____<br>_____ |       |                    |

◎ 다음은 일반투표와 사전투표를 한 응답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거나 적어주십시오.

6. 귀하가 투표를 하기 위해 시설(병원) 밖으로 나갈 때, 함께 간 사람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_\_① 시설(병원) 직원  
\_\_② 자원봉사자 등 모르는 사람  
\_\_③ 가족  
\_\_④ 같이 생활하는 장애인  
\_\_⑤ 혼자 갔음  
\_\_⑥ 잘 모르겠다(기억나지 않는다)

7. 귀하가 투표하는 장소로 갈 때, 무엇을 타고 갔습니까?

- \_\_① 시설(병원) 차량  
\_\_② 모르는 차량  
\_\_③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_\_④ 걸어서  
\_\_⑤ 기타(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_\_\_\_\_)  
\_\_⑥ 잘 모르겠다(기억나지 않는다)

8. 귀하는 현재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 \_\_① 직접 가지고 있다  
\_\_② 시설(병원) 직원이 가지고 있다  
\_\_③ 가족 친구 등 시설(병원) 외부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

- ☐ ④ 신분증이 없다(분실 등)  
☐ ⑤ 잘 모르겠다(기억나지 않는다)

9. 귀하가 투표용지를 받을 때, 귀하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확인은 어떻게 하였습니다습니까?

- ☐ ① 내가 직접 신분증을 보여주고, 투표용지를 받았다  
☐ ② 다른 사람(직원, 가족 등)이 나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직접 투표용지를 받았다  
☐ ③ 다른 사람(직원, 가족 등)이 나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투표용지도 전달받았다  
☐ ④ 잘 모르겠다(기억나지 않는다)

10. 귀하가 투표를 위해 기표소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 ☐ ① 혼자 들어갔다 (☞ 11번 문항으로 이동)  
☐ ② 다른 사람이 같이 들어갔다 (☞ 10-1번 문항으로 이동)  
☐ ③ 나는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만 들어갔다 (☞ 10-1번 문항으로 이동)  
☐ ④ 잘 모르겠다(기억나지 않는다) (☞ 11번 문항으로 이동)

10-1. (위 10번 문항에서 ②, ③번을 선택한 경우) 기표소에 들어간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

설문 응답자를 제외하고, ( )명

10-2. (위 10번 문항에서 ②, ③번을 선택한 경우) 기표소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같이 들어간 사람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 ① 가족  
☐ ② 시설(병원) 직원  
☐ ③ 모르는 사람(자원봉사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투표참관인 등)  
☐ ④ 잘 모르겠다(기억나지 않는다)

11. 투표를 할 때, 귀하가 직접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으셨습니까?

- ☐ ① 혼자서 직접 도장을 찍었다 (☞ 12번 문항으로 이동)  
☐ ②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도장을 찍었다 (☞ 11-1번 문항으로 이동)  
☐ ③ 다른 사람이 도장을 찍었다 (☞ 11-1번 문항으로 이동)  
☐ ④ 잘 모르겠다(기억나지 않는다) (☞ 12번 문항으로 이동)  
☐ ⑤ 기타(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_\_\_\_\_)

11-1. (위 11번 문항에서 ②, ③번을 선택한 경우) 귀하가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정당)에게 투표하였습니까?

- ☐ ①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투표하였다
- ☐ ②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투표하였다
- ☐ ③ 다른 사람이 기표하고 보여주지 않아,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모른다
- ☐ ④ 잘 모르겠다(기억나지 않는다)
- ☐ ⑤ 기타(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_\_\_\_\_)

12. 귀하가 도장을 찍은 투표용지는 직접 투표함에 넣으셨습니까?

- ☐ ① 직접 투표함에 넣었다
- ☐ ②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직접 투표함에 넣었다
- ☐ ③ 다른 사람이 투표함에 넣었다
- ☐ ④ 잘 모르겠다(기억나지 않는다)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

○ 다음은 거소투표를 한 응답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하거나 적어주십시오.

13. 귀하는 현재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 ☐ ① 직접 가지고 있다
- ☐ ② 시설(병원) 직원이 가지고 있다
- ☐ ③ 가족 친구 등 시설(병원) 외부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
- ☐ ④ 신분증이 없다(분실 등)
- ☐ ⑤ 잘 모르겠다(기억나지 않는다)

14. 귀하는 투표를 하기 전에 귀하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누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 ☐ ① 시설 직원에게 보여주었다
- ☐ ② 모르는 사람(투표사무원 등)에게 보여주었다
- ☐ ③ 보여주지 않았다
- ☐ ④ 잘 모르겠다(기억나지 않는다)

15. 귀하는 어디에서 투표하십니까?

- ☐ ① 시설(병원) 내에 설치된 기표소 (☞ 15-1번 문항으로 이동)
- ☐ ② 사무실, 식당 등 이용자나 시설(병원) 직원들이 있는 장소
- ☐ ③ 생활하는 방 등 혼자 있는 장소
- ☐ ④ 잘 모르겠다(기억나지 않는다)
- ☐ ⑤ 기타(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_\_\_\_\_)

15-1. (위 15번 문항에서 ①번을 선택한 경우) 귀하가 투표할 때, 시설(병원) 직원 외에 모르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 ☐ ① 있었다
- ☐ ② 없었다
- ☐ ③ 잘 모르겠다(기억나지 않는다)

16. 귀하의 투표용지에 ○, △, √ 등의 표시는 누가 했습니까?

- \_\_① 혼자서 직접 표시했다 (☞ 17번 문항으로 이동)
- \_\_②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직접 표시했다 (☞ 16-1번 문항으로 이동)
- \_\_③ 다른 사람이 표시했다 (☞ 16-1번 문항으로 이동)
- \_\_④ 잘 모르겠다(기억나지 않는다) (☞ 17번 문항으로 이동)
- \_\_⑤ 기타(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_\_\_\_\_)

16-1. (위 16번 문항에서 ②, ③번을 선택한 경우) 귀하가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정당)에게 투표하였습니까?

- \_\_①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투표하였다
- \_\_②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투표하였다
- \_\_③ 다른 사람이 기표하고 보여주지 않아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모른다
- \_\_④ 잘 모르겠다(기억나지 않는다)
- \_\_⑤ 기타(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_\_\_\_\_)

17. 귀하가 ○, △, √ 등의 표시를 한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 \_\_① 직접 봉투에 넣었다
- \_\_②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직접 봉투에 넣었다
- \_\_③ 다른 사람이 봉투에 넣었다
- \_\_④ 잘 모르겠다(기억나지 않는다)

18. 귀하는 다음 선거에 어디에서 투표하기를 원하십니까?

- \_\_① 시설(병원) 밖에서 투표하고 싶다
- \_\_② 시설(병원) 안에서 투표하고 싶다
- \_\_③ 잘 모르겠다
- \_\_④ 기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_\_\_\_\_)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

## [부록 2]

###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설문)조사 안내서

#### ■ 설문조사에 대한 사전 안내

- ▷ 본 설문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선거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본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정보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선거권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 ▷ 본 조사에 참여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내용과 표현으로 쉽게 질문해주세요.

#### ■ 다음의 문항은 반드시 질문해 주십시오.

- ▷ 공통문항 : 3번, 3-1번, 3-2번, 4번, 4-1번
- ▷ 일반투표, 사전투표 : 8번, 9번, 9-1번, 9-2번, 10번, 10-1번
- ▷ 거소투표 : 12번, 13번, 14번, 14-1번, 15번

#### ■ 설문지 표지 하단의 ‘시설소재지’, ‘조사일’, ‘조사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십시오.

#### ■ 문항별 안내

- ▷ 1번: “투표”는 “숫자와 이름이 적힌 종이에 도장을 찍거나 ○△√ 등을 그리는 일”로 설명
  - 투표용지 견본, 투표소 사진, 기표하는 장면 사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장면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질문

- ▷ 3번: “① 예”를 선택한 경우, 3-1번 문항으로 이동하여 응답한 후 4번부터 계속 질문  
 “②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3-2번 문항으로 이동하여 질문한 후 5번 문항 질문 후 설문조사 종료  
 “③ 잘 모르겠다(기억나지 않는다)”를 선택한 경우, 다시 사진을 보여주며, 투표여부를 추가로 질문한 후 투표여부를 파악하고,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5번으로 이동하여 질문하고, 설문 종료
- ▷ 3-1번: “① 거소투표”를 선택한 경우, 5번 문항으로 이동하여 응답한 후 12번부터 17번까지 질문  
 “② 일반/사전투표”를 선택한 경우, 5번 문항으로 이동하여 응답한 후 6번부터 11번까지 질문하고, 설문종료
- ▷ 3-2번: “③ 투표(선거)에 대해 몰라서”는 선거일정, 후보자정보, 공약, 투표절차 및 방법 등 선거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모른다는 것을 의미
- ▷ 6번: “② 자원봉사자 등 모르는 사람”은 처음 보는 시설 외부 사람
- ▷ 7번: 투표장 전경사진을 보여주면서 질문  
 “② 모르는 차량”은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내주는 차량 등 시설 차량 외 다른 차량
- ▷ 8번: 주민등록증/ 투표장에서 신분확인 장면 사진을 보여주면서 질문
- ▷ 9번: “기표소”는 숫자와 이름이 적힌 종이에 도장을 찍거나 ○△√ 등을 표시하는 곳  
 - 기표소 사진, 기표소에 들어가는 장면 사진을 보여주면서 질문

- ▷ 10번: 혼자서 기표하는 사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기표하는 사진, 다른 사람이 기표하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질문
- ▷ 11번: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장면 사진을 보여주면서 질문
- ▷ 12번: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여주면서 질문
- ▷ 13번: 주민등록증/ 투표장에서 신분확인 장면 사진을 보여주면서 질문
- ▷ 14번: 기표소 사진, 식당/사무실/방 등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질문
- ▷ 14-1번: “모르는 사람”은 선관위 위원, 선관위 직원, 공정선거지원단, 정당 관련인 등 3관인을 의미
- ▷ 15번: 투표용지에 ○, △, √ 등의 표시를 하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질문
- ▷ 16번: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는 장면 사진을 보여주면서 질문

## [부록 3]

|                           |
|---------------------------|
| 2014년                     |
| 시설(병원) 거주 장애인<br>선거권 실태조사 |

|          |  |  |  |  |
|----------|--|--|--|--|
| 일련<br>번호 |  |  |  |  |
|----------|--|--|--|--|

###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지

#### (직원용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권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선거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정보는 시설(병원)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선거권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종합적으로 통계 처리되므로 응답자 개인 및 시설(병원)에 대한 의견과 정보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며, 통계법으로도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 7월

조사 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책임자 : 박경수(한양사이버대 교수)

김성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문의처 02)732-3420, inpeople0401@naver.com

(150-043)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95-25 한얼빌딩 3층



한양사이버대학교  
www.hanyangcyber.ac.kr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거나 적어주십시오.

|                 |                                                                                                                                                                                                                                                                                                                       |    |          |
|-----------------|-----------------------------------------------------------------------------------------------------------------------------------------------------------------------------------------------------------------------------------------------------------------------------------------------------------------------|----|----------|
| 성별              | <input type="checkbox"/> ① 남성 <input type="checkbox"/> ② 여성                                                                                                                                                                                                                                                           | 연령 | 만 _____세 |
| 소속된<br>시설유형     | <input type="checkbox"/> ① 중증장애인거주시설 <input type="checkbox"/> ② 지체·뇌병변장애인거주시설<br><input type="checkbox"/> ③ 시각장애인거주시설 <input type="checkbox"/> ④ 청각·언어장애인거주시설<br><input type="checkbox"/> ⑤ 지적·자폐성장애인거주시설 <input type="checkbox"/> ⑥ 정신요양시설<br><input type="checkbox"/> ⑦ 정신의료기관 <input type="checkbox"/> ⑧ 기타(_____) |    |          |
| 시설(병원)<br>근무 경력 | 총 근무 경력      _____년 _____개월<br>현 시설(병원) 경력      _____년 _____개월                                                                                                                                                                                                                                                        |    |          |
| 직위              | <input type="checkbox"/> ① 기관장(원장 등) <input type="checkbox"/> ② 사무국장(사무장 등)<br><input type="checkbox"/> ③ 시설(병원) 내 선거담당자 <input type="checkbox"/> ④ 기타(_____)                                                                                                                                                         |    |          |
| 시설(병원)<br>소재지   | 광역 _____(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br>기초 _____(시, 군, 구)                                                                                                                                                                                                                                                              |    |          |
| 시설(병원)<br>이용자 수 | _____명                                                                                                                                                                                                                                                                                                                |    |          |

◎ 다음은 6·4 지방선거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거나 적어주십시오.

1. 귀하와 귀 시설(병원)은 장애인에게 6·4 지방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다음 중 어떤 방법으로 제공하였습니까? 해당하는 방법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_\_① 선거공보물 우편을 전달해 주었다  
 \_\_② TV토론회 등을 함께 시청하였다  
 \_\_③ 장애인들이 모두 모인자리에서 선거에 대해 설명하였다  
 \_\_④ 개별면담을 통해 설명하였다  
 \_\_⑤ 개인의 선택사항이므로, 직원이나 시설(병원)에서 선거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_\_⑥ 기타(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_\_\_\_\_)

2. 귀 시설(병원)에서는 투표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이 진행되었습니까?

\_\_① 예(☒ 2-1번 문항으로 이동)      \_\_② 아니오(☒ 3번 문항으로 이동)

2-1. (위 2번 문항에서 ①번을 선택한 경우) 사전교육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해당하는 방법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_\_① 투표절차를 실제로 실습해 보았다  
\_\_② 투표용지나 투표소 관련 사진, 그림을 통해 설명하였다  
\_\_③ 원하는 후보자를 선택하기 위한 방법(숫자선택방법 등)을 설명하였다  
\_\_④ 기타(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_\_\_\_\_)

3. 귀하가 근무하는 시설(병원)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어떤 방법으로 투표하였습니까? 해당하는 투표 방법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_\_① 사전투표  
\_\_② 거소투표  
\_\_③ 일반투표  
\_\_④ 아무도 투표하지 않음  
\_\_⑤ 시설(병원) 또는 직원이 개입할 수 없으므로, 알 수 없음

4. 귀하가 근무하는 시설(병원) 이용 장애인 중 다음의 투표방법으로 투표한 사람은 각각 몇 명입니까?

미투표 \_\_\_\_\_명, 거소투표 \_\_\_\_\_명, 사전투표 \_\_\_\_\_명, 일반투표 \_\_\_\_\_명

5. 귀하가 근무하는 시설(병원) 이용 장애인 중 투표를 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이유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_\_⑥ 100% 투표하였으므로 해당 없음  
\_\_① 본인의 선택으로 투표를 하지 않음  
\_\_② 의사소통이 어려워 투표를 불가능함  
\_\_③ 외출 등 부재중으로 투표할 수 없었음  
\_\_④ 기타(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_\_\_\_\_)

6. 귀하가 근무하는 시설(병원)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투표방법(거소·일반투표 등)은 어떤 방법을 통해 결정되었습니까?

- ☐ ① 장애인이 직접 원하는 투표방법으로 결정
- ☐ ② 장애인들의 다수결로 결정
- ☐ ③ 직원회의를 통해 결정
- ☐ ④ 시설(병원)장의 결정
- ☐ ⑤ 시설(병원) 또는 직원이 개입할 수 없는 사안으로 특별한 결정과정을 거치지 않음
- ☐ ⑥ 기타(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_\_\_\_\_)

7. 귀하와 귀 시설(병원)은 장애인에게 투표방법(사전·거소·일반투표)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하였습니까?

- ☐ ① 모든 선거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 ☐ ② 결정된 선거방법에 대해서만 설명하였다
- ☐ ③ 설명하지 않았다
- ☐ ④ 기타(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_\_\_\_\_)

8. 귀하는 장애인이 투표를 하는 데 있어 어떤 투표방법에 도움을 주셨습니까? 해당하는 투표방법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① 사전투표
- ☐ ② 거소투표
- ☐ ③ 일반투표
- ☐ ④ 없음

◎ 다음은 거소투표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하거나 적어주십시오.

9. 귀하나 귀 시설(병원)은 선거관리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소투표를 권유받은 적이 있습니까?

- ☐ ① 있음
- ☐ ② 없음

10. 귀하가 근무하는 시설(병원)에서 장애인들이 거소투표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이유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① 거소투표를 하지 않음 (☞ 15번 문항으로 이동)
- ☐ ① 장애인들이 직접 거소투표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 ☐ ② 항상 거소투표를 해 왔기 때문에
- ☐ ③ 일반(사전)투표장에서 장애인이 투표진행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 ☐ ④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 ☐ ⑤ 장애특성 상 이동 등 투표장에서의 투표가 어렵기 때문에
- ☐ ⑥ 기타(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_\_\_\_\_)

11. 시설(병원) 내 거소투표는 어떤 장소에서 진행되었습니까? 해당하는 장소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① 시설(병원) 내에 설치된 기표소
- ☐ ② 사무실, 식당 등 다른 이용자나 직원들이 있는 장소
- ☐ ③ 생활하는 방 등 장애인이 투표에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
- ☐ ④ 기타(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_\_\_\_\_)

12. 시설(병원) 내에서 거소투표가 이루어질 때, 시설(병원) 외부 참관인이 참석하였습니까?

- ☐ ① 예 ☐ ② 아니오

13. 시설(병원) 내에서 거소투표가 이루어질 때, 투표용지에 기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해당하는 기표방법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① 모든 장애인이 혼자서 직접 기표 (☞ 14번 문항으로 이동)
- ☐ ② 일부 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기표 (☞ 13-1번 문항으로 이동)
- ☐ ③ 일부 장애인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기표 (☞ 13-1번 문항으로 이동)
- ☐ ④ 기타(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_\_\_\_\_)

13-1. (위 13번 문항에서 ②, ③번을 선택한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기표를 한 장애인의 특성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1)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_\_\_\_\_

(2) 장애인의 특성

\_\_\_\_\_

14. 시설(병원) 내에서 거소투표 후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① 모든 장애인이 혼자서 직접 봉투에 넣었다
- ☐ ② 일부 장애인은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봉투에 넣었다
- ☐ ③ 일부 장애인은 직원이 대신 봉투에 넣었다
- ☐ ④ 모든 장애인의 투표용지를 직원이 대신 봉투에 넣었다

◎ 다음은 사전·일반투표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거나 적어주십시오.

15. 귀하가 근무하는 시설(병원)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사전·일반투표 등 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하는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장애인이 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 ☐ ②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 ☐ ③ 항상 지역투표소에서 투표했기 때문에
- ☐ ④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 ☐ ⑤ 기타(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_\_\_\_\_)

16. 투표소 방문 시 장애인과 동행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동행한 사람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① 시설(병원) 직원
- ☐ ② 자원봉사자
- ☐ ③ 장애인의 가족
- ☐ ④ 선거관리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인력
- ☐ ⑤ 같이 생활하는 장애인
- ☐ ⑥ 장애인 혼자서
- ☐ ⑦ 투표는 개인적인 부분이므로, 동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음

17. 투표소 방문 시 장애인에 대한 이동지원방법은 무엇이었습니다가? 해당하는 방법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① 시설(병원) 차량
- ☐ ②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차량

- \_\_③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 \_\_④ 걸어서
- \_\_⑤ 투표는 개인적인 부분이므로,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지 않았음
- \_\_⑥ 기타(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_\_\_\_\_)

**18. 투표소에서 장애인의 신분확인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 \_\_① 장애인이 직접 자신의 신분증을 가지고 신분확인을 받았다
- \_\_② 직원이 장애인 각각에 대해 신분확인을 도왔다
- \_\_③ 직원이 같이 간 장애인들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신분확인을 받았다
- \_\_③ 사전·일반투표를 지원하지 않아 모른다 (☞ 24번 문항으로 이동)
- \_\_④ 기타(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_\_\_\_\_)

**19. 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으로부터 장애인 대신 신분확인을 해달라고 요청받은 적이 있습니까?**

- \_\_① 예
- \_\_② 아니오

**20. 기표 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참관인 등으로부터 장애인 대신 투표를 하라는 권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_\_① 예
- \_\_② 아니오

**21. 혼자 투표할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 기표소에 함께 들어간 사람을 모두 선택해주시시오.**

- \_\_① 모든 장애인이 혼자서 들어갔다
- \_\_② 자원봉사자
- \_\_③ 장애인의 가족
- \_\_④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또는 투표참관인
- \_\_⑤ 시설(병원) 직원
- \_\_⑥ 장애인은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만 들어감

**21-1. 장애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간 사람이 가족이 아닌 경우, 장애인 1명 당 몇 명이 기표소에 함께 들어갔습니까? (\_\_\_\_\_)명**

22. 사전·일반투표 시 투표용지에 기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해당하는 기표방법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_\_① 모든 장애인이 혼자서 직접 기표 (☞ 23번 문항으로 이동)  
 \_\_② 일부 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기표 (☞ 22-1번 문항으로 이동)  
 \_\_③ 일부 장애인은 다른 사람이 대신 기표 (☞ 22-1번 문항으로 이동)  
 \_\_④ 기타(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_\_\_\_\_)

22-1. (위 22번 문항에서 ②, ③번을 선택한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기표를 한 장애인의 특성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1)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_\_\_\_\_

(2) 장애인의 특성

\_\_\_\_\_

\_\_\_\_\_

23. 사전·일반투표 시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_\_① 모든 장애인이 혼자서 직접 투입 (☞ 24번 문항으로 이동)  
 \_\_② 일부 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투입 (☞ 23-1번 문항으로 이동)  
 \_\_③ 일부 장애인은 다른 사람이 대신 투입 (☞ 23번-1 문항으로 이동)  
 \_\_④ 기타(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_\_\_\_\_)

23-1. (위 23번 문항에서 ②, ③번을 선택한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투입을 한 장애인의 특성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1)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_\_\_\_\_

(2) 장애인의 특성

\_\_\_\_\_

\_\_\_\_\_

24. 장애인의 투표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느낀 불편함이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컨대 비장애인들의 인식,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유형에 적합한 투표 보조용구, 선거공보물 관련 불편 등 투표와 관련된 전반적인 불편함이나 문제점)

---

---

---

25. 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

---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

## [부록 4]

### 장애인 선거권 관련 안내문

#### 1. 장애인을 위한 투표안내

##### 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투표안내문

- 투표절차, 유의사항 등을 점자로 기재
- 스마트폰 등으로 스캔하면 음성으로 자동변환, 출력되는 2차원 바코드 인쇄 제공
- 후보자들의 점자형 선거공보물 제작비용은 국가에서 부담

##### ② 청각장애인을 위한 투표안내문

- 문자해독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통역 안내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QR코드를 투표안내문에 인쇄하여 제공

##### ③ 청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관련 방송

- 2012년부터 수화방송 크기 확대 실시
- 후보자 토론회, 선거홍보 영상 등 방영 시 수화와 자막방송을 제공할 수 있음. 임의규정으로 현재 의무사항은 아님

#### 2. 선거당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장애인투표편의제도

##### ① 이동편의제공 및 장애인투표활동보조인 지원

-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자신의 주거지와 투표소 간 왕복 이동지원차량 제공
- 휠체어 탑재 가능차량 및 2인의 활동보조인 지원

- 투표활동보조인이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 제공
- 투표일에 직접 투표소에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신체장애인이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 ② 임시경사로 설치

- 투표당일 휠체어 이용장애인이 계단이나 단차로 인해 접근이 어려운 경우 임시경사로를 별도로 설치하여 접근 가능하도록 조치

## ③ 투표안내도우미

- 모든 투표소에 오전, 오후 각 2인의 투표안내 도우미 배치
-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안내 및 투표편의 제공 활동

## ④ 시각장애인용 투표보조용구

- 모든 투표소에 돋보기, 기표보조도구 등 시각장애인 투표보조용구 설치

# 3. 투표형식의 종류

## ① 사전투표

- 일반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유권자의 투표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14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
- 일반투표 시행일 약 한 달 전 이틀간의 일정으로 투표를 진행
- 일반투표와 달리 유권자는 자신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 통합명부 운영장비를 통해 투표용지 발급
- 투표절차 : <명부단말기에 신분증 인식> ► <지역구 확인 투표용지 출력> ► <본인 확인기를 통해 지문날인 혹은 서명> ► <본인확인 후 투표용지

수령> ► <투표용지 기표> ► <거주지 외 투표인의 경우 관외 선거함에,  
거주지 내 투표인의 경우 관내 선거함에 투표용지 투입>

## ② 거소투표

-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및 구치소,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실시하는 시설 내 투표
- 10인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이 있는 경우 별도의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함
- 10인 미만의 경우에도 정당 등에서 요청할 경우 별도의 기표소를 설치 하여야 함
- 시설의 장은 기표소 설치, 운영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설치 2일전까지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를 공고
- 후보자나 정당 등은 선거권자 중 1명을 기표소의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음
- 투표절차 : <거소투표신청> ► <우편으로 투표용지 수령> ► <시설 내 거소투표소에서 투표진행><10인 미만의 경우 본인확인 후 투표용지봉투 수령 비밀이 보장되는 공간에서 기표> ► <우편봉투에 기표한 용지 투입> ► <밀봉하여 발송>

## ③ 일반투표

- 본인의 거주지 투표소에서 지정된 투표일에 참여하는 투표방식

# 4. 투표참여시 고려해야할 사항

## ① 본인확인

- 반드시 본인이 자신의 신분증을 직접 지참한 상태에서 확인 서명 후 투표용지 수령
- 대리수령은 선거법 위반사항

## ② 기표방법

- 시각장애인이 점자해독이 불가능하여 점자투표용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경우 투표 보조 가능
- 가족(1인 가능)이나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 투표 보조 가능
- 점자해독이 가능한 경우 시각장애인용 투표보조용구를 요청하여 혼자 기표진행

## ③ 투표함에 넣기

- 본인의 기표결과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하여 투표함에 직접 투표용지 넣기.
- 기표용지를 대리로 넣는 것은 선거법 위반사항

## ④ 장애인용 보조도구 및 편의제공

- 시각장애인용 점자투표보조용구
  - 종이재질의 일회용 도구로 본인이 기표가 끝나면 폐기
  - 현재 보조용구를 통해 점자로 후보자 이름은 확인할 수 없으며 번호만 확인 가능
  - 사전투표 시 관내투표자에게만 보조용구 제공. 관외투표자는 제공받을 수 없음
  - 미리 파악된 시각장애인의 수만큼 투표소에 비치, 여유분은 준비하지 않음
-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제공
  - 투표소의 수화통역사 배치는 지원되고 있지 않음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에 따라 수화통역사 등 의사소통을 위한 지원방법 요청 가능
-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 경사로, 엘리베이터, 장애인용화장실, 단차 및 턱제거, 휠체어 이용 장애인용 기표대 등

## 5. 장애인의 선거권

### ① 선거의 4대 원칙 준수

-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 장애인 당사자의 4대 원칙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인식과 제도 개선 필요

### ②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참정권)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항>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 선거관련 법이나 제도로 규정되어있지 않아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정당한 편의제공 요청 가능

### ③ 장애인의 자기선택권

- 선거는 매우 사적인 행위로 선거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 최대한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시설과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



##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 인 쇄 일 | 2014년 11월 8일

| 발 행 일 | 2014년 11월 8일

| 발 행 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100-842 서울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 문의전화 | 인권연구팀 02)2125-9754

| F A X | 02)2125-9748

| E-mail | [research@humanrights.go.kr](mailto:research@humanrights.go.kr)

| 제 작 | EM실천 02)875-9744

ISBN : 978-89-6114-401-8 93340

비매 품